

연구보고 2008-01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시간 유형별 비용 차등 적용 방안

서문희
박수연

머 리 말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이용시간 유형과 비용 적용 방식이다.

보육시설은 운영시간이나 비용이 12시간 종일제가 기준이고 이러한 시설 운영기준은 아동의 이용시간 기준과 동일시되어 왔다. 이러한 제도는 현실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불합리와 모순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수요자보다는 공급자의 시각에서, 효율성보다는 양적 확충 자체에 우선순위를 두어 발생된 결과라고 할 수 있고, 보육정책 대상 확대과정에서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설계하지 못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보육 욕구나 교사 근무조건 등을 반영하여 이용시간 유형을 다시 설정하고 비용 및 지원도 이에 따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유치원은 전통적으로 반일제에서 연장제, 종일제로 다양화되면서 비용이 추가되는 형태이다. 대체로 반일제, 또는 연장제가 기준이고, 연장제나 종일제 기준 이상의 교육 시에는 추가 비용을 수납하는 형태로 교육비가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 그러나 소득계층별 차등교육비 지원 단가는 보육시설의 종일제 보육료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서 부모들의 부담이 과제가 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이용시간을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도록 다양화하고 비용도 이에 적절하게 책정하여 부모와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제는 정부에서도 차기 과제로 선정하고 있어서 시의적으로도 적절한 연구라 하겠다. 본 보고서가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의 편리성과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현장 관계자, 정부 및 학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개발센터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08년 12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조복희**

연구 요약

1. 서론

가.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보육시설과 유치원 서비스 이용시간 유형을 다양화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이용하는 서비스 시간에 부합되도록 수납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추진되었음.

나. 연구내용

- 구체적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운영시간, 아동 이용시간 유형 및 이용시간 유형별 보육료와 교육비를 파악하였음.
 -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시간 유형을 설정하고, 각 유형별 적정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를 추정함. 교사 인력의 근로기준법 준수 및 이에 따른 종일제 교사 배치 등 제반 근무환경 개선 요인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음.
 - 적용 가능한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시간 유형을 제안하고 이들 이용시간 유형을 적용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음.

다. 연구방법

- 시·도와 시·군·구 지역에 고시된 보육료와 추가 경비 수준을 파악하였음.
- 유치원 704개소, 보육시설 715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용시간 유형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제반 보육 여건 개선을 적용하여 유형별 소요비용을 산출하고, 추가 소요 비용 등을 추정하였음.
- 보육과 유아교육 전문가 및 관계자 간담회 실시하여 정책대안의 타당성과 실제 적용가능성을 탐색하였음.

2. 우리나라 보육·유아교육 비용 지원 제도의 문제점

- 현재 사용하는 표준보육비용에는 교사의 근무환경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음.
- 보육시설 12시간 운영을 전제로 하므로 획일화된 보육료로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음. 유치원의 교육비는 반일제 교육을 기준으로 적용됨.
 - 보육시설은 12시간 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교사는 8시간 근무가 원칙임.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종일제 운영시 별도의 교사 배치와 비용지원을 규정함.
-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에 적용하는 비용 기준은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고, 적용 비용의 항목별 구성 내역이 불투명함. 유치원 교육비는 자율화되어 있어서 내역 파악이 어려움.
- 유아 보육료·교육비에 대한 정부 지원단가와 실제 보육료·교육비는 격차가 있음.

3. 보육시설과 유치원 운영 및 이용 실태: 시간과 비용 중심

가.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 개요

- 전체 아동 대비 보육시설 이용아동 비율은 2007년말 기준으로 36.7%임. 최근 수년간 영아보육 이용이 급증하여 0세아 15.3%. 만1세아 27.9%. 만2세아 49.5%임. 유치원 이용비율은 전체 유아 대비 35.8%임. 전체 아동수 대비로는 19.1%임.
- 보육·교육기관 이용 이유는 전체적으로 사회성 발달과 전인적 발달 때문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보육시설의 경우 부모 대신 보호라고 응답한 비율이 33.7%인데 비해, 유치원은 10%정도임. 또한 초등학교 준비를 이유로 응답한 비율은 유치원의 경우 10% 정도인 반면, 보육시설은 1.8%를 나타냄.

나. 보육시설 운영 및 이용시간과 비용

1) 보육시설 운영 및 이용: 일수 및 시간 중심

- 일주일 당 보육시설 운영일수는 95%가 6일이고 평일 운영시간은 평균 11시간 41분으로 조사되었음.

- 보육시설의 21.0%는 종일제만으로 운영하여 모든 아동에게 종일제 보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43.2%가 종일제와 오후 4~5시 경에 귀가하는 유형을, 그리고 13.9%는 종일제와 오후 2~3시에 귀가하는 유형을, 19.8%의 보육시설은 이 세 가지 유형을 모두 적용함.
- 보육시설의 41.5%가 8시간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2)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

- 보육시설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은 0세아 7.5%, 1세아 12.2%, 2세아 10.8%로 0세아보다 1, 2세아의 비율이 높음. 유아는 17.6%임.
- 오후 3시까지 하원하는 아동 비율은 영아 23.0%, 유아 22.9%임. 6시 이후에 보육시설에 남는 비율은 영아 17.9%, 유아 22.7%임.
- 아동의 평일 이용시간은 취업모 자녀는 0세아 9시간 28분, 1세아 8시간 54분, 2세아 8시간 18분으로 연령이 어릴수록 이용하는 시간이 길게 나타남. 그러나 미취업모 자녀는 0세아의 경우 5시간 54분으로 1세아와 2세아 이용시간에 비하여 오히려 짧음. 유아도 이러한 경향은 마찬가지임.

3) 보육시설 이용 비용

- 오후 6시 이후에 귀가하는 아동과 2~3시에 귀가하는 아동의 보육료에 차등을 둔다는 비율은 0세아와 만1세아는 각각 35.1%와 38.1%이고, 그 이상은 41%임.
 - 차등을 두는 경우 금액 차이는 민간시설의 경우 4만원 내외이고 가정보육시설은 0세와 만1세가 7만원 수준이고 만4세 이상은 22,000원 정도임.
- 오후 6시 이후에 귀가 하는 아동과 4~5시에 귀가하는 아동의 보육료에 차이를 두는 비율은 연령별로 0세아 9.3%, 4세 이상아 4.9%로 소수에 불과함.
 - 차등을 두는 경우 보육료의 차이는 만4세 이상아 24,400원부터 0세아 39,900원 까지임.
- 보육시설의 20.4%는 정부 지원단가와 보육료의 차이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15.0%는 차이가 나지만 차액을 추기로 받지 않는다고 한 반면에 64.4%의 시설

은 차액을 부모로부터 수납한다고 하였음.

- 일정한 보육료 이외 추가 비용을 받는다는 비율은 민간보육시설 55.8%, 가정보육시설 32.6%이고, 평균 추가 수납액은 민간보육시설 43,400원, 가정보육시설 31,700원임.

다. 유치원 운영 및 이용시간과 비용

1) 유치원 운영 및 이용 일수 및 시간

- 주 6일 운영 비율은 국공립유치원 88.4%, 사립유치원 58.8%이고, 운영시간은 사립유치원 9시간 54분으로 국공립유치원의 운영시간보다 1시간 14분 더 길었음.
- 연장제를 기본으로 하는 유치원이 44.2%로 다수인데, 국공립유치원은 반일제, 종일제, 연장제 순으로, 사립유치원은 연장제, 반일제, 종일제 순으로 비율이 높았음.
- 국공립유치원의 21.1%, 사립유치원의 67.8%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국공립유치원의 66.2%와 사립유치원의 62.6%에서 종일반을 담당하는 별도 교사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이용시간 유형별 이용 아동 비율

- 유치원 원아의 이용시간은 2004년 조사에서는 평균 5시간 50분으로 조사되었음.
-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종일제 이용 아동이 58.0%로 반일제나 연장제 이용 아동 비율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았음.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연장제 이용 아동의 비율이 50.6%로 가장 높았고, 종일제 26.1%, 반일제 23.4% 순이었음.

3) 유치원 교육비

- 국공립유치원은 교육비 책정 기준이 반일제가 35.8%로 가장 높았으나, 사립유치원은 연장제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비율이 61.2%로 가장 높았음.
- 반일제를 기본으로 하는 유치원 중 연장제 수업료 추가 수납 비율은 17.4%, 종일제 수업료 수납 비율은 77.2%, 급식비 수납 비율은 100%임.
 - 반일제를 기준으로 하는 사립유치원 교육비는 반일제는 209,100원, 연장제는

87,900원이 추가되어 297,000원, 종일제는 108,000원이 추가되어 317,100원이 됨.

- 연장제를 기본수업료로 책정한 유치원을 보면, 66.4%가 종일제 수업료를 추가로 수납하였고, 급식비를 추가로 수납하는 비율은 87.4%임. 사립유치원의 종일제 수업료 55,700원이었고, 급식비는 33,900원임.
- 종일제를 기본수업료 책정 기준으로 정한 경우, 82.3%가 급식비를 추가로 수납하고 있었으며, 수납시 금액은 국공립유치원 24,500원, 사립유치원 21,200원임.
- 현장체험학습비, 차량운행비, 특별활동비 추가비용 합계는 74,500원이 됨.
- 무상교육비 금액과 유치원교육비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는 국공립유치원의 79.9%와 사립유치원의 19.1%만이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

라. 정책시사점

-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 부모들의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시간 현실을 비용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보육료와 교육비는 이용시간에 따라 비용이 차등 산정되어야 하고, 지원단가에도 이러한 현실이 반영되어야 함.
 -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소재지역의 규모에 따른 보육료, 교육비 차등 지원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함.

4. 이용시간 유형 설정 및 유형별 적정 비용 산출

가. 기본적 고려사항

- 이용시간 유형 대안 마련시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이용시간에 대한 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함.
 - 교사의 근무환경이 반영되어야 함.
 -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운영의 재정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함.
 - 부모와 국가의 부담 능력을 고려한 정책적 선택을 필요로 함.

나. 보육시설 이용시간 유형과 적정 비용

1) 이용시간 유형 검토

- 이용시간 유형과 이에 따른 구조적 요인으로 교사 배치와 교사대 아동비율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음.
 - 보육은 오후 2시 30분 전후에 귀가하는 유형, 8시간 종일제로 오후 5시 전후에 귀가하는 유형, 오후 7시 30분 정도까지 이용하는 유형으로 구분함. 0, 1세는 3시간 이용의 오전반을 검토하였음.
 - 보육에서는 12시간 종일제에 대해서는 교사 연장근무 수당지급 방안, 시간제 정규교사 추가 배치 방안, 종일제 정규 교사 추가 배치 방안 등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자 함. 유치원에는 종일제 정규교사 제도를 적용하였음.
 - 교사대 아동 비율은 12시간 종일제 적용시 만3세아만 1:20으로 조정하고자 함. 유치원에도 보육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연장제 이후 시간의 교사대 아동 비율은 3~5세 모두 1:20으로 조정하였음.

2) 아동 1인당 비용

가) 8시간 종일제 보육비용

- 인건비는 산출하고 이외 비용은 기존 연구를 활용하여 추정하였음.
- 아동 1인당 보육비용 추정치에 대한 2개의 안을 제시하였음.
 - 제1안은 현재 정부가 채택한 단가 산정방식에 반영된 항목을 기준으로 함. 50인 시설은 0세아 734,500원, 만1세아 528,300원, 만2세아 427,400원, 만3세아 297,000원, 만4세 이상아 282,500원임. 97인 시설 비용은 50인 시설 비용보다 다소 낮으며, 20인 미만 시설 영아 보육비용 총액은 97인 시설 비용에 근접함.
 - 제2안은 점심시간에 해당되는 하루 1시간을 시간외 근로로 인정한 것인데,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은 제1안에 비하여 0세아 최대 43,000원 가량 높음.

나) 시간단축형 보육비용

- 시간단축형 보육비용은 앞에서 산출한 8시간 종일제 보육단가를 기준으로 급간 식비 중 오후 간식비를 제외한 비용임.

- 따라서 시간단축형 보육비용은 8시간 종일제 보육비용과 비교하여 그 차이가 소규모임. 사실상 최대치는 만4세 이상아로 14,000원 정도임.

다) 12시간 종일제 보육비용

- 12시간 종일제 보육비용 산정은 교사의 초과근무나 추가 배치를 전제로 하였음. 보육교사는 세 가지 방식으로 추정하였으며, 보육교사 근무형태별로 보면 다음과 같음.
 - 제1안은 보육교사의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 형태로 인건비를 산출한 안임.
 - 제2안은 시간제 보육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으로, 시간제 교사를 고용할 경우 보육교사 임금은 일반 교사의 1/2에 해당되고, 아동 1인당 추가 보육비용은 0세아 255,400원, 만1세아 153,300원, 만2세아 109,500원, 만3세 이상아 38,300원임.
 - 제3안은 종일제 보육교사를 정규 교사로 추가 배치하는 방안으로, 추가 부담액은 0세아 51만원 수준 등으로 제2안의 2배가 됨.
- 교사를 정규 교사로 추가 배치하면 연 3905억원, 단시간 교사를 배치하면 연 1593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다. 유치원 이용시간 유형과 유형별 적절 비용

1) 이용시간 유형 검토

- 연장제와 종일제 두 가지를 검토하였음.
 - 유치원 이용 아동의 약 20% 정도가 반일제를, 약 30%가 종일제를 이용하고 있으나 유치원의 90%가 종일제로 운영하는 현실과 유아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연장제와 종일제 두 가지로 구분하였음.
 - 교사는 종일제는 정규교사 추가 배치를 원칙으로 하였음.
 - 교사대 아동 비율은 보육시설 교사대 아동 비율과 마찬가지로 연장제는 영유아 보육법을 준용하고 연장제 이후는 모두 1:20을 적용하였음.

2) 아동 1인당 보육비용

가) 연장제

- 추정한 아동 1인당 유아교육 비용은 55인 유치원의 경우 만3세와 만4, 5세가 연령

별로 각각 299,400원, 280,500원이고, 95인 유치원과 40인 유치원은 이보다 낮음.

- 이러한 금액은 본 조사에서 만4세아를 기준으로 반일제 기준시 연장제 수업을 받으려면 총 84,400원을 더 수납하여 총 284,600원을 수납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근접함.

나) 종일제

- 시설 규모에 따라 55인 유치원은 만3, 4, 5세가 각각 397,500원, 382,000원, 379,900원이고, 97인 및 40인 유치원은 이보다 낮음.
 - 이러한 금액은 본 조사에서 만4세아를 기준으로 반일제 기준으로 산정한 종일제 수업 비용 총 301,700원보다 높음. 이는 본 교육비용 추정시 유치원에서 종일제 교사를 추가로 배치함을 전제로 하였으나 현실은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유치원도 상당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 사립유치원에 한하여 추가 부담 비용 규모는 연간 1951억원이 됨.

5. 이용시간 차등 적용을 위한 정책제언

가. 이용시간 유형 다양화 필요성

-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이용시간 유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미취업모 또는 자녀를 돌보아 줄 유휴 인력이 있는 경우에 아동이 보육 시설에 오후 5시까지 보육할 필요가 없으며, 이용시간 요구가 다양함.
 - 둘째, 아동 입장에서 무조건 종일제 중심의 프로그램이 바람직하지 않음.
 - 셋째, 제도적으로 단지 정부 지침 때문에, 또는 교사의 근로시간을 8시간 반영하였다고 하여 이용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매우 경직된 사고임.
 - 넷째, 교사가 근무하는 8시간 내내 아동을 보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다섯째, 0, 1세아의 경우 보육 제정의 효율적 사용 측면도 고려해야 함.

나. 이용시간 유형 구분 및 이유

- 적용 이용시간 유형은 보육시설과 유치원 모두 오후 2~3시에 귀가하는 이용시

간 유형과 7시 전후에 귀가하는 유형으로 이원화하고, 보육시설은 0, 1세에 한하여 반일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이와 같은 구성은 유아 부모들의 선호도,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프로그램 운영상의 효율성과 편의성에 근거함.
- 교사의 배치는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7시 전후에 귀가하는 아동 보육을 위해서는 인력의 추가 배치를 원칙으로 함.
 - 시간제 교사보다는 종일제 정규 교사가 바람직함. 0, 1세아 반일반 보육은 시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함.
-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은 오후 2~3시 이용까지는 보육시설의 현 기준을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만3세아에 한하여 교사 1인당 20명을 적용함. 영아 혼합반을 구성할 경우 나이가 어린 아동 연령 기준을 따름.
 - 교사 1인당 아동수는 일반적인 전체 현원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매 시각 실제 아동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

다. 비용 지원 및 조건

-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이용시간 유형을 기본형과 12시간 종일제 형으로 이원화하여 적용하고 대상도 모의 취업 등 조건을 두어 이용시간 자격을 제한할 것을 제안함.
 - 기본형의 이용시간은 2세 이상 아동의 경우 오후 2~3시에 귀가하고, 0, 1세 영아에 한하여 평일 하루 3시간 보육을 기본으로 함.
 - 종일제는 모의 취업이나 직업교육, 또는 가정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구성원이 있어서 아동의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제한함.
- 비용 분담은 기본형은 현재와 같은 보육비용 지원체계를 일부 보완하여 적용하고, 종일제는 추가 배치교사 인건비 지원 등으로 국가부담을 높임.
 - 기본형의 비용은 현실적 비용을 반영하여 차등보육료의 차등체계를 새로이 구축하도록 함.
 - 종일제가 취업모 등 가정에서 아동을 적절하게 돌보기 어려운 부모에 한하므로 추가되는 비용은 국가가 인건비 형태로 지원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목 차

연구 요약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3
3. 연구방법	4
4. 선행연구	6
5. 용어 정의와 연구의 제한점	17
II. 국내외 보육·유아교육비용 지원 제도	19
1. 외국의 보육·유아교육 지원 제도	19
2. 우리나라 보육·유아교육 비용 지원 제도와 문제점	37
III. 보육시설과 유치원 운영 및 이용 실태: 시간과 비용을 중심으로	51
1.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 개요	51
2. 보육시설 운영 및 이용시간과 비용	57
3. 유치원 운영 및 이용시간과 비용	82
4. 논의 및 정책시사점	98
IV. 이용시간 유형과 유형별 적정 비용	100
1. 기본 고려사항	100
2. 보육시설 이용시간 유형과 유형별 적정 비용	101
3. 유치원 이용시간 유형과 유형별 적정 비용	117
V. 이용시간 차등 적용을 위한 정책제언	123
1. 이용시간 유형 다양화 정책 필요 배경	123
2. 이용시간 유형 구분 및 이유	125
3. 비용 지원	128
4. 맺는 말	132

참고문헌	134
부록	137
<부록 I> 조사 대상 보육시설, 유치원 일반 특성	139
<부록 II> 조사표 2종	143

표 목 차

〈표 I-3-1〉 설문조사 내용	5
〈표 I-3-2〉 설문조사 결과 조사완료 기관수	5
〈표 I-4-1〉 표준보육료 산출에 포함된 요인	9
〈표 I-4-2〉 연령별 아동 1인당 표준교육비(종일제)	10
〈표 I-4-3〉 연령별 아동 1인당 표준교육비(연장제)	13
〈표 II-1-1〉 호주의 0~12세 아동 보육서비스 주당 이용시간 분포(2005)	20
〈표 II-1-2〉 호주의 소득 기준 및 아동수 별 CCB 지원 비율 요약(2007~2008)	23
〈표 II-1-3〉 호주의 보육수당 지원 수준 결정	23
〈표 II-1-4〉 호주의 보육급여(CCB)의 요건(2007)	24
〈표 II-1-5〉 일본 동경도 세다가야구 보육소 입소 우선순위 고려 기본 요인	26
〈표 II-1-6〉 일본 동경도 세다가야구 보육소 입소 순위 조정지수	27
〈표 II-1-7〉 일본의 연간 유치원 교육비	28
〈표 II-1-8〉 일본 표준보육단가 산출 항목	29
〈표 II-1-9〉 일본 요코하마시 아동별 차등보육료 징수 기준과 국가 기준(2006)	31
〈표 II-1-10〉 스웨덴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률(2005)	33
〈표 II-1-11〉 스웨덴 종일제 부모부담 비용	35
〈표 II-1-12〉 지방정부(Municipality) 서비스 유형별 소요비용 중 부모 부담 비율	35
〈표 II-2-1〉 소득수준별·연도별 재정지원 계획(안)	38
〈표 II-2-2〉 1999년 표준보육단가 항목별 구성비율	41
〈표 II-2-3〉 연도별 지원단가	41
〈표 II-2-4〉 조세연구원 산출 종일제 표준보육료(2005)	42
〈표 II-2-5〉 여성가족부 조정 지원 단가 구성 추정 금액(2005)	43
〈표 II-2-6〉 시설유형별 보육비용 기준안(2004)	43
〈표 II-2-7〉 보육시설 및 유치원 시설의 표준비용 산출 구성항목	44
〈표 II-2-8〉 2008년 계획 및 실제	45
〈표 II-2-9〉 지자체별 유아 보육료 수납 한도액	45
〈표 II-2-10〉 시·도별 기타 비용 수납 한도액	46
〈표 II-2-11〉 서울시 각 구의 추가 수납액 기준	47
〈표 II-2-12〉 경기도 시군 기타 비용 월 한도액	48
〈표 III-1-1〉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 및 미이용 아동 현황	52

〈표 III-1- 2〉	미취학 아동 연령별 모 취업여부	52
〈표 III-1- 3〉	아동 연령별, 모 취업여부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2007)	53
〈표 III-1- 4〉	모 취업여부별 영유아 양육 지원서비스 이용률(2004)	54
〈표 III-1- 5〉	보육·교육 기관 이용 이유(2004, 2007)	55
〈표 III-1- 6〉	모 취업여부별 보육·교육 기관 이용 이유	56
〈표 III-1- 7〉	아동 연령별 보육·교육 기관 이용 이유	56
〈표 III-2- 1〉	기관 이용 영아와 유아 모의 취업여부	57
〈표 III-2- 2〉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취업모 자녀 비율	58
〈표 III-2- 3〉	보육시설의 아동 중 취업모 자녀 비율	58
〈표 III-2- 4〉	연령별 보육시설 운영 일수	60
〈표 III-2- 5〉	평일 개원 및 폐원 시각 분포	61
〈표 III-2- 6〉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평일 운영시간	62
〈표 III-2- 7〉	시설유형 및 지역별 평일 보육시설 운영시간 평균	62
〈표 III-2- 8〉	평일 아동에 적용하는 보육시간 유형	63
〈표 III-2- 9〉	단축형 I 미적용 이유	64
〈표 III-2-10〉	종일제(6시 이후) 귀가 아동 비율	65
〈표 III-2-11〉	보육교사 8시간 준수 여부	67
〈표 III-2-12〉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여부	67
〈표 III-2-13〉	보육시설 이용 일수	68
〈표 III-2-14〉	영아와 유아 등원, 귀가 시각(2007)	70
〈표 III-2-15〉	보육시설 유형별 영아 이용시간	70
〈표 III-2-16〉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시간	72
〈표 III-2-17〉	종일제와 2-3시 귀가 아동간 보육료에 차등을 두는 시설 비율	73
〈표 III-2-18〉	종일제와 2-3시 귀가 아동간 보육료 차액	73
〈표 III-2-19〉	종일제와 4-5시 귀가 아동간 보육료에 차등을 두는 시설 비율	74
〈표 III-2-20〉	종일제와 4-5시 귀가 아동간 보육료 차액	75
〈표 III-2-21〉	연령별 이용시간 유형별 보육료	76
〈표 III-2-22〉	0세아 보육료	77
〈표 III-2-23〉	만1세아 보육료	78
〈표 III-2-24〉	만2세아 보육료	78
〈표 III-2-25〉	만3세아 보육료	79
〈표 III-2-26〉	만4세 이상아 보육료	79

〈표 III-2-27〉	보육료와 정부지원단가 차액 보전 여부	80
〈표 III-2-28〉	보육료 외 기타 비용	81
〈표 III-2-29〉	민간 가정 보육시설 보육료 미지원 아동 보육료	82
〈표 III-3- 1〉	유치원 이용 취업모 자녀 비율	82
〈표 III-3- 2〉	유치원 재원아의 취업모 자녀 비율	83
〈표 III-3- 3〉	주당 유치원 운영 일수	84
〈표 III-3- 4〉	유치원 평일 개원 및 폐원시각	85
〈표 III-3- 5〉	유치원 평일 운영시간	85
〈표 III-3- 6〉	유치원 기본 운영시간 유형	86
〈표 III-3- 7〉	유치원교사 8시간 근무 준수 여부	87
〈표 III-3- 8〉	유치원교사 초과근무 수당 지급 여부	88
〈표 III-3- 9〉	유치원 종일반 담당교사 채용 여부 및 신분	89
〈표 III-3-10〉	모 취업여부별 유치원 취원 아동 이용시간(2004)	89
〈표 III-3-11〉	유치원 이용시간 유형별 재원 아동 비율	90
〈표 III-3-12〉	유치원 기본수업료 책정방식(만4세아 기준)	91
〈표 III-3-13〉	유치원 기본수업료(만4세아 기준)	92
〈표 III-3-14〉	반일제 기준 유치원의 수업료 및 급식비 추가 수납액	93
〈표 III-3-15〉	연장제 및 종일제 기준 유치원의 수업료 및 급식비 추가 수납액	94
〈표 III-3-16〉	유치원 기본수업료 외 기타비용 수납액(만4세아 기준)	95
〈표 III-3-17〉	저소득층 무상교육비 지원금과 유치원교육비의 차액 처리 방법	97
〈표 III-3-18〉	유아교육비 미지원 아동의 유치원 설립유형별 월 수업료	97
〈표 IV-2- 1〉	비용 산출에 적용한 보육시설 이용시간 유형별 교사배치와 교사 1인당 아동수	103
〈표 IV-2- 2〉	종일제 보육비용(2008)	106
〈표 IV-2- 3〉	급식단가 산출 예(100인 기준)	107
〈표 IV-2- 4〉	5세 보육프로그램 일과운영의 예	108
〈표 IV-2- 5〉	시간단축형 보육비용(2008)	109
〈표 IV-2- 6〉	관리운영비 산출 예: 3세 이상아 최저 보육비(100인)	111
〈표 IV-2- 7〉	12시간 보육 시 인건비 추가 비용(2008)	112
〈표 IV-2- 8〉	12시간 종일제 보육비용(2008)	113
〈표 IV-2- 9〉	12시간 종일제 이용 아동수 추정	115
〈표 IV-2-10〉	12시간 보육 시 정규교사 채용 총 추가 소요비용	115

〈표 IV-2-11〉 0, 1세아 3시간제 보육비용	116
〈표 IV-3- 1〉 사립유치원 학급수 분포	118
〈표 IV-3- 2〉 사립유치원 원아수별 학급 현황	119
〈표 IV-3- 3〉 연장제 유아교육 비용	121
〈표 IV-3- 4〉 종일제 유아교육 비용	122
〈표 IV-3- 5〉 유치원 종일제 교사 채용 총 소요비용	122
〈표 V-2- 1〉 이용시간 유형별 보육 일과 운영 사례	128
〈표 V-3- 1〉 이용시간 유형별 성격	129
〈표 V-3- 2〉 경기도 취업여성 보육지원 시 취업 증명	129

그림 목 차

〔그림 II-2-1〕 0세아 보육비용 지원(2008)	37
〔그림 II-2-2〕 만3세아 보육비용 지원(2008)	38

부 록 표 목 차

〈부표 I-1-1〉 유형별 보육시설 소재지	139
〈부표 I-1-2〉 보육시설의 실외놀이터 보유 상태	140
〈부표 I-1-3〉 보육시설 평가인증 상태	140
〈부표 I-2-1〉 유치원 건물 형태	141
〈부표 I-2-2〉 유치원의 실외놀이터 보유 상태	14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보육 및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부모의 보육료 경감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차상위계층까지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수준까지 차등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보육시설을 다니는 영아의 경우는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기본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육재정 투입에 대한 국민 체감도는 낮은 수준으로, 크게 증가한 정부의 보육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제도적으로 보육서비스는 종일제로 획일화되어 있고 이에 부가하여 야간, 24시간의 연장형 보육서비스 확대가 추진되고 있으며, 유아교육은 반일제로부터 연장제, 8시간 종일제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추세에 있다.¹⁾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다양한 요구를 가진 부모들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보육의 경우 원칙적으로 12시간 운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정부 지침을 충실하게 따르는 대부분의 국공립보육시설 등은 종일제를 기준으로 운영되므로, 종일제 서비스가 필요 없는 아동도 늦게까지 보육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아동의 입장에서 획일적인 종일제 서비스가 바람직한지도 문제가 된다. 정부가 제시하는 보육료 상한선이나 정부 지원 단가는 모두 종일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획일화된 제도는 부모들의 요구나 현실과는 많은 괴리가 있기 때문에 불합리와 모순 발생의 요인이 된다.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시간은 개인별 차이가 크다.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시간은 취업모 자녀의 경우 평균 8시간, 미취업모 자녀의 경우 평균 6시간 30분이고,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34%가 유치원 연장제 시간과 비슷한 5시간 정도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한 후 오후 2~3시에 하원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많은 보육시설에서 부모가 납부해야 하는 보육료를 기준 보육료보다 낮게 책정하여 수납하기도 하나, 정부로부터는 종일제 기

1) 보육과 유아교육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에도 차이가 있음. 연장형 보육은 12시간 이상의 보육을 의미하는 데 비하여 연장형 유아교육은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으로 반일제와 8시간 종일제 사이의 시간 이용을 의미함.

준 금액을 모두 지원받고 있다. 특히 영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그 금액이 커서 예산의 낭비는 물론 시설과 부모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소지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

한편 유치원 교육비는 대체로 반일제, 또는 연장제가 기준이고, 연장제나 종일제 기준 이상의 교육 시에는 추가 비용을 수납하는 형태로 교육비가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 그러나 소득계층별 차등교육비 지원 단가에는 보육시설의 종일제 보육료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무상교육 대상자의 경우도 연장제나 종일제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모두 부모가 부담한다. 따라서 효율성보다는 부모 부담 완화가 더 큰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종일제 유치원의 종일제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아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보육정책이 수요자보다는 공급자의 시각에서, 효율성보다는 양적 확충 자체에 우선순위를 두어 발생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수요자의 요구보다는 시설 운영 측면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고, 시설이나 예산의 양적 확충을 예산 사용의 효율성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라 하겠다. 초기 보육사업은 저소득층 중심의 사업이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경우 어린 자녀를 기르는 여성이라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취업을 희망할 것이라는 점을 당연시하고 보육서비스나 재정 지원도 이에 부응하도록 종일제 서비스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보육서비스의 이용과 정부의 지원이 보편화되면서 취업모나 야간근로여성 등 특별한 요구를 가진 가정 자녀 이외에 미취업모 자녀도 정책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나 정부의 지원은 과거와 동일한 기준을 유지한 채 대상 확대에 따른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보편성을 무조건적, 무차별적인 동일한 이용권 보장으로 이해하는 해석상의 오류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취업여부 등 가정의 보육 욕구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지원 기준을 두고 있는 부분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부모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보육·유아교육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보육재정도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 보육·유아교육 서비스와 비용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정부의 지원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스웨덴, 호주,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입소 및 보육료 지원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호주와 스웨덴의 경우 보육시설은 모두 종일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은 시설 운영과 분리하여 다양한 형태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취업모

등 아동을 적절히 보호하기 어려운 가정의 자녀와 미취업모 자녀를 구분하여 비용이 지원되는 이용시간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보육시설 입소 시 어머니의 취업여부, 근로시간, 개호 필요 가족 유무 등 제반 조건을 매우 엄격하게 점수화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보육서비스 이용시간 유형을 다양화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이용시간에 부합되도록 수납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용시간을 유형화하여 유형별로 총 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부 지원 비용을 차등 적용하여 어머니의 취업여부 등 가정 형편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수요자의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정 지원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재정 사용의 효율화를 제고하고 표준비용 적용 방식이 다른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통일된 기준 마련의 기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보육과 유아교육 서비스의 시간 유형에 따른 이용 실태와 비용을 파악하여 이러한 서비스에 적절한 비용을 추정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운영시간, 아동의 이용시간 유형 및 이용시간 유형별 보육료와 교육비를 파악하였다.

둘째, 이용자 특성에 따라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 비용을 차등 적용하는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외국의 경우 모의 취업상태가 중요한 변수이므로 모의 취업상태별 육아지원기관 이용시 지원 가능한 시간의 차등 적용 사례를 살펴보았다.

셋째, 이용시간 유형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유형별 적정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를 추정하였다. 기존의 정부 지원 단가에 기초하되, 현재 법적 기준 이외에 교사 인력의 근로기준법 준수 및 이에 따른 보조교사 제도 적용 등 제반 근무환경 개선 요인을 고려하여 추정하였다.

넷째, 이용시간 유형 시나리오별 검토를 토대로 보육시설과 유치원에서 적용 가능한 이용시간 유형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가. 국내외 관련 자료 수집, 분석

기존의 보육료·교육비 관련 법, 제도, 현황 통계, 관련 연구문헌 등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기존 연구 결과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나. 기존자료 분석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부모 조사 자료는 기존에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기존 자료를 추가로 분석하여 기관 이용, 이용시간과 이에 따르는 비용 등의 실태를 산출하였다.

이용한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육아정책개발센터가 조사한 「2007년 영아 보육 실태조사」 자료와 「2007년 보육시설 유아 기본보조금 평가를 위한 조사」 자료,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의 2007년 영아 기본보조금 심층 평가를 위해서 실시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국민 만족도 조사」 자료이다.

다. 전화 설문조사 실시

1) 시·군·구 조사

시·도와 시·군·구 보육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역에 고시된 보육료와 추가 경비 수준을 파악하였다.

2) 보육시설과 유치원 조사

보육시설의 시설장과 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전국 보육시설과 유치원 명단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를 받아 확보한 보육시설 명단과 유치원 명단 중에서 시·군·구 단위로 각 3개소씩 무작위로 표본 추출하였다. 목표로 하는 유효 조사표 수가 1,400개소이므로 시·군·구별로 유치원과 보육시설 각 3개소씩을 조사하고자 한 것이다. 조사 대상 선정시 시·군·구별로 보육시설은 민간보육시설 2개소와 가정보

육시설 1개소, 유치원은 사립유치원 2개원과 공립유치원 1개원을 원칙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전화조사로, 조사 전문회사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8년 6월 중이었다.

조사문항은 기관의 일반 사항과 이용 아동 및 비용 관련 사항에 국한하였다(표 I-3-1 참조).

조사결과 보육시설 715개소, 유치원 704개원의 조사가 완료되었다. 분석하기 전에 조사자료에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가중치는 조사 완료된 설립 유형 및 지역규모별 보육시설, 유치원 수를 보육통계와 유치원 통계로 집계된 설립 유형 및 지역규모별 보육시설, 유치원 분포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으로 부여하였다²⁾(표 I-3-2 참조).

〈표 I-3-1〉 설문조사 내용

구분	문항	
일반사항	- 설치 유형	- 소재지, 위치, 층수 등 입지
	- 실외놀이터	- 운영일수, 운영시간
	- 평가(인증) 여부	- 교사 8시간 근무 준수 여부
아동	- 정원, 현원, - 귀가시간별 아동수	- 취업모 자녀 수
	- 보육료, 기타 수납 비용 - 비용 관련 의견	- 무상보육 대상아동 차액 수납여부

〈표 I-3-2〉 설문조사 결과 조사완료 기관수

단위: 개소

보육시설				유치원			
구분	모수	조사완료수	가중치	구분	모수	조사완료수	가중치
전체	26,266	715	-	전체	8,290	704	-
민간				국공립			
전체	13,081	478	-	전체	4,460	235	-
대도시	5,469	148	1.006	대도시	549	71	0.657
중소도시	5,467	140	1.063	중소도시	1,204	42	2.434
읍면	2,145	190	0.307	읍면	2,707	122	1.884
가정				사립			
전체	13,184	237	-	전체	3,830	469	-
대도시	5,071	73	1.891	대도시	1,808	146	1.052
중소도시	6,771	75	2.458	중소도시	1,507	151	0.848
읍면	1,342	89	0.410	읍면	515	172	0.254

2) 조사 자료 분석결과로 제시된 제표의 ()에 기록된 사례수는 실제 조사된 사례수임.

라. 이용시간 유형 시나리오 설정 및 시뮬레이션

이용시간 유형별 표준비용과 제반 여건 개선을 적용한 가상 이용시간 시나리오별 유치원 수업료 및 보육시설 보육료를 추정하고, 추가 소요 예산을 추정하였다.

마. 전문가 의견 수렴

보육과 유아교육 전문가, 학자 및 현장 관계자와 간담회 실시하여 정책대안의 타당성과 실제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4. 선행연구

양호한 수준의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보육 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나아가 영유아의 발달에도 영향을 준다. 적절한 재정 확보 및 배분을 위해서는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여 표준보육·교육비용을 산출해야 한다. 본 절에서는 그동안 수행된 관련 연구를 표준보육·교육단가 관련 연구와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 관련 연구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가. 표준보육단가 관련 연구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보육조건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인 비용을 산출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 표준보육단가 관련 연구를 단가 산출과 합리적인 단가 산출을 위한 제언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표준보육단가 산출 연구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요청으로 추진된 표준보육단가 산출 연구는 행동과학연구소, 삼성복지재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세연구원의 4개 연구가 있는데, 이들 연구 간의 연계성은 없었으며, 정책에 기초로 활용된 연구는 행동과학연구소와 조세연구원의 연구이다. 각 연구의 내용, 특성 및 활용성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행동과학연구소의 연구

표준보육단가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한국행동과학연구소(이성진 외, 1990)의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산출된 표준보육단가는 종사자인건비, 종사자급식비, 아동급식비, 시설관리운영비, 교육자료 구입비로 구성되어 있다. 종사자인건비에는 급여와 상여금, 급식비 등이 포함되었으며, 아동급식비의 경우 영아와 유아를 분리하여 산출하였다. 시설관리운영비는 난방비, 공공요금, 수용경비를 포함하였으며, 여기에는 모두 최소 기준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보육시설을 5개 규모(아동수 30명, 44명, 66명, 88명, 110명)로 나누어 표준보육단가를 제시하였다.

정부는 이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산정한 표준보육단가를 1999년까지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표준보육단가를 산정하지 않고, 기존의 표준보육단가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정부의 보육료 지원기준으로 사용하였다. 단가 내역이 마지막으로 공시된 1999년의 표준보육단가에는 종사자인건비, 보육아동급식비, 교재교구비, 시설관리운영비, 차량유지비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이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나) 삼성복지재단의 연구

삼성복지재단(2000)에서는 서울특별시의 지원으로 합리적인 표준보육단가를 산출하고, 표준보육단가 산출과정에서 제기된 재정지원 제도에 관한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표준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시설 규모별, 아동 연령별, 모형별로 보육시설을 구분하여 단가를 산출하였다. 1999년 서울특별시 보육시설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보육시설 규모에 따라 소형(39인형), 중형(79인형), 대형(131인형)으로 구분하고, 2000년 현행 표준보육단가와 같이 아동의 연령에 따라 만2세 미만, 만2세, 만3세 이상으로 유형을 나누어 유형별로 최저보육단가와 표준보육단가를 산출하였다. 최저보육단가 모형에는 단순 보호 차원에서 기본적인 탁아 기능만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되는 기본적인 비용만이 포함되어 있으며, 표준보육단가 모형에는 교육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표준보육단가 모형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종사자인건비가 적용되었으며, 기본적인 급간식, 교재교구 제공 등의 조건을 갖춘 26개 삼성어린이집의 10년간 보육비용 실적치를 바탕으로 표준보육비가 산출되었다. 표준보육단가 산출시 포함된 항목은 인건비, 아동급식비, 교재교구비, 시설관리운영비의 4개이었다.

이 연구는 실제 보육시설 운영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보육시설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별도의 재정 지원이 있는 특별한 시설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일반 보육시설에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정책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육시설을 유형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로 구분하고, 규모에 따라 32인형, 79인형, 131인형으로 구분하여 표준보육단가를 산정하였다(변용찬 외, 2002). 단가 항목은 인건비, 아동급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차량운영비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자는 기존의 표준보육단가에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인 시설환경개선비와 보육교사 재교육비가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인건비에 보육교사 재교육비를 포함하고, 건물유지비 외에 시설환경개선비를 관리운영비에 별도로 포함하여 단가를 산정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현황에 기초하여 2차적인 방식으로 산정한 연구로 이상보다는 현실을 더 많이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연구 결과 역시 정책으로 반영되지는 않았다.

라) 조세연구원의 연구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박기백 등(2005)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육 및 유치원 교육비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표준 보육 및 교육단가 산정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표준’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통해 표준보육비 및 표준교육비에 포함해야 할 내용과 수준을 규명하였다.

이 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된 것은 만3세~5세 유아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에서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인건비 산정시 아동의 연령별 교사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고, 동일 학력과 동일 경력을 가진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인건비를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이를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의 교사 급여를 종사자인건비 최저치로, 국공립유치원의 교사 급여를 최고치로 설정하였다. 아동급간식비는 보육 및 교육 시간에 따라 급간식 횟수를 달리하여 식단을 구성하고 아동 연령별로 필요 열량을 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계산하였다. 교재교구비는 연령별로 커리큘럼을 설정하여 이에 필요한 교재비와 교실설비비 등을 계산하였고, 관리운영비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현실적인 운영비용에 근거하여 산출하였다. 시설설

치비는 보육시설의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 1인당 면적기준인 80+3Nm²에 근거하여 건축비³⁾, 건물수선유지비, 유원장 설비비의 세부 항목을 구성하여 산출하였다(표 I-4-1 참조).

〈표 I-4-1〉 표준보육료 산출에 포함된 요인

구분	1999(복지부)		2004(조세연)	
	항목	배분방식	항목	배분방식
인건비	기본급·상여급, 퇴직적립금, 직급보조비, 급식비, 보육수당, 시간외 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영아담당수당	교사대 아동 비율 적용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 가계보전, 보전수당, 교직수당, 담임수당,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보직수당	교사대 아동 비율 적용
급식비	주부식비와 영양급식비	전연령 동일 단가	최소 칼로리	연령별 차등
교재교구비		전연령 동일 단가	교실설비비, 교육재료비 및 소모품, 현장학습비, 실험실습비	연령별 차등
관리운영비	난방연료비, 공공요금, 수용경비, 건물유지비	전연령 동일 배분	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수용경비	연령별 차등
시설설치비	-	-	건축비, 건물수선유지비, 놀이터설치비	연령별 차등
차량운영비		전연령 동일 배분	-	-

자료: 보건복지부(1999). 보육사업안내
박기백 외(2005).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분담수준에 관한 연구. 여성부·조세연구원.

표준보육단가 산출의 기준은 시설규모, 영유아의 연령, 보육서비스 제공시간이었다. 보육시설은 종일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연장제를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있으므로, 종일제(8시간+최고 4시간)와 연장제(5~6시간)로 나누어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단가를 달리 산출하였다.

또한 ‘표준’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에 대한 관점이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단가를 산출하였다. 제1안은 국공립보육시설의 필요비용 수준을 기준으로 산출하였고, 제2안은 국공립유치원의 필요비용 수준을 근거로 산출한 것이다.

3) 건축비는 m²당 606,000원을 적용한 것임.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산출된 종일제 표준보육단가는 <표 1-4-2>와 같다.

<표 1-4-2> 연령별 아동 1인당 표준교육비(종일제)

단위: 원

구 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0세	686,566	942,673	806,000	1,105,881	790,287	1,084,150	788,973	1,076,483	784,796	1,073,936	780,965	1,065,728	773,788	1,054,888
1세	442,097	600,609	542,966	737,390	523,260	710,699	524,038	706,463	518,979	702,047	517,853	697,694	510,496	687,478
2세	330,238	445,644	423,174	571,149	401,757	542,311	403,333	539,427	397,967	534,295	398,000	531,594	390,566	521,646
3세	-	-	289,394	383,559	265,520	351,627	267,143	348,557	262,712	344,107	263,451	342,700	255,913	335,619
4세	-	-	269,869	352,437	245,672	320,110	247,529	317,434	243,283	313,092	244,154	311,938	236,595	302,425
5세	-	-	271,843	355,257	247,646	322,930	249,503	320,254	254,642	315,912	246,128	314,758	238,569	305,245

자료: 박기백 외(2005).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여성부·조세연구원

이 외에 방과후보육 비용을 학기 중의 반일제와 방학 중의 종일제로 나누어 1~2학급의 규모에 대해 산출하였고,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의 표준비용도 30인, 50인, 80인 규모로 분리하여 산정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다른 연구와 달리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기준을 동일하게 맞추고자 노력한 연구라는 특성을 갖는다. 또한 인건비뿐 아니라 관리운영비에서도 아동 연령별로 가중치를 두어 영아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을 부과하였고 건축비를 부분적으로 포함시켰다는 특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 산출된 단가는 여성가족부 정책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2) 보육단가 관련 비판과 제언에 관한 연구

표준보육단가 산정 연구 이외에 그동안의 표준보육단가 관련 선행연구의 주된 내용은 정부 보육단가 항목에 관한 문제 제기와 산출 기준에 대한 제언으로 나뉜다.

먼저 항목과 관련하여, 서문희 등(2003)은 정부의 보육 단가에 반영된 항목 이외에도 보육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매우 많으며, 반영된 항목의 구성요인도 매우 한정되어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표준보육단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사자 인건비 책정의 문제는 여러 연구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정영숙(1996)은 사회복지시설 직원 봉급표에 의해 책정되고 있는 종사자인건비의

기준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였고, 삼성복지재단(2000)의 연구에서는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을 고려한 보수기준 마련과 정규교사의 교대근무에 투입될 보조인력과 청소인력을 고려한 인건비 산출 모델 개발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와 더불어, 종사자 보수교육을 위한 재교육비 또한 표준보육단가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변용찬 외, 2002; 정영숙, 1996). 한편, 변용찬 등(2002)과 삼성복지재단(2000)의 연구에서는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환경 개선비가 표준보육단가 항목에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표준보육단가 산출 기준 제안에 관한 내용을 보면, 시설의 규모(김연명, 1994; 문선화, 1995; 서문희 외, 2003; 정영숙, 1996), 아동의 연령(문선화, 1995; 서문희, 2003; 정영숙, 1996), 시설의 소재지역(서문희 외, 2003; 정영숙, 1996)을 산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설 규모와 관련된 제안들은 기존의 보육단가에 시설의 규모가 반영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에 따른 시설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또한 시설의 규모 변동에 따라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단가 산정시 보육 아동수에 따른 세밀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변용찬 외, 2002). 아동의 연령에 관해서도 연령을 세부적으로 나눌 것을 제안하였고(문선화, 1995; 정영숙, 1996), 특히 서문희 등(2003)은 만2세 미만은 월령에 따라 보육비용에 차이가 크게 나타나므로 0세와 만1세로 구분하여 단가를 산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보육시설의 소재지역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오벽지로 세분화하여 표준보육단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며(서문희 외, 2003), 소재지역에 따라 종사자의 급여 및 물가수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가 시설운영비와 종사자인건비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었다(변용찬 외, 2002). 한편, 서문희 등(2003)은 방과후 보육이나 장애아동 보육 등에 대해서도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여 이에 대한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 밖에, 보육료 수준이 낮으면 민간보육시설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보호자의 부담을 감소시키나 이러한 표준보육단가가 지속되면 보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보육료를 균형있게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며(정영숙, 1996), 삼성복지재단(2000)의 연구에서는 단가 항목의 준거에 대한 학문적·경험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지적과 제안들은 후속된 연구나 정책에서 부분적으로 반영되었고, 또 일부는 아직도 과제로 남아 있다. 예를 들어서 지원단가의 연령별 세분화는 반영되었으나 지역별 차이의 반영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나. 표준교육단가 관련 연구

유치원 교육재정의 확보와 올바른 배분을 위하여 그동안 수행된 유치원 교육 단가 관련 연구를 단가 산출과 합리적인 단가 산출을 위한 제언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1) 표준교육 단가 산출 연구

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우리나라에서 표준교육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는 1988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시작되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시점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유치원 표준교육비는 연구범주에 포함되지 않다가, 유아교육법 제정을 계기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2005년에 이르러서야 표준교육비 연구에 유치원 표준교육비가 포함되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2005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유·초·중·고등학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공은배 외, 2005), 이 연구에서 산출한 표준교육비 항목은 교수-학습활동경비와 학교공통운영비로 구성되어 있다. 교수-학습활동경비는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직접 투입되는 경비로 여기에는 교구·설비비와 재료비 등이 포함된다. 공통운영 경비에는 운영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소용되는 비용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인건비, 여비, 전기수도사용료, 일반용품비, 기관운영관공비 등이 해당된다. 이 연구에서는 인건비는 법령에 의해 호봉에 근거한 봉급과 수당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별도 산출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인건비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하지 않고 공통운영경비에 포함하여 산출하였다.

이 연구는 유치원의 종일제 운영을 고려하였으나 교과활동경비 산출에만 반영하였으며, 유치원 표준교육비 산출 모형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기존 초·중등학교 표준교육비 연구에서 사용하던 모형을 그대로 적용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 결과 교과의 개념이 없는 유치원 표준교수-학습활동경비를 교과활동경비로만 한정하였고, 그 외 경비를 유치원 공통운영경비로 취급하여 산출하였다. 유아의 발달적 특징으로 인해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상이하므로 초·중등학교 표준교육비 산출모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엄문영, 2006)는 비판을 받는다.

나) 조세연구원의 연구

박기백 등(2005)은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보육시설 표준보육비와 함께 유치원 표준교육비를 산출하였다. 표준교육단가는 유치원을 통해 만3~5세 유아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만3~5세 유아에게 제공되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서비스 내용을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국공립보육시설 교사의 급여를 최저치로, 국공립유치원 교사의 급여를 최고치로 설정하고, 동일학력과 동일경력을 가진 유치원교사의 인건비를 보육교사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표준교육단가의 산정 기준은 표준보육단가 산정 기준과 동일하며, 이에 근거하여 산정된 연장제 아동 연령별 표준교육단가는 <표 I-4-3>과 같다.

<표 I-4-3> 연령별 아동 1인당 표준교육비(연장제)

단위: 원

구분	55인		105인		160인		205인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3세	-	-	252,119	334,312	242,195	320,279	230,986	304,008
4세	264,408	357,580	237,955	310,530	229,542	298,535	218,977	283,429
5세	254,628	344,136	228,175	297,085	219,762	285,090	209,197	269,985

자료: 박기백 외(2005).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여성부·조세연구원.

이 연구는 교사 1인당 아동수, 운영시간 등을 보육시설에 준하여 적용하고, 유치원은 종일제보다는 연장제가 더 보편적임에도 불구하고 종일제 우선으로 단가를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연장제 단가를 산출하는 등 유치원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제시된 안 중 제1안은 대체로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비용과 유사한 수준이며 제2안은 공립유치원 교육비용 수준이다.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국공립보육시설 수준, 공립유치원 수준에 맞추었기 때문에 비용이 준거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유사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제시된 비용은 연령별로 차이가 있지만 시설규모별 차이는 미미하다. 지역별 요인은 고려하지 않았다. 지역적 차이는 소비재 물가보다도 대체로 지가나 임대료에 크게 반영되는데 비용 산출시 이를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차이가 날 소지가 미미하다.

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구

김현숙(2007)은 아동연령별 적정 유치원 교사 대 아동수에 대한 연구에 기초하여 표준교육비를 산정하였다. 이 연구는 2004년도 조세연구원이 산출한 유아교육비 연구가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치원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요구에 따라 다시 시도된 연구이다.

연령별 유치원 적정학급규모에 대하여 두 가지 안을 설정하였는데, 제1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06)과 조세연구원의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박기백 외, 2005)의 표준교육비 단가산출의 기초자료에 근거한 유치원 연령별 적정학급규모 안이다. 제2안은 이 연구 수행 중에 조사된 교사와 학부모의 요구 분석을 반영한 유치원 연령별 적정학급규모 안이다.

표준교육비 항목은 종사자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 기타요인(차량운영비, 부지구입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연령별, 시설규모별, 서비스 제공시간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차이를 고려하여 다각적으로 표준교육비를 산정하였다.

라) 기타 표준교육비 관련 연구들

정부가 본격적으로 유치원 표준교육비를 산출하기 이전의 표준보육비 관련 연구들은 대체로 원가 산정은 생략하고 현실이나 기존 연구 등을 토대로 2차적 연구로 추진되었다(강경석, 2001; 권은주·황갑성, 1997; 김재규 외, 1994; 박영박., 1988; 이연섭, 1984).

김재규 등(1994)은 표준교육비를 표준인건비와 표준운영비로 나누어 산출하였고, 표준운영비에는 교육활동경비와 공동운영경비가 포함된다. 이 연구는 각 지역교육청 수준의 장학지침을 추가로 고려한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이후 이루어진 권은주와 황갑성(1997)의 연구에서는 앞서 이루어진 연구와 유사하게 표준교육비를 표준인건비와 표준교육관리비로 구성하였고, 표준교육관리비의 하위 항목으로 교육활동경비와 관리운영비를 포함하였다.

강경석(2001)의 연구에서는 표준교육비 구성항목으로 표준인건비와 표준관리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에서 나타난 구성항목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특징적인 점은 우리나라 사립유치원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표준교육조건 설정시 사립학교법과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포함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강경석(2005a, 2005b)은 종일제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표준교육비를 학급규모에 따라 산출하였다. 2005년 이전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대부분 반일제 유치원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유치원 종일제로 확대된 종일제 표준교육비용 산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종일제 교육비를 산출한 것이다.

2) 유치원 표준교육비 관련 제언과 비판에 관한 연구

유치원 표준교육비 산출에 관한 연구(강경석, 2001; 강경석·장영숙, 2001; 공은배, 1994; 권은주·황갑성, 1997; 김재규 외, 1994; 박영박, 1988; 이연섭, 1984)가 수행되었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은 기존 표준교육비 산출모형에서 종일제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공은배 등(2005)은 종일제를 고려하였으나 교과활동경비 산출에만 반영하였으며, 다른 연구들(권은주·황갑성, 1997; 강경석, 2001)도 직접적인 산출 없이 연구의 한계점으로만 언급하였다.

엄문영(2006)은 유아의 발달적 특징으로 인해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상이하므로 유치원 표준교육비를 산출하는 데 있어 초·중등학교 표준교육비 산출모형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별도의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보육시설·유치원 이용시간 관련 연구

1)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시간 실태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시간에 관한 연구로 전국 대표성이 있는 자료는 200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서문희 외, 2002) 자료와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서문희 외, 2005) 자료이다.

이들 자료에 의하면, 모의 취업여부, 아동 연령에 따라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시간에 차이가 있다. 보육시설의 경우 2002년도와 2004년 조사 자료 모두 취업모 자녀의 이용시간이 미취업모 자녀에 비하여 1시간 30분 정도 더 길었다. 연령별로 취업모 자녀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이용시간은 감소하나, 미취업모 자녀는 연령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 유치원의 경우 모의 취업여부별 차이는 30분 정도로 보육시설에 비하여 짧았다.

한편 2007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가 있는 가구조사(서문희·최혜선, 2007)에

서도 취업모 자녀의 이용시간은 영아의 경우 연령이 어릴수록 이용하는 시간이 길었으나, 미취업모 자녀는 0세아의 경우는 만1세아와 만2세아 이용시간에 비하여 오히려 짧은 것으로 산출되었는데, 이는 최근 정부의 영아 보육료 지원 정책의 영향으로 이해된다⁴⁾.

본 연구에서는 2004년 조사와 2007년 조사 자료를 선행연구인 동시에 본 연구에서 현황을 나타내는 자료로 사용하여, 제3장에서 기존 분석 및 추가 분석으로 더욱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이용시간과 비용의 적절성

현재 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12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부가 제시하는 보육료 상한선이나 정부 지원 단가 모두 획일적으로 종일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서문화·나정·최혜선(2006)은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시간에 차이가 나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육아비용 지원이 모두 종일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비용 지원 대상을 연장제, 종일제 이용 아동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된 방안은 만2세 이상아동은 이용시간을 종일제와 연장제 이용아로 구분하고, 0세아와 만1세아에게는 취업모 자녀만을 대상으로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앞으로 여성취업률이 증가할 것을 가정하여 종일제 적용 아동 비율은 현재 영유아 모의 취업률보다 높게 설정하였다. 정부지원 단가는 현 상태에서 크게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방안을 적용한다면 현재의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서로 다른 지원체계를 유지할 경우 보육은 약간의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유치원은 반일제와 연장제에서 종일제가 증가하므로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연구진은 현재의 지원 단가에 대한 개선 없이는 시설의 운영과 인력의 신분 안정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는 교사의 처우 개선과 8시간 근무 등 근로기준법이 준수되는 환경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4) 이는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이 미취업모의 0세아의 시설 이용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며, 동시에 지원 비용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5. 용어 정의와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보육비용·교육비용, 보육료·교육비, 정부지원단가, 기본보조금 등 유사한 용어들이 사용되었다. 이들 용어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육비용·교육비용은 아동 1인을 보육 또는 교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보육료·교육비는 부모가 부담하도록 제시된 금액이다. 정부지원단가는 국공립보육시설을 기준으로 아동 1인을 보육하는 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 중 국공립시설 인건비 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료와 동일하며, 유치원에도 교육비 지원단가로 적용된다. 기본보조금은 민간 시설을 이용하는 영아에게 동일하게 지원하는 금액으로, 국공립보육시설 인건비에 상응하는 비용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현실적인 이용시간 유형을 나타내는 용어로는 유치원은 반일제, 연장제, 종일제가 사용되었다. 이는 유아교육법에 용어 정의로 명시된 용어이다. 유아교육법 제2로 정의에서 ‘반일제’라 함은 1일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하고, ‘시간연장제’라 함은 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하며, ‘종일제’라 함은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육시설의 경우 오후 2~3시 귀가, 5시경 귀가, 7시 내외에 귀가하는 종일제로 구분하여 이를 각각 단축형 I, 단축형 II, 종일제로 용어를 정의하였다. 그러나 보육의 경우는 정책대안 부분에서는 단축형 II를 8시간 종일제로 명명하여 종일제를 8시간과 그 이상인 12시간으로 차별적으로 개념화하였다.

아동이 이용하는 기관으로는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외에 선교원과 반일제 이상 학원이 포함되었다. 선교원은 종교단체가 임의로 설치 운영하는 유사 보육·교육기관이며 반일제 이상학원은 평등학습법에 의한 학원으로 아동이 평일에 지속적으로 반일제 이상 이용할 경우 유사 보육·교육 기능을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들은 보육시설과 유치원 대체 기능을 한다는 데서 현실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현황 파악시 함께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조사 자료의 전국 대표성 문제와 가중치 부여, 그리고 비용 추정시 2차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 중 전국 통계로서 대표성을 갖는 자료는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자료⁵⁾이고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 조사 자료는 전국을 대상으로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기는 하였으나 통계청의 통계 승인 절차는 없었다. 이외의 자료

5) 정부 승인 통계 번호는 제33107호임.

들은 이번 조사 자료를 포함하여 일 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된 본 조사 자료의 경우에는 설립유형과 지역별 분포를 전국 통계 분포 수준으로 조정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대표성 문제를 보완하였다. 다음으로 언급할 사항은 보육비용과 유아교육비용 추정시 인건비는 새로이 산출하고, 이외 비용은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수정, 보완하는 2차적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이 비용 산출보다는 이용시간 다양화에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에 보육비용과 유아교육비용 추정시 인건비를 제외한 항목은 2004년도 조세연구원이 산출한 표준보육단가 등 기존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2차적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Ⅱ. 국내외 보육·유아교육비용 지원 제도

제2장은 외국과 우리나라 보육·유아교육 비용 지원 제도에 관한 것이다. 제1절에서는 외국의 관련 제도와 정책을 검토하였고, 제2절에서는 우리나라 비용 지원 실태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1. 외국의 보육·유아교육 지원 제도

보육·유아교육 비용 지원 제도의 외국 사례로는 호주, 일본, 스웨덴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외국 사례로 이들 국가를 선택한 이유는 이들 세 나라가 각각 대비되는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호주는 보육의 상당부분이 시장에 맡겨진 국가로 모의 취업 등 가정 특성을 기준으로 비용 지원 시간을 차등 적용하는 나라이며, 일본은 취업 여부가 보육시설 입소 우선순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라는 점에서, 그리고 스웨덴은 보편적 보육·유아교육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면서도 어머니의 취업 상태에 따른 지원 시간의 차등 적용으로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기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영유아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가. 호주

1)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유형

호주의 보육서비스 유형은 크게 인가보육과 등록보육으로 구분된다.

인가보육은 종일제 보육(Long Day Care), 가정보육(Family Day Care), 방과후보육(Outside School Hours Care), 일시보육(Occasional Care), 가정내 보육(In-Home Care) 등이 있다. 이 중 가정보육은 0~만12세의 아동을 일정한 자격을 가진 보육자가 통상 자기 집에서 소수의 아동을 돌보는 것으로서, 가정보육센터로 지칭되는 관리기구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가정내 보육(In-Home Care)은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의 집을 방문하여 보육하는 서비스로, 가정내보육센터의 관리를 받는데, 이에 대한 정부 지원 조건은 주로 농촌·산간지역에 살거나, 경찰, 소방수, 간호사, 의사 등

부모의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장애아동을 돌보고 있거나, 부모가 아프거나 또는 미취학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등으로 국한된다.

등록보육은 가족지원사무소(Family Assistance Office; FAO)에 보육제공자로 등록한 조부모, 친인척, 친구, 내니 등에 의한 보육을 말한다. 이들 등록보육 제공자는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보육센터 등 기관에서도 일할 수 있다. 등록보육 이용부모에게는 인가보육의 최소한의 보육급여(Child Care Benefits; CCB) 수준으로 비용이 지원된다.

이외 소외지역 보육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탄력적 서비스(Flexible Services), 원주민 아동을 위한 다기능 원주민 아동 서비스(Multifunctional Aboriginal Children's Services), 이동 서비스(Mobil Children's Services) 등이 있다.

한편으로 유치원은 만3~5세 아동을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며 방학기간 중에는 운영되지 않는다. 지역마다 또는 유치원마다 운영시간, 프로그램, 아동연령 등이 다양하다. 유치원은 취학전 아동을 위한 정규반 이외에도 나이 어린 아동을 위한 준비반(Pre-entry)이나 놀이그룹(Play-group), 일시보육(Occasional Care) 등을 하루 또는 시간 단위로 제공하고 있다.

인가보육과 등록보육 모두 주당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은 길지 않다. 종일보육센터의 경우 주당 평균 18시간, 가정보육센터 17시간 정도이고 일시보육은 5.8시간이다. 등록보육의 이용시간도 친인척 보육이 20.5시간으로 다소 길고 조부모 보육은 12.4시간이다(표 II-1-1 참조).

〈표 II-1-1〉 호주의 0~12세 아동 보육서비스 주당 이용시간 분포(2005)

단위: %

구분	5시간 미만	5-9 시간	10-19 시간	20-29 시간	30-39 시간	40시간 이상	계	평균
인가보육								
종일보육센터	3.3	23.2	36.5	19.9	8.5	8.7	100.0	18.4
가정보육센터	8.2	26.4	30.8	18.7	8.1	7.8	100.0	16.9
일시보육센터	52.2	25.5	22.3	-	-	-	100.0	5.8
기타	47.6	27.6	16.5	-	3.1	5.3	100.0	10.1
등록보육								
조부모	36.9	24.8	19.4	9.6	2.8	6.4	100.0	12.4
친인척	31.6	18.2	16.5	10.2	5.8	18.5	100.0	20.5
기타	49.1	22.2	15.1	7.9	3.4	2.3	100.0	9.7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05). Child Care, June 2005.

보육시설 이용시간이 짧은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호주 보육료 지원정책은 철저하게 취업모 중심의 정책으로 미취업모에게는 주당 24시간만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둘째, 호주의 영유아를 둔 어머니의 취업률이 50%를 넘지 않고, 이들 취업조차도 시간제가 다수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2004년 통계에 의하면 0~만4세 영유아를 둔 기혼 여성의 취업률은 47.5%로 낮고, 여성근로자의 시간제 근로 비율은 71.3%로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보편화되어 되어 있다(OECD, 2006).

유치원 이용 아동의 이용시간 역시 짧다. 조사대상 기간인 1주일 동안 유치원 이용 아동 25만 7천여명을 분석한 결과, 이용시간은 10~14시간이 40.7%로 가장 많고, 15시간 이상이 27.4%, 5시간미만 10.6%, 5~9시간 21.3% 이었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5).

2) 보육시설 입소 순위

호주 보육당국은 보육시설 입소 우선순위 지침(Priority of Access Guideline)을 정하고 있다. 입소 제1순위는 위험에 처하거나 방임 또는 학대를 받는 아동이고, 제2순위는 부모가 취업 증으로 정부가 요구한 취업, 교육 및 훈련 기준을 충족시키는 아동이고, 제3순위는 그 이외 아동이다.

보육시설은 현재 다니고 있는 기타 순위 아동에게 새로 입소하여야 하는 제1, 2순위 아동을 위하여 자리를 비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시설이 이러한 정책을 따른다는 것을 입소할 당시에 부모에게 공지해야 하고, 최소한 14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이외에 방과후보육은 초등학생이 우선이고, 기업이 지원하는 보육시설은 피고용자의 아동이 입소 우선순위를 갖는다.

3) 비용 지원제도

가) 유치원

유치원 교육에서는 대부분 취학전 1년간 정부가 기본 교육비를 부담하고 부모는 교육에 소요되는 물품과 특별활동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많다. Tasmania주와 Northern Territories는 무상으로 교육하고, 이외 지역은 부분적으로 비용을 지불한다. South Australia주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3개월로 구성된 학기당 40~50불 정도의

정해진 비용을 낸다. 준비반(Pre-entry), 놀이그룹(Play-group) 일시보육(Occasional Care) 등은 하루 또는 시간단위로 비용을 책정한다. 2005~2006 회계년도의 South Australia주 유치원 아동 1인당 정부 재정은 연 5,700호주불 정도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OECD(2006)는 전체적으로 유치원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22%만을 부모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나) 보육시설

호주는 2000년에 보육급여(CCB) 제도로 보육료 차등 지원체계를 정비하였다.⁶⁾ 지원수준은 연간 소득, 보육의 유형 및 시간, 보호자의 취업여부, 보육에 대한 필요성 등에 의하여 결정되며 시설중심의 인가보육 또는 개인에 의한 등록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하였다. 이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보육급여 비율을 정교하게 세분화하고 지원 수준을 높이는 등 계속 발전시켜 왔다.

(1) 보육료 및 지원 수준

호주 보육시설의 보육료에는 제약이 없고 시설간의 차이도 크다. 2004년 호주 보육시설 센서스 자료를 보면 주당 보육료는 연령 차이 없이 170불~260불 이상으로 개별 시설간 격차가 크며, 주당 200불 내외를 받는 시설들이 가장 많다(Department of Families,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2005). 그러나 정부의 지원에는 시간당 단가가 적용된다.

2007년의 지원제도를 구체적으로 보면, 모든 소득계층이 보육급여(CCB) 대상으로 지원 금액은 보호자의 소득수준, 자녀수, 아동의 취학여부, 보육시설에 보내는 이유, 보육시간 등에 따라 정해진다.

먼저 <표 II-1-2>는 가구소득과 아동수별 지원 비율로 이 두 가지 요인이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2008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인가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의 연소득이 1자녀 기준 13만 1,570불 이상이면 최소비율인 16.74%를 지원 받고, 소득수준이 3만 5,478불 이하이면 최고 비율인 100%가 적용된다. 그 외 연소득에는 1,000불을 단위로 매우 정교한 지원비율(Partial rate)이 적용되어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자녀수가 증가하면 지원 비율도 증가한다.

6) 2000년 7월부터 종전 자산조사를 통하여 제공되던 보육보조제도(Child Care Assistance)와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하여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족에게 적용되던 보육료 환불제도(Child Care Cash Rebate)를 통합함.

〈표 II-1-2〉 호주의 소득 기준 및 아동수 별 CCB 지원 비율 요약(2007~2008) 단위: %

구분	1명	2명	3명
35,478불 이하 (2007~2008 기준)	100.00 (3.37불)	104.50 (3.52불)	108.73 (3.66불)
40,000불	94.84	100.63	106.15
50,000불	83.43	92.07	100.44
60,000불	72.01	83.51	94.74
70,000불	60.60	74.95	89.03
80,000불	49.19	66.39	83.32
90,000불	37.77	53.68	72.09
100,000불	26.36	39.42	58.77
110,000불	16.74	25.15	45.46
120,000불	16.74	16.74	32.14
130,000불	16.74	16.74	18.83
131,570불 이상 (2007~2008 기준)	16.74 (0.564불)	16.74 (0.564불)	16.74 (0.564불)

주: 실제 보육료 지원 비율은 1,000불 단위로 구성됨.
 자료: Commonwealth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2008). Child Care Benefit.
 URL: <http://www.facs.gov.au/internet/facsinter.net/> 재구성

〈표 II-1-3〉 호주의 보육수당 지원 수준 결정

소득기준	내용
인가된 보육	
종일보육센터	시간당 단가×지원시간×보육수당비율(CCB)×학교비율×시간제비율
일시 및 학교밖 보육	시간당 단가×지원시간×보육수당비율(CCB)×학교비율
가정보육	
- 주당 36.5시간 미만	시간당 단가×지원시간×보육수당비율(CCB)×학교비율×시간제비율
- 주당 37.5~50시간	주당 단가×보육수당비율(CCB)×학교비율
등록된 보육	시간당 단가×지원시간×학교비율

주: 1) 보육료 지원시간은 최고 50시간까지 인정
 2) 보육수당비율은 과세기준액과 자녀수에 기초하여 상세하게 결정하고 있음.
 3) 학교비율은 미취학아동은 100%, 취학아동은 85%를 적용
 4) 시간제 비율은 주당 34시간 미만~38시간을 110~100으로 차등을 둔 것임.
 자료: Commonwealth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2003). Child Care Benefit.
 URL: <http://www.facs.gov.au/internet/facsinter.net/> 재구성

지원 수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지원수준은 인가보육은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있지만 등록보육에는 인가보육의 최소 지원 기준을 적용한다. 즉 아동 1명을 기준으로 보면 인가보육 이용자는 2007~2008년 지원단가인 시간당 3.37불을 모두 지원 받으며,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지원금액이 낮아져 최소 지원액은

단가의 16.74%인 시간당 0.564불이 된다.

한편 등록보육에는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인가보육의 최소 지원액인 시간당 0.564불이 적용된다. 또한 서비스 유형에 따라 조정지수를 부여하여 지원수준을 약간씩 달리한다. 앞서 제시된 <표 II-1-3>은 부모 지원금을 결정하는 공식을 나타낸다.

등록보육(Registered Care)을 이용하는 경우 최고액은 시설보육의 최소액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설보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지원 요건

보육급여(CCB)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호주 주민이어야 하며, 둘째, 현재 호주에 살고 있어야 하고, 셋째, 필수적인 예방접종을 완료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보육시설은 아동에게 예방접종 기록 제시를 요구한다.

지원 대상 서비스의 유형에는 인가보육과 등록보육이 모두 포함되며, 종일보육, 가정보육, 가정내보육, 방과후보육, 일시보육과 가족지원사무소에 등록된 조부모, 친척, 친구, 이웃, 가정부 등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육 등이 이에 해당된다.

<표 II-1-4> 호주의 보육급여(CCB)의 요건(2007)

구분	요건
24시간의 CCB	무조건 1주일에 24시간의 CCB를 받을 수 있음. 부모의 소득, 아동의 연령, 보육시설 이용시간 등에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최소의 급여임
50시간의 CCB	보호자 근로 (일주일에 15시간, 2주일에 30시간 이상) - 고용자, 고용주, 창업, 교육 및 훈련, 구직, 근로 기술 증진을 위한 자발적 근로 등 근로 관련 조사 면제 - 아동 Carer Allowance(장애아동을 돌보는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지불하는 정부지원)를 받는 경우 - 조부모가 돌보는 아동 - 부모 중 1인이 장애인(다른 한부모는 근로 조건 충족하여야 함)

2007년 현재 부모는 취업 등 요건에 따라 아동 1인당 1주일에 최고 24시간, 50시간의 비용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당 24시간까지 기본으로 보장하고, 그 이상은 취업 등 조건에 따라 50시간까지 지원을 보장한다. 24시간 이상 50시간까지 지원 받기 위한 조건에는 본인과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찾고 있는 경우,

혹은 학업이나 연수 중인 경우, 일주일에 최소 15시간의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장애를 가진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수발과 관련된 정부 지원(Carer Allowance, Carer Payment)을 받는 경우, 조부모가 손자에 대한 일차적인 양육의 책임이 있고 소득보장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있는 경우가 해당되며, 최근에는 조부모가 주 보호자인 아동을 위한 특별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2004년부터 50시간 이용 조건을 면제하여 주었다.⁷⁾

나. 일본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영아를 둔 어머니의 취업률은 30%대 초반에 머물고⁸⁾ 3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아지는 형태를 나타낸다(全國保育團體連絡會·保育研究所, 2008c). 이러한 일본의 비용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보육·유아교육서비스 유형

일본의 보육시설은 전통적으로 인가 보육시설과 인가의 보육시설로 구분된다. 인가 시설의 경우 대부분 공립과 법인이 공급 주체로 종일제를 기본으로 시간제보육, 야간보육, 병아보육 등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가의 보육시설에는 가정보육, 사업소내 보육시설, 베이비호텔 등이 있다.

2009년도 보육계획(안)에 따르면, 휴일 및 야간보육시설을 2008년 1,135개소에서 1,310개소로 늘리고, 병아(病兒)보육시설도 2008년 1,307개소에서 1,833개소로 늘린다는 방침이다(全國保育團體連絡會·保育研究所, 2008b).

최근 대기아동 해소 방안으로 지방정부에서 인증하는 보육실이나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시설인 인정어린이집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대기아동이 해소되는 지역은 이들 시설에 미취업모의 자녀도 입소가 가능하다.

2) 보육시설 입소 순위

종일제 보육시설 입소 순위는 보육이 필요한 아동 중심으로 철저하게 관리된다.

7) 과거에는 20시간, 21~50시간, 50시간 초과로 구분하였음. 50시간 이상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일이나 학업, 연수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시간이 일주일에 50시간(출퇴근 시간 포함)을 넘을 경우에 허용하였음.

8) 일본 2006년 총무성 조사에서는 31.0%로 나타났음.

〈표 II-1-5〉 일본 동경도 세다가야구 보육소 입소 우선순위 고려 기본 요인

호	형	보호자(부모)			기준	기간제		
		세 목						
1	출퇴근 근무	외근 등	주 5일 이상 근무, 낮에 주 40시간이상			50	-	
			주 5일 이상 근무, 낮에 주 37시간이상			45		
			주 4일 이상 근무, 낮에 주 35시간이상			40		
			주 4일 이상 근무, 낮에 주 30시간이상			35		
			주 3일 이상 근무, 낮에 주 25시간이상			30		
			주 3일 이상 근무, 낮에 주 20시간이상			25		
			주 3일 이상 근무, 낮에 주 16시간이상			20		
2	재택 근무	자영	주 5일 이상 근무, 낮에 주 40시간이상			50	-	
			주 5일 이상 근무, 낮에 주 37시간이상			45		
			주 4일 이상 근무, 낮에 주 35시간이상			40		
			주 4일 이상 근무, 낮에 주 30시간이상			35		
			주 3일 이상 근무, 낮에 주 25시간이상			30		
			주 3일 이상 근무, 낮에 주 20시간이상			25		
			주 3일 이상 근무, 낮에 주 16시간이상			20		
			주 3일 이상 근무, 낮에 주 12시간이상			15		
		재택	주 4일 이상, 낮에 주 30시간 이상			20		
			주 3일 이상, 낮에 주 12시간 이상			15		
			출산			출산전후 보육이 필요		15
3	출산 질병 장애	질병	1개월 이상 입원			50	-	
			가정내 요양	상시 외병	정신장애 3급이상	50		
					기타	30		
				일반	안정 요	30		
		치료 요	20					
		장애	신체장애 1.2급, 청각장애 3급 이상, 정신장애3급이상 등			50		
			신체장애 3급, 청각장애 4급 이하,			30		
			신체장애 4급이하			20		
4	개호	시설등	주 5일 이상 근무, 낮에 주 30시간이상			50	-	
			주 5일 이상 근무, 낮에 주 20시간이상			45		
			주 4일 이상 근무, 낮에 주 14시간이상			40		
			주 4일 이상 근무, 낮에 주 16시간이상			35		
			주 3일 이상 근무, 낮에 주 18시간이상			30		
			주 3일 이상 근무, 낮에 주 12시간이상			25		
		자택개호	중증장애자 개호			50		
			상시관찰(식사, 배뇨, 목욕 등)하다 필요시			40		
5	재해	재해로 가족 손상, 재해복구 등으로 보육불가				50	6개월	
6	구직	취업 개업 예정	주5일 이상 근무, 낮에 주 37시간 이상			30	1개월	
			주4일 이상 근무, 낮에 주 35시간 이상			25		
			주4일 이상 근무, 낮에 주 30시간 이상			20		
			주3일 이상 근무, 낮에 주 25시간 이상			15		
			주3일 이상 근무, 낮에 주 12시간 이상			10		
7	기타	구직	낮에 구직 이유로 외출			10	2개월	
			취학 등	취학, 기능 습득 등으로 보육 어려움			※①	-
				부재	사망, 이혼, 행방불명, 구금 벌거 등			
기타			※②					

주: ①은 1번 준용, ②는 1-6번 준용

자료: 東京 世田谷區(2006). 保育サービスのごあんない.

〈표 II-1-6〉 일본 동경도 세다가야구 보육소 입소 순위 조정지수

기준	환경	지수
1	복지 대상 가구	+10
2	한부모(동거 친인척 없음), 고아	+20
3	한부모로 동거 친인척 있으나 보육은 하지 않음	+10
4	한부모 원거리 취업(동거 친인척 없음)	+3
5	1년 이상 취업 경험	+2
6	출산 및 육아 휴가	+5
7	동생 출산, 육아휴직으로 쉬다가 다시 입소	+20
8	보호자가 자택에서 보육	-6
9	보호자가 자택 이외에서 보육	-1
10	취업 내정자로 1개월 내 취업 개시	+3
11	취업 내정자로 2개월 내 취업 개시	+2
12	취업 내정자로 3개월 내 취업 개시	+1
13	보호자가 심신장애자 수첩 3급 이상	+5
14	보호자가 심신장애자수첩 4급 이상, 정신장애자 보건복지 수첩 소지	+1
15	동일세대 내 중증 개호 필요 세대원 거주	+2
16	아동이 장애아로 시설이나 병원 다녀야 하므로 부모 취업이 어려운 경우	+10
17	형제자매 산육기에 육아휴업 취득	-5
18	동거조부모(60세 미만) 무직으로 보완적 보육 가능	-6
19	타 형제자매가 입소 중	+5
20	보육실, 보육마마 등 타 서비스 이용하며 대기 중	+6
21	별거 친척이 돌보는 경우	+1
22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	+1
23	특별한 사정으로 전원(이사, 전직, 거리 등)	+3
24	지역외 거주자	-5

자료: 東京 世田谷區(2006). 保育サービスのごあんない.

인가 보육시설은 취업모나 기타 가정 사정으로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만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취업모 중심의 선별적 보육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보육시설 입소순위는 보호자와 가정환경의 다양한 요인을 모두 고려, 합산하여 지수화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로 정한다.

지수는 대체로 기본지수와 조정지수로 구분된다. 기본지수는 동경도 세다가야구의 경우도 출퇴근 및 재택 근로, 출산·질병·장애, 개호, 재해, 구직, 기타의 항목으로 유사한 체계로 항목별 10~50점을 부여하여 합산하는 점수제도를 적용한다(표 II-1-5 참조).

조정지수는 생활보호세대, 한부모세대, 부모 구직 중 세대, 휴직으로 일시퇴원 후 재입소 희망, 생계중심자의 실업 등 다양한 조건에 각각 점수를 부여하여 기본지수에 가산 또는 삭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표 II-1-6 참조).

이러한 지수를 적용한 후 순위가 동일할 경우에도 대비하여 4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1단계는 보육실시 기준 지수가 높은 세대이고, 2단계는 기다린 기간이 긴 아동이며, 3단계는 부재, 질병장애, 외근, 거택외 자영, 개호, 거택내 근로, 출산, 취업 내정, 취학 등, 구직 등에 유형간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4단계는 소득계층이 낮은 순위이다.

3) 비용 지원제도

보육료나 유치원 교육비는 각각 일정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여기에 야간보육 등 이용시간이 연장되면 비용이 추가되는 형태이다.

가) 유치원 교육비

2006년 기준으로 문부과학성에서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단가를 4개 등급으로 나누어 유치원의 수업료를 지원한다. 또한 저출산 대책, 다가구 가정의 비용 부담 완화를 반영하여 출생순위에 차등을 둔다(표 II-1-7 참조).

〈표 II-1-7〉 일본의 연간 유치원 교육비

단위: 천엔

구분	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제1자	제2자	제3자	제1자	제2자	제3자	
생활보호세대	56	33	11	143	85	28	
연소득 290만엔 이하				177	105	35	
연소득 360만엔 이하				77(보조 대상 외)	201	120	40
연소득 680만엔 이하					225	135	45
연소득 680만엔 이상				285(보조 대상 외)			

주: 2005년도 자녀순위는 유치원 이용 자녀 순이며, 2006년부터는 출생순위로 변경되었음.
 자료: 日本 保育研究所(2006). 保育白書.

2009년 일본 유치원 취원 장려비 보조 사업계획에 의하면 형제자매가 유치원아인 경우에 제2자는 제1자 대비 0.7에서 0.5로, 제3자는 0.2에서 전액 지원으로 제2자와 제3자의 보조단가를 조정하여 부모부담률을 조정하였으며, 형제자매가 초등학교 1~3학년인 경우에는 제2자는 0.9에서 0.5로, 제3자는 0.8에서 전액 지원으로 크게 지원 비율을 높일 예정이다(全國保育團體連絡會·保育研究所, 2008b).

나) 보육시설 보육료

보육시설에서 입소 아동의 보호 최소한의 유지 등 보육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운영비⁹⁾라고 하고, 보육단가제도를 통하여 이 비용을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불하게 하고 그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007년 전국 보육료 평균은 294,000엔이다.

(1) 표준보육단가의 산정

일본 보육료 징수기준은 표준보육단가에 기초하고 있다. 일본은 매년 표준보육단가를 산출하여 고시한다. 표준보육단가 산출은 보육시설 규모별로 총인건비와 관리비를 산출, 합산하여 이를 아동수별로 균등하게 나누고 여기에 유아에 한하여 월별 일반생활비 정액을 합하여 보육단가를 산출한다. 표준보육단가에 포함되는 항목은 크게 인건비, 관리비 및 아동일반생활비로 구분되며, 인건비 및 관리비에는 다양한 세부항목이 포함된다(표 II-1-8 참조).

〈표 II-1-8〉 일본 표준보육단가 산출 항목

구분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 급여(특수업무수당, 부양수당, 조정수당, 기말근무수당, 관리직 수당, 초과근무수당, 사회보장 사업주부담금, 통근수당, 주거수당, 축탁의 수당, 피복수당, 사무직원고상비, 연휴대체직원비, 비상급보육사임금(90인 이상 시설), 비상근 조리원 임금(151인 이상 시설)	- 조정수당, 기말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사회보장 사업주부담금은 지역별 13등급으로 차등을 둠
관리비	- 여비, 청비, 수선비, 보건위생비, 직원연수비, 특별관리비, 직원건강관리비, 근무조건개선비	- 지역별 차이 없음
아동일반 생활비	- 유아 월 일정액	- 지역 및 시설규모별 차이 없음

자료: 日本 全國保育協議會(2007). 保育白書 2006.

일본의 표준보육단가는 4세아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여기에 아동연령, 지역, 시설의 규모 민간시설 개선비 등의 가산금으로 제시하고 있다.¹⁰⁾ 이때 인건비 중 각종

9) 예전에는 조치비라고 불렀음.

수당은 13등급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1~13%의 가산금 차이를 둔다. 아동연령별로는 0세아, 만1~2세아, 만3세아 만4세 이상아의 4가지로 구분하고 규모에 따라서는 30인 미만 소규모 시설, 31~45인, 46~60인, 61~90인, 91~120인, 121~150인, 151인 이상 시설의 7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교사대 아동비율은 0세아 1:3, 만1~2세아 1:6, 만3세아 1:20 만4세 이상아 1:30이다.

이와 같이 책정된 표준보육단가는 2006년 만4세 이상아 61~90인 시설의 경우 지역에 따라 36,360원에서 39,710원 사이에 분포한다. 한편 야간 보육은 61~90인 시설의 경우 만3세 미만아는 6,730원, 만3세 이상아는 8,300원이 추가된다. 따라서 이렇게 산출된 액수는 시설 규모와 지역별로 차이가 나지만 아동연령별 차이는 없게 되는데, 이를 만4세 이상아 보육료로 보고 그 이하 아동의 경우 가산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또한 법인 등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4%, 8%, 10%, 12%의 가산금을 다시 추가하여 단가로 책정하고 있다.

기존 보육료 이외에 정규 보육시간 이전 이후 이용시간 연장에 따르는 비용은 철저히 적용한다.

(2) 차등보육료

표준보육단가에 기초한 보육시설 운영비 중에서 50%는 국가가 부담하고 50%를 부모 부담 보육료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부담액 중 1/2는 중앙정부, 1/4는 도도부현, 1/4는 시정촌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부담을 아동복지법으로 정하고 있다.

부모부담은 중앙정부에서는 부모 보육료 징수 기준을 소득계층에 따라서 7계층으로 나누고 있다. 7계층은 생활보호법 피보호세대, 시정촌주민세 비과세 대상자, 소득세과세는 없으나 시정촌주민세 과세대상자, 그 이외의 소득세과세 대상은 전년도 과세수준에 따라서 차등한다. 그러나 실제 보호자가 부담하는 보육료 기준 및 전체 보육료 운영 비용에서 보호자의 부담비율은 지방정부마다 각기 다르다. 중앙정부가 제시한 보육료 징수기준에 대한 지방정부 지원 외에도 지방정부마다 보육내용을 질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지방정부가 국가 기준의 1.5~2.0배 정도를 배정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지역 차이가 심하다.

10) 표준보육단가 산출은 아동연령별로 3세아는 아동 60명당 1인, 1~2세아는 아동 7.5인당 1인, 0세아는 아동 3.3인당 1인의 가산분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음.

〈표 II-1-9〉 일본 요코하마시 아동별 차등보육료 징수 기준과 국가 기준(2006)

단위: 엔

계층 구분	계층구분 정의 2005년도 세액기준	요코하마시 월액						국가기준 월액	
		3세 미만아			3세 이상아			3세 미만아	3세 이상아
		제1자	제2자	제3자	제1자	제2자	제3자		
A	생활보호법 피보호세대	0	0	0	0			0	0
B	시정촌민세 비과세대상 (한부모 세대 등)	0	0	0	0			0	0
	시정촌민세 비과세대상 (상기 이외 세대)	3,000	1,200	300	2,000	800	200	9,000	6,000
C1	균등세 과세대상	6,400	2,500	600	4,700	1,800	400	19,500	16,500
C2	시민세 과세 5000엔 미만	7,800	3,100	700	6,100	2,400	600		
C3	시민세 과세 5000엔 이상	9,500	3,800	900	7,300	2,900	700		
D1	2,400엔 미만	11,900	4,700	1,100	9,100	3,600	900	30,000	27,000
D2	2,400~ 12,000엔 미만	13,700	5,400	1,300	10,500	4,200	1,000		
D3	12,000~ 24,000엔 미만	15,500	6,200	1,500	12,200	4,800	1,200		
D4	24,000~ 48,000엔 미만	19,100	7,600	1,900	15,000	6,000	1,500		
D5	48,000~ 72,000엔 미만	23,600	9,400	2,300	18,800	7,500	1,800		
D6	72,000~ 96,000엔 미만	27,600	11,000	2,700	20,800	8,300	2,000	44,500	41,500
D7	96,000~ 120,000엔 미만	32,400	12,900	3,200	22,300	8,900	2,200		
D8	120,000~ 144,000엔 미만	36,100	14,400	3,600	23,500	9,400	2,300		
D9	144,000~ 168,000엔 미만	39,600	15,800	3,900	24,300	9,700	2,400		
D10	168,000~ 192,000엔 미만	42,600	17,000	4,200	25,100	10,000	2,500	61,000	58,000
D11	192,000~ 216,000엔 미만	45,400	22,700	7,900	25,800	12,900	4,500		
D12	216,000~ 240,000엔 미만	48,100	24,000	8,400	26,500	13,200	4,600		
D13	240,000~ 264,000엔 미만	50,800	25,400	8,800	27,500	13,700	4,800		
D14	264,000~ 288,000엔 미만	52,800	26,400	9,200	28,500	14,200	4,900		
D15	288,000~ 312,000엔 미만	54,400	27,200	9,500	29,800	14,900	5,200		
D16	312,000~ 336,000엔 미만	55,900	33,500	13,900	31,000	18,600	7,700		
D17	336,000~ 360,000엔 미만	57,400	34,400	14,300	31,900	19,100	7,900		
D18	360,000~ 432,000엔 미만	59,700	35,800	14,900	33,000	19,800	8,200	80,000	77,000
D19	432,000~ 640,000엔 미만	61,000	36,600	15,200	34,000	20,400	8,500		
D20	640,000엔 이상	62,500	37,500	15,600	35,500	21,300	8,800		

주: 국가기준은 2자녀가 다니는 경우 두 번째 자녀 보육료는 단가의 1/2이 됨.

보육료를 소득계층별로 차등화하는 경우에도 계층 구분 및 단계가 지역마다 다양하다. 국가 기준에서 정부 부담금 이외에 보육료 징수 금액의 일부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 각각 다른 징수 체계를 적용하므로, 결과적으로 실제로 국가가 제시한 표준보육비용을 그대로 수납하는 지역은 없다. 요코하마시는 26단계

를 적용하고, 동경도 세다가야구는 25단계를 적용한다. 동경도 세다가야구는 만3세 아와 만4세 이상아의 보육료를 구분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자녀 및 3자녀가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들의 보육료는 크게 낮추어 준다. 동경도 세다가야구의 경우, 장애아동 무상보육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로 실제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크게 낮다. 요코하마시의 경우 총 보육시설 운영비 중 보호자 부담은 20.2%이다. 2006년 기준 보육아동 34,747명에 대한 총 보육예산은 486억 7천만엔이다. 이 중 중앙정부 지원액은 12.6%에 불과하다.

일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우려하고 국가기준을 상향조정을 요구하지만, 국가 전반적 개혁 분위기 속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보육시설 등 국가 인가 외 시설의 보육료는 정부가 부분적으로 지원하나, 응익(應益)부담원칙으로 인가 보육시설과는 다소 차이 있다.

(3) 시간연장형 보육료

정해진 종일 보육시간 전후로 시간연장형 보육을 요하는 경우 보육료는 매우 엄격하게 시간단위로 추가된다. 또한 야간보육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단가를 산정하여 정규시간 비용에 가산하여 수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단가는 보육시설 규모별로 다른데, 2007년의 경우 31인~45인 시설의 경우 만3세 이하는 8,770엔, 만4세 이상은 10,340엔이다(全國保育團體連絡會·保育研究所, 2007).

연장보육, 휴일·야간보육 등 특수보육을 하는 보육시설에는 보육료 지원 이외에 기본적으로 시설별 지원금을 보조하고 있다.

다. 스웨덴

1) 보육서비스 유형

유아보육과 교육의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한 스웨덴 보육·교육대상은 1세¹¹⁾부터 12세 아동이며, 서비스는 기관보호와 가정보호(Family Day Care)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기관은 만1~5세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을 위한 피르스콜라로 불리는 유아학교(Preschool) 및 개방형 유아학교(Open Preschool)와 초등학생을 위한 레저타임센터(Leisure time center) 및 개방형 레저타임센터(Open Leisure time

11) 스웨덴은 부모보험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 0세아의 대부분은 부모가 육아휴직을 하고 직접 양육함.

center)로 구분된다. 개방형 시설은 미취업모 가정의 자녀를 위한 것이고, 가정보육은 만1~12세 아동을 위한 것이다. 취학전에는 초등학교 안에 개설된 유아학급에 다닌다.

스웨덴 아동의 기관 이용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만5세아의 경우 대부분의 아동이 유아학교나 가정보육을 이용한다(표 II-1-10 참조). 사립 유아학교 이용아동은 2005년 기준 16.7%이고 사립 레저타임센터 이용아동은 9.2%이다. 가정보육모 이용아동은 12.0%이다(표 II-1-10 참조).

〈표 II-1-10〉 스웨덴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률(2005)

단위: %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유아학교	-	42.0	81.4	85.3	89.8	90.7
공립	-	35.3	67.9	70.7	74.6	75.9
사립	-	6.7	13.5	14.6	15.2	14.8
가정보육	-	4.0	7.1	7.0	6.4	5.8
공립	-	3.4	6.2	6.1	5.7	5.2
사립	-	0.6	1.0	0.9	0.7	0.7

자료: The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Sweden(2006). Children, pupil, and staff National Level. Report 277.

이용시간은 취업모 자녀의 경우 2005년에 주당 평균 31시간으로 조사되어, 1999년 32시간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전체 아동의 이용시간은 1999년 31시간, 2002년 30시간에서 2005년 28시간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미취업모 자녀의 이용 증가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The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Sweden, 2006a).

2)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이용시간의 차이

보편적인 보육정책을 추구하는 스웨덴에서도 취업모와 미취업모를 구분하는 정책이 채택되고 있다. 현재 스웨덴의 유아학교 이용과 관련하여 취업, 학업 등의 이유에 따른 제한은 이용하는 시간으로 구분된다. 2006년 현재 부모가 취업, 학업 상태인 경우에 90%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당 40시간, 미취업 및 육아휴직 상태에 있는 부모 자녀는 15시간 이용으로 차이를 두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조차도 2000년 이후 개혁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채택되었고 그 이전의 영유아 서비스는 취업이나 학업 등으로 자녀를 잘 돌볼 수 없는 부모를 대상으로 제공하여서 지방자치단체 중 약 1/2이 미취업 및 육아휴직 상태에 있

는 부모 자녀에게는 이용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2001년 1월부터 취업이나 학업 상태가 아니어도 최대 15시간의 유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고, 2002년부터는 부모가 다른 형제자매 아동을 돌보기 위하여 휴직상태에 있는 자녀도 유아학교 입학에 허용하는 것으로 확장하였다. 또한 2002년부터 모든 4~5세 아동에게 연 525시간의 무상 교육을 보장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유아교육의 보편적 적용 욕구와 지방정부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스웨덴은 1991년 모든 아동의 유아학교 입학에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1990년대 경기 후퇴로 실업이 증가하고 부모 소득과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화된 비용이 증가하자 지방정부가 재정부담 완화 수단으로 아동집단의 크기를 늘리고 교사대 아동비율을 줄였으며 입학 아동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였다. 미취업모의 자녀에게 유아학교 입학에 불허하는 지방정부가 증가하였고, 휴직 중인 부모들 역시 유아학교 이용이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경제가 좋아지면서 1998년에 보육료를 반으로 줄이자는 사회민주당 선거 공약이 탄력을 받아 비용 상한제, 미취업모 자녀를 포함한 보편적인 유아학교, 그리고 4세 이상 무상 정책 등이 개혁정책이 채택된 것이다(Korpi, 2007).

전통적으로 스웨덴 영유아 정책은 한편으로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동에게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인데, 1990년대에 담당부처 변경을 비롯한 보편적 유아보육 개혁 추진은 유아교육을 평생 교육의 첫 번째 단계로서의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비용 지원과 비용 상한제

보육비용 지불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부모가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이용시간, 월수입, 전체 자녀수 등과 각 지방자치단체와 이용 기관 유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2000년 이후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의 개혁적 정책의 일환으로 부모비용 상한제(Maxatasa)가 도입됨에 따라 부모의 비용 부담이 스웨덴 일반가구 소득의 최대 3%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표 II-1-11 참조). 2007년에 적용한 상한 소득 기준은 42,000크로나이다. 이는 2004년 이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모비용 상한제는 부모협동, 직원협동, 기업운영 사립시설은 물론 개인이 운영하는 소수의 사립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가족이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형편인 경우, 비용을 일정기간 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표 II-1-11〉 스웨덴 종일제 부모부담 비용

단위: 크로나

자녀의 출생 순위	1~5세 보육료(월)	6~12세 보육료(월)
1	1,260(195) 또는 월 소득의 3%	840(130) 또는 월 소득의 2%
2	840(130) 또는 월 소득의 2%	420(65) 또는 월 소득의 1%
3	420(65) 또는 월 소득의 1%	420(65) 또는 월 소득의 1%
4	무료	무료

주: 2008년 11월 기준 1크로나는 183.91원임.
 자료: <http://utbildning.regeringen.se>

부모비용 상한제 적용은 지역간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상한제 적용 이전에는 비용으로 월 6,000크로나를 지불하는 가정도 있었으나 적용 이후 지역간의 격차는 상당 부분 완화되어 2003년 조사에서는 최대 2,280크로나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한제 적용 후 시간제별 보육료를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다(The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Sweden, 2007).

2005년 조사에 의하면 종일제 기준으로 유아학교는 아동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은 141,500크로나로 2004년 대비 8%, 1999년 대비 44%가 증가하였다. 레저타임센터 비용은 93,900크로나로 2004년 대비 5%가 증가하였다. 가정보육 비용은 120,700크로나로 2004년 대비 4%가 증가하였다. 유아학교 총 비용 중 75% 정도가 직원 급여이고 15% 정도가 대지 및 건물 비용이다. 유아학급의 경우에는 총 비용의 65% 정도가 직원 급여이고, 21%가 대지 및 건물 비용이다(The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Sweden, 2006b).

이러한 총 비용 중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유아학교 8%, 레저타임센터 16%, 가정보육 10% 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크다. 전체 아동을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 통계에 의하면 유아학교의 경우 최저인 지자체는 3%이고 하위 90%의 평균은 10%이지만 최대는 30%로 조사되었다. 가정보육도 최저 2%에서 21%로 차이를 나타냈으며, 레저타임센터 또한 4%에서 31%로 차이를 보였다(표 II-1-12 참조).

〈표 II-1-12〉 지방정부(Municipality) 서비스 유형별 소요비용 중 부모 부담 비율

단위: %

구분	평균	최대	최소
보육시설	8	30	3
가정보육	10	21	2
레저타임센터	16	31	4

자료: The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Sweden(2006b). Cost-National Level. Report 280.

한편, 비영리 단체나 부모협동 등에 의해 운영하는 사립보육시설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보조 방식은 인건비지원, 시설지원 등 다양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지원방식은 과거 시설보조금 지원이 주된 방법이고 1993년에는 스톡홀름에서 처음으로 아동별 지원을 실시하여 현재 2개 지역에서 아동별로 지원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2008년 예산(Budget Bill for 2008)에서 아동보육 바우처 제도(Childcare voucher system)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라. 정책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3개 국가의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 정책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 국가가 모두 모두 취업모, 학생 등 양육과 보호가 어려운 부모의 아동과 그 이외 아동에 대하여 차별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 지원이나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모의 취업여부를 반영한다. 자유민주주의 유형으로 분류되는 호주는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 적용 시간을 취업모의 경우 주당 50시간, 미취업모의 경우 주당 24시간으로 구분하고 있다. 보편적 보육을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 유형인 스웨덴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미취업모에게 보육시설 이용이나 비용 지원을 공식화한 것은 2001년 이후이며, 영유아 서비스 지원에서도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취업모에게는 주당 40시간, 미취업모에게는 15시간의 기준을 적용한다. 일본의 경우는 인가 보육시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입소 우선순위를 두어 철저히 취업모 중심의 입소 우선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용시간은 종일제가 원칙이다.

둘째, 위에서 서술한 특징의 연장으로, 이들 국가는 서비스 이용이나 비용 지원을 종일제로 한정하지 않고 시간 단위로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일제 중심인 일본의 보육시설도 아간보육 단가는 종일제 단가에 가산금을 두어 매우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셋째, 보육서비스의 유형이 다양하다. 호주와 스웨덴은 종일제 보육시설 이외에 가정보육, 놀이센터, 이동보육 등으로 서비스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합리성이 높은 정책이지만 우리나라 보육정책에서는 모두 결여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정책 추진시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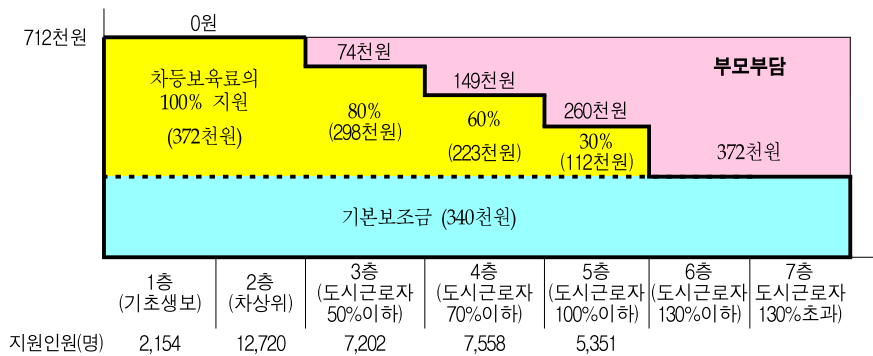
2. 우리나라 보육·유아교육 비용 지원 제도와 문제점

가. 보육·유아교육 비용 지원

육아지원사업은 설치비나 개보수비 지원, 시설 운영비 지원, 보육료나 교육비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설치비 지원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인 반면에, 시설운영비와 아동 보육·교육비 지원은 보육시설과 유치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비용 지원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정부의 보육 및 유아교육 운영비 지원은 시설유형에 따라서 종사자 인건비 중심의 시설별 지원과 보육료 지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영아와 유아가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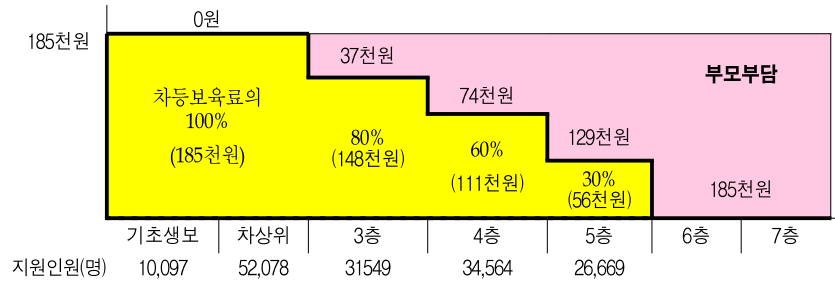
1) 영아보육 비용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는 정부 지원과 부모로부터 수납하는 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영아의 경우 국공립 및 법인시설은 인건비를 교사와 원장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이를 제외한 비용을 부모 부담으로 하여 소득계층별로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다. 한편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에게는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등 정부가 건축비를 지원한 시설에 지원하는 종사자 인건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기본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¹²⁾ 이는 최소 수준의 서비스 제공에 드는 적정한 비용을 대체로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비용 수준으로 보고, 이 가격을 민간보육시설에 적용하되 부모 부담의 절대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정부가 기본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그림 II-2-1] 0세아 보육비용 지원(2008)

12) 유아에 대해서는 2007년에 전국 3개 지역에서 기본보조금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



[그림 II-2-2] 만3세아 보육비용 지원(2008)

한편으로 정부는 특정 기준의 소득계층 이하 아동의 보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모의 보육료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보육료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¹³⁾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사회적 연대성 원칙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다. 지원대상 선정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월 평균소득은 소득 이외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즉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 2009년 하반기부터는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소득수준 하위 50%가 보육료 전액 지원을 받게 된다.

<표 II-2-1> 소득수준별·연도별 재정지원

단위: %

구분	소득수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	지원비율						
		2003년 이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층	법정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층	차상위 계층	40	60	80	100	100	100	100
3층	50%까지	-	40	60	70	80	80	100
4층	60%까지	-	-	30	40	50	60	100
	70%까지	-	-	-				
5층	100%까지	-	-	-	-	20	30	영아 60 유아 30
6층	130%까지	-	-	-	-	-	-	-

13) 보육료 지원은 1991년 시설운영지원에 탁아급식비를 포함하여 지원한 이래 1992~2003년도에는 차상위 계층(기초수급자의 120% 수준 소득자)까지 지원하였으나 2004년 이후부터 점차 그 대상과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였음.

2) 유아 보육·교육비용 지원

가) 보육

유아보육은 영아보육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 유아보육의 경우에도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동일하나 지원 비율은 차이가 있다. 영아교사에게는 인건비의 80% 지원하는 데 비해 유아교사에게는 인건비의 30%를 지원한다.

한편 민간보육시설에는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인건비에 상응하는 기본보조금 지원은 없다. 2007년에 전국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종료하였다. 따라서 인건비 지원분을 포함한 비용을 모두 보육료로 책정하여야 한다.

나) 유아교육

유아교육 지원정책은 유치원의 설립 배경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국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국공립초등학교에 지원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교사 인건비는 정부가 직접 지출하기 때문에 별도로 유치원에 지원하지 않는다. 운영비와 시설비도 지역 교육청에서 국공립유치원에 한정하여 지원한다.¹⁴⁾

반면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원당 약 1백만원의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인구 30만명 이하 지역의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월 11만원의 담임수당을 지원하였고, 2008년부터 25만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한다. 그러나 유아교육은 2008년부터 지방재정교부금의 증가와 더불어 국고 지원 예산 대부분 삭감됨에 따라 지방교육청의 재량권이 대폭 증가되었다.

또한 국공립유치원에는 종일제 교사를 추가로 배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규 정원에 의한 종일반 교사는 일반교사와 동일한 처우를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확보한 정규 종일제 유치원교사 규모는 총 950명(2006년 500명, 2007년 300명, 2008년 150명)이나, 각 교육청에서 실제로 종일제 교사로 배치한 규모는 79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14) 2004년부터는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에 종일반 운영을 위한 환경개선비를 지원함. 이는 수면실, 주방 및 위생시설, 안전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당 약500~2,000만원을 지원하며 2004년에는 126개원, 2005년에는 1,416개원을 지원하였으며 해마다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2005년에는 단년도 사업으로 통학버스 100대를 지원하였음. 농어촌에 거주하며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3) 만5세아 무상 등

교육과학기술부는 1999년 9월부터 정부의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지역부터 취학직전 1년의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되었고, 이는 보육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점차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¹⁵⁾ 2008년 현재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가구까지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05년부터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까지 해당하는 가구 자녀가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2명 이상 취원하는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비용의 20%를 지원한다. 장애아 무상보육은 2003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나. 육아기관 이용 비용 및 지원 기준

1)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

현재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의 보육료인 동시에 정부의 보육·유아교육 비용 지원 단가로 사용되는 기준이 어떠한 배경에서 산출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을 실시한 이래 표준보육단가는 1999년까지 산정하여 ‘보육사업지침’으로 제시하다가 그 이후 표준보육단가 고시는 각 시·도에 위임하였고, 중앙정부에서는 기존의 표준보육단가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단가를 산출하여 정부의 지원기준 보육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곧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의 보육료가 된다. 그러므로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료는 1999년 표준보육단가체계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단가의 항목별 구성비를 보면 급식비의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항목별 비용 구성은 실제 의미를 갖지 못한다.

<표 II-2-3>은 연도별 지원 기준액을 나타낸 것으로,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일정 비율로 증액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5년도 이후 부분적인 변경이 있었는데, 2005년도에 인건비 지원 비율을 시설장 및 영아반 교사는 90%에서 80%로, 유아반 교사는 45%에서 30%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지원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2006년도에는 0세아 교사대 아동 비율 조정을 반영하여 0세아 기준액을 따로 설정하였고,

15) 1999~2001년도는 농어촌 지역의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 2002년 전국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원, 2004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70%까지 지원, 2005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80% 수준까지 지원(도시/농촌 지원단가 일원화), 2006년 농촌 100%, 도시 90% 수준, 2007년 도시와 농촌 모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00%까지 지원함.

2007년도에는 만3세아 교사대 아동비율을 반영하여 만4세아 기준을 따로 정하였다.

〈표 II-2-2〉 1999년 표준보육단가 항목별 구성비율

단위: %

구분	2세 미만아반	2세아반	3세 이상아반	79명 시설 평균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66.6	59.6	38.1	50.0
보육아동급식비	21.2	25.7	39.4	31.8
교재교구비	3.3	4.0	6.1	4.6
시설관리운영비	5.3	6.4	9.7	4.7
차량유지비	3.6	4.4	6.7	5.4
계	100.0	100.0	100.0	100.0
연간 보육료 수납 총액	12,815,715	14,836,905	27,638,121	125,403,888
시설별 지원	7,457,745	7,380,560	8,247,674	46,961,887
연간 운영비 총액	20,273,460	22,217,465	35,885,795	172,365,775
민간시설				
종사자 인건비	76.6(42.1)	73.0(39.8)	56.2(29.3)	65.2(34.9)
보육아동급식비	13.4	17.2	30.3	23.0
교재교구비	2.1	2.7	4.7	3.6
시설관리운영비	5.6	7.2	8.8	7.7
차량유지비	2.3	2.9	1.3	2.0
계	100.0	100.0	100.0	100.0
연간 운영비 총액	20,273,460	22,217,465	35,885,795	172,365,775

주: 보건복지부(1999). 「1999년도 보육사업안내」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음.

〈표 II-2-3〉 연도별 지원단가

단위: 천원

구분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이상아	비고
1999		213	176	109		
2000		219	181	112		
2001		225	186	115		
2002		232	192	119		
2003		243	201	125		
2004		257	212	131		
2005		299	247	153		인건비 지원 비율 축소
2006	350	308	254	158		0세아 교사대 아동비율 반영
2007	361	317	262	180	162	3세아 교사대 아동비율 반영
2008	372	327	270	185	167	

자료: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각년도). 보육사업안내.

2) 민간보육시설 지원 기준

가) 조세연구원 산출과 여성가족부 조정

선행연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세연구원에서 산출된 「표준보육료·교육비」는 두 가지 안으로 제시되었다. 하나는 인력의 인건비 수준을 국공립유치원 교사에 맞춘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에 맞춘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조세연구원이 산출한 두 가지 안 중에서 정부의 재정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후자의 안을 수용하고, 이들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하여 제시하였다. 시설규모별로는 다양하게 산출되었으나 97인 시설을 기준으로 선택하였다(표 II-2-4 참조). 이러한 기준의 선택은 보육재정 수준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결과는 부분적으로 조정하여 민간보육시설 지원의 기준으로 적용하는데, 조정된 방식을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설치비는 인정하지 않았고,¹⁶⁾ 둘째, 현재 현장학습비를 지방자치단체 결정으로 액수를 정하여 추가로 수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에게 적용한 현장학습비를 제외하였으며, 셋째, 0세아의 경우 급간식비를 1/2로 조정하고, 넷째, 영아 전체는 교재교구비를 30%만을 인정하였다. 다섯째, 그리고 일률적으로 입소료 2,500원을 제하였다.

<표 II-2-5>는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금액과 항목별 구성을 나타내며, <표 II-2-6>은 이를 기초로 계획하였던 기본보조금과 보육료의 구성을 나타낸다.

<표 II-2-4> 조세연구원 산출 종일제 표준보육료(2005)

단위: 천원, %

구분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이상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인건비	608	77.1	385	73.5	290	71.8	162	60.6	134	54.2
급식비	30	3.8	43	8.1	43	10.6	42	15.7	56	22.6
교재교구비	15	1.9	15	2.9	13	3.3	35	13.2	36	14.6
관리운영비	99	12.5	59	11.3	42	10.5	20	7.4	15	6.0
시설설치비	37	4.7	22	4.2	16	3.9	8	3.1	7	2.7
표준보육비	79	100.0	524	100.0	403	100.0	267	100.0	248	100.0

자료: 박기백 외(2005).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분담수준에 관한 연구. 여성부·조세연구원.

16)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육시설들이 재무회계규칙 적용 시 기타운영비로 10%를 인정함. 이 기타운영비는 설치비 용자금에 대한 이자 등에 사용되어 사실상 설치비를 인정하고 있음.

〈표 II-2-5〉 여성가족부 조정 지원 단가 구성 추정 금액(2005)

단위: 천원, %

구분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이상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인건비	608	83.7	385	76.7	290	74.7	162	65.1	134	58.1
급식비	15	2.1	43	8.5	43	11.0	42	16.8	56	24.2
교재교구비	4	0.6	15	3.0	13	3.4	25	10.1	26	11.4
관리운영비	99	13.6	59	11.8	42	10.9	20	7.9	15	6.4
시설설치비	-	-	-	-	-	-	-	-	-	-
계	727	100.0	502	100.0	388	100.0	249	100.0	231	100.0
여가부 조정액	724		500		385		247		228	

자료: 박기백 외(2005).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분담수준에 관한 연구. 여성부·조세연구원.

〈표 II-2-6〉 시설유형별 보육비용 기준안(2004)

단위: 천원

연도	기준(인건비지원시설)			민간시설(2005)		
	총비용	부모부담	기본보조	총비용	부모부담	기본보조
0세아	724	299	425	500	350	150
1세아	500	299	271	440	350	90
2세아	385	247	198	348	288	60
3세아	247	153	55	198	198	0
4세이상아	228	153	46	198	198	0

자료: 여성가족부(2005). 내부자료.

이러한 기준 선택과 비용 조정 과정에서 몇 가지 오류를 지적할 수 있다. 우선은 민간 시설에 적용하는 비용인데 97인 시설을 적용하였다는 점은 민간보육시설 평균 규모가 50인 정도임과는 괴리가 있다.¹⁷⁾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20인 소규모 시설 단가도 산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과 그 이상 규모의 단가 차이는 매우 크다. 20인 이하 보육시설은 시설장이 교사를 겸직할 수 있기 때문에 1인의 인건비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0세아의 경우 약 10만원, 만1세아 8만원, 2세아 7만의 차이가 있다.¹⁸⁾

또한 시설설치비의 삭감 시 시설설치비 안에 들어있던 시설수선유지비도 함께 삭감하였고, 또한 비용 산정시 포함되지 않았던 입소료를 일률적으로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17) 그러나 50인 이상 시설은 큰 차이가 없으므로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음.

18) 이러한 정책적 선택은 영아 기본보조금 이후 가정보육시설의 급격한 증가의 원인을 제공함.

이외에도 급간식비와 교재교구비의 삭감도 뚜렷한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추진되었다.

〈표 II-2-7〉 보육시설 및 유치원 시설의 표준비용 산출 구성항목

	보육시설	유치원 교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육교사, 보육시설장, 취사원, 영양사, 간호사	유치원교사, 주임교사, 유치원장, 취사원, 영양사, 간호사
아동 급간식비 (연령별)	연령별 칼로리에 따른 식단	연령별 칼로리에 따른 식단
교재교구비	교실설비비, 교육재료비 및 소모품 현장학습비, 실험실습비	교실설비비, 교육재료비와 소모품 현장학습비, 실험실습비 유희실설비비, 기준교구비
관리운영비	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수용경비	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수용경비
시설설치비	건축비, 건물수선유지비 유원장설비비	건축비, 건물수선유지비 유원장설비비

자료: 박기백 외(2005).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분담수준에 관한 연구. 여성부·조세연구원.

나) 2008년도 비용 기준

〈표 II-2-8〉은 2005년에 계획과 2008년 현재 연령별 총 보육비용, 부모부담, 정부지원 기준 등을 나타낸다. 정부의 인건비 지원시설 비용은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정부지원은 보육교사 6호봉 인건비와 시설장 인건비(6호봉¹⁹⁾, 취사부 3호봉을 기준으로 하였고, 보험 및 퇴직적립금 사업주 부담금도 포함하여 영아 80%, 유아 30% 지원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시설 규모는 50인 시설을 기준으로 하였다. 민간시설 부모 부담은 정부지원단가 및 서울시 민간시설 보육료 상한선을 적용한 것이다.

이를 보면 시설유형별 총 비용에 여전히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영아의 경우는 인건비 지원이 80%이고, 4대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사업주 부담금에 대한 지원도²⁰⁾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영아는 80%, 유아는 30%이다.

19) 시설장 평균 호봉은 13호봉으로 다소 낮게 추정함.

20) 2008년 기준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부담금 4.5%, 국민건강보험료 2.54%, 고용보험료 0.7%, 산재보험료 0.7%로 총 8.44%이고, 퇴직적립금 1/12인 8.33%가 포함됨.

〈표 II-2-8〉 2008년 계획 및 실제

단위: 억원

연도	기준 계획(2008)			인건비 지원시설 실제			민간시설 실제		
	총비용	부모 부담	기본 보조	총비용	부모 부담	인건비 지원	총비용	부모 부담	기본금 지원
0세아	822	368	454	921	372	549	712	372	340
만1세아	568	315	253	679	327	352	491	327	164
만2세아	438	263	175	538	270	268	379	270	109
만3세아	279	189	90	243	185	58	-	236	-
만4세 이상아	259	179	80	216	167	49	-	231	-

주: 1) 2008년 계획은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2) 2008년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정부지원은 보육교사와 시설장 6호봉 인건비와 취사부 3호봉 인건비를 기준으로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사업주 부담금을 산출하였고, 민간시설 부모 부담은 정부지원단가 및 서울시 민간시설 보육료 상한선을 적용한 것임. 50인 시설 기준.

〈표 II-2-9〉 지자체별 유아 보육료 수납 한도액

단위: 천원

시도별	정부지원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만3세	만4세 이상	만3세	만4세 이상	만3세	만4세 이상
서울	185	167	236	231	236	231
부산			230	210	260	240
대구			225	208	241	236
인천			229	212	266	251
광주			222	206	238	232
대전			230	215	260	260
울산			217	206	247	237
경기			260	240	265	265
강원			218	207	240	240
충북			235	212	262	256
충남			225	210	250	240
전북			223	202	223	202
전남			220	210	239	236
경북			230	206	250	235
경남			223	209	235	228
제주			208	201	230	23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내부자료.

다음으로 <표 II-2-9>는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 수납 상한액을 나타낸다. 영아는 기본보조금의 지원으로 보육료 상한선이 정부 지원단가로 통일되었다. <표 II-2-8>의 민간시설의 실제 중 0~1세 비용이 기본보조금과 부모부담을 나타낸다. 그러나 유아 보육료 상한선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만4세를 기준으로 보면 민간시설 최저는 제주도로 210,000원, 최고는 경기도로 240,000원이고, 가정시설 최저는 경북 202,000원, 최고는 경기도 265,000원이다. 전반적으로 민간시설 보육료에 비

하여 가정시설 보육료가 비싸다. 그러나 전북은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다.

또한 보육시설에서는 보육료 이외에 소위 필요경비라는 명목으로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적성비를 추가로 수납하는데, 시도별 실태는 <표 II-2-10>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I-2-10> 시·도별 기타 비용 수납 한도액

단위: 원

시도별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적성비
서울	- 실비 범위 내에서 자치구청장이 자치구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납 한도액 결정 -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위임 불가		
부산	80,000	연 80,000	연 70,000
대구	72,000	실비	월 70,000
인천	국고보조시설 70,000 민간, 가정 등 100,000	국고보조시설 월 30,000 민간, 가정 등 월 60,000 - 종류 및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하여 수납 (40인 이상 시설은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득 하여야 함) - 군구에서는 시에서 정한 기준 범위내에서 지역여건 고려하여 군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별도 결정 가능	
광주	70,000	연 120,000 행사비 연 50,000원 별도	연 80,000
대전	90,000	월 10,000	연 60,000
울산	77,000 (재원아 20,000)	연 15회	만2세 이상 과목당 20,000원 2개 과목
경기	98,000	시군에 위임	시군에 위임
강원	70,000	시군에 위임	월 30,000
충북	80,000	연 120,000	월 80,000
충남	80,000	연 120,000	월 80,000
전북	50,000 (재원아 20,000)	시 월 70,000 군 월 60,000	
전남	80,000	월 10,000	월 80,000
경북	80,000	회당 20,000	보호자와 협의하여 시설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시장, 군수에게 신고
경남	- 최소한의 실비 범위 내에서 보호자의 동의하에 수납 - 보호자의 동의는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전 부모 승락 동의서 받는 것		
제주	회당 50,000	연 50,000	월 50,000

자료: 각 시·도청(2008). 내부자료.

결정 방법을 보면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이 3종을 모두 시·군·구에 위임하고 경기도는 입소료 이외의 비용을 시·군에 위임하였으며, 경남은 보육시설에서 3종의

추가 경비를 모두 보육시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경상북도는 특기적성비만을 보육시설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신고하도록 하였다. 그 이외 지역은 시·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서울시의 경우는 2008년에는 구에서 다시 보육시설에 위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시·도가 결정한 추가 수납액 기준을 보면 입소료는 대부분이 78,000원 수준이며, 최소인 지역은 전북과 제주로 50,000원이고 경기도가 98,000원으로 가장 많다. 현장학습비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평균 월 1회, 1회시 10,000원을 책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기적성비는 최소 30,000원인 지역도 있으나 평균 80,000원 정도가 가장 많다.

시·도에서 시·군·구 위임한 서울시의 경우, 시에서는 보육시설에의 위임을 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육시설에서 부모와 협의 결정하도록 맡긴 구가 상당수이다. 2007년에 구에서 보육시설에 위임한 구가 13개로 파악되었는데(김형준 외, 2007), 2008년에는 이보다는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시설의 자율성을 인정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겠다.

서울시 각 구가 구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하여 상한액을 책정한 액수를 보면 입소료는 다른 시·도에 상대적으로 적지만, 현장학습비와 특기적성비 기준은 높다. 가장 액수가 높은 구는 광진구이다. 광진구의 경우 구립시설은 현장학습비 연 180,000원, 특기적성비 월 60,000원으로 정하였으나, 민간시설의 연간 현장학습비는 250,000원, 월 특기적성비는 200,000원으로 책정하였다(표 II-2-11 참조).

〈표 II-2-11〉 서울시 각 구의 추가 수납액 기준

단위: 원

구	입소료	연간 현장학습비	월 특기적성비
강남구	최초 입소 시 50,000원 이내	자율	구립 80,000, 민간 150,000
강동구		자율	자율
강북구		자율	자율
강서구		200,000	90,000
관악구		150,000	50,000
광진구		구립 180,000, 민간 250,000	구립 60,000, 민간 200,000
구로구		250,000	80,000
금천구		150,000	구립 40,000, 민간 80,000
노원구		150,000	80,000
도봉구		130,000	60,000
동대문구		150,000	자율
동작구		구립 150,000, 민간 자율	구립 60,000, 민간 자율
마포구		180,000	구립, 가정 50,000, 민간 90,000
서대문구		구립 120,000, 민간 180,000	구립 45,000원, 민간 80,000
서초구		자율	자율

(표 계속)

구	입소료	연간 현장학습비	월 특기적성비
성동구		160,000	자율
성북구		150,000	70,000
송파구		구립 50,000, 민간 자율	구립 200,000, 민간 자율
양천구		구립 160,000, 민간 180,000	자율(3과목 이내)
영등포구		연간 200,000	구립/가정 90,000, 민간 110,000 이하에서 부모동의로 자율
용산구		180,000	자율
은평구		180,000	75,000
종로구		120,000	50,000
중구		구립 150,000, 민간 180,000	50,000
중랑구		연 150,000	구립 50,000, 민간 70,000

자료: 각 구청(2008). 내부자료.

한편 경기도 각 시·군은 기타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수납액을 결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민간시설과 국공립의 구별을 두지 않았고, 비용은 최소 72,000원에서 100,000원 사이에 분포한다(표 II-2-12 참조).

〈표 II-2-12〉 경기도 시군 기타 비용 월 한도액

단위: 원

시·군	기타비용	시·군	기타비용	시·군	기타비용
수원시	80,000	이천시	80,000	고양시	80,000
성남시	80,000	김포시	영아 100,000 유아 90,000	의정부	75,000
부천시	73,000	광주시	80,000	남양주	90,000
안양시	90,000	안성시	75,000	파주시	95,000
안산시	80,000	하남시	81,000	구리시	80,000
용인시	80,000	의왕시	80,000	양주시	72,000
평택시	73,000	오산시	75,000	포천시	72,000
광명시	75,000	여주군	80,000	동두천	72,000
시흥시	80,000	양평군	73,000	가평군	정부지원 52,000 민간 72,000
군포시	80,000	과천시	80,000	연천군	72,000
화성시	75,000				

자료: 경기도청(2008). 내부자료.

2) 유치원 교육비 단가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교육비는 차이가 있다. 공립유치원 교육비는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운영비 일부만을 부모 보육료로 책정하고 있고, 이는 지원단가로 사용되고 있다. 지원단가는 반일반 기준으로 55,000원이다.

사립유치원은 교육비가 자율화되어 있으므로 기준 비용은 없고, 지원 기준은 보육료와 동일하게 3세아 187,000원, 4세이상아 167,000원이다.

다. 문제 및 시사점

1) 표준 비용 및 지원 단가의 불합리성

현재 사용하는 표준보육비용은 2004년에 산출된 단가에 기초하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가 산출과 산출된 단가의 조정 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고, 정부의 비용 지원 단가 역시 합리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는다.

민간시설 지원의 기준이 되는 표준보육비용은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규정에 기초하였는데, 교사대 아동비율은 준수하였으나, 교사의 8시간 근무, 휴가, 등 근로기준법 준수 등 근무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다. 따라서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도 인건비 지원시설과 같이 봉급표 상의 급여를 100% 지급하기 어렵다.

2) 지원 단가 적용시간의 단일화 및 보육·유아교육의 차이

보육의 경우 정부가 지원단가로 제시하는 비용은 한 가지 종류이다. 보육시설의 경우 12시간 운영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시간 언급은 없으나 최대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음을 묵시적으로 전제로 하고 있다. 시간단위로 보육비용을 설정하고 있는 외국의 여러 나라들과는 차이가 있다.

유치원의 교육비 역시 단일화된 지원 단가만이 존재하기는 보육과 마찬가지로인데, 이 경우는 보육과 달리 반일반 교육을 기준으로 책정된 비용이다. 실제로 연장제, 종일제가 운영되지만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인건비 형태로만 지원하고 교육비에 반영되어 공지되고 있지는 않다.

3) 보육시설 운영시간과 근로시간 고려 미비

보육의 경우 보육시설은 12시간 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현재 산출된 단가는 교사의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1999년도 보건복지부 보육료 지원단가 산정기준에서는 월 30,000원을 일률적으로 연장 근무 수당으로 인건비에 산정하였

으며, 2004년도 조세연구원의 표준보육비용 산출 시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따라서 하루 4시간 추가 근무에 대한 고려가 없이, 보육사업안내를 통하여 교사 근무의 탄력적 운영으로 평일 하루 8시간 근로시간을 맞추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으로 종일제 운영시 별도의 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비용은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대부분 추가로 수납한다. 급식비도 대부분 별도로 수납하고 연장제 운용시에도 별도로 수납한다.

4) 보육시설 설치주체별 적용 기준 차이 및 불투명성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에 적용하는 비용의 기준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점이 논의 대상이다. 즉, 두 유형에 적용하는 기준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고, 그 적용 비용의 항목별 구성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료는 과거에 산출된 보육료 지원 단가에 근거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증액하고, 인건비 지원은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편 민간보육시설 보육단가는 2000년부터 지방정부의 상한선 고시로 제도가 변경된 이후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협의에 의하여 상승폭이 결정되었고, 2006년부터는 2004년도에 산출된 표준보육단가에 기초하여 영아는 기본보조금 지원과 더불어 부모 부담을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으로 맞춘 반면에 민간보육시설 유아는 지방정부의 결정에 맡겨 두었다.

5) 지원 단가와 실제와의 괴리 및 차액 수납 금지

영아의 경우는 기본보조금의 도입으로 기본보조금을 받는 시설은 부모 부담을 정부 지원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였으나, 유아의 경우는 국공립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차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원단가와 실제 보육료는 격차가 있다. 정부는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무상보육 대상자에 대하여 차액 추가 수납을 금지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법정저소득층에게는 그 차액을 보전해주지만 차상위계층은 부모로부터 추가 수납을 허용한다. 그러나 이는 추가로 받도록 하는 것도, 추가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유치원 교육비는 상한선 제한이 없으므로 정부 지원 이외 비용은 당연히 부모가 부담한다.

Ⅲ. 보육시설과 유치원 운영 및 이용 실태: 시간과 비용을 중심으로

제3장에서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운영 및 이용 실태를 시간과 비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이들 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였고, 기존에 실시된 전국 단위 및 지역 단위의 가구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이용자 측면의 이용 실태를 제시하였다. 먼저 제1절에서는 전반적인 보육 및 교육서비스 이용실태를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보육시설의 운영 및 이용시간과 비용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제3절에서는 유치원 운영 및 이용시간과 교육비 실태를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전반적으로 논의할 점을 기술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 개요

가.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현재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전국 통계로는 2004년에 전국 200개 조사구²¹⁾에서 실시된 전국 통계조사 자료가 있고 그 이후 몇몇 일 연구의 성격의 조사가 실시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을 나타내는 자료로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 2004년 전국통계 조사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와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먼저 <표 III-1-1>은 보육 및 유치원 이용 통계이다. 아동 대비 보육시설 이용아동 비율은 0세아 15.3%, 만1세아 27.9%, 만2세아 49.5%, 만3세아 50.0%, 만4세아 42.3%, 만5세아 34.0%로 전체 36.7%이다. 특히 최근에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기본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가정보육시설 등 영아보육시설이 크게 증가한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21) 총인구 센서스 시 전국을 가구를 중심으로 약 23,000여개의 조사구로 구분하며, 이중 전국을 대표할 수 있도록 200여개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였음.

유치원 이용비율은 만3세아 19.5%, 만4세아 34.8%, 만5세아 51.4%로 유아 대비 35.8%이다. 전체 아동수 대비로는 19.1%이다.

〈표 III-1-1〉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 및 미이용 아동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아동수 (A) ¹⁾	시설 이용 아동수(B)		미이용 아동수 (A-B)	모취업률 ⁴⁾ (2004)
		보육시설 ²⁾	유치원 ³⁾		
총계	2,832,282(100.0)	1,038,615(36.7)	535,060(35.8)	1,258,607(44.2)	34.8
0세	449,027(100.0)	68,908(15.3)	na	380,119(84.7)	20.2
1세	439,640(100.0)	122,663(27.9)	na	316,977(72.1)	24.5
2세	449,410(100.0)	222,258(49.5)	na	227,152(50.5)	35.9
3세	476,281(100.0)	237,919(50.0)	93,005(19.5)	145,357(30.5)	43.4
4세	490,314(100.0)	207,305(42.3)	170,726(34.8)	112,283(22.9)	40.1
5세	527,610(100.0)	179,562(34.0)	271,326(51.4)	76,722(14.6)	44.9

주: 보육시설 통계는 6세 아동을 제외하여 전체 통계와 다소 상이함.

자료: 1) 통계청·KOSIS.(2007). 연령별추계인구.

2) 보건복지가족부(2008). 보육통계.

3)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7). 2007 교육통계분석자료집.

4) 교육인적자원부(2004). 유치원통계.

영유아 지원 서비스가 부모의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부모의 취업은 이용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연령별 여성취업률은 M자 커브를 나타낸다. 즉, 영유아를 둔 20대 후반에서 30대 여성의 취업률이 그 전후 연령대 여성취업률에 비하여 낮기 때문이다.

〈표 III-1-2〉 미취학 아동 연령별 모 취업여부

단위: %(명)

구분	전 체			최연소아동 기준			전체(수)
	취업	미취업	부재 등	취업	미취업	부재 등	
0세	20.4	79.6	-	20.2	79.8	-	100.0(358)
1세	23.8	75.4	0.8	24.5	75.2	0.3	100.0(391)
2세	32.2	67.3	0.5	35.9	63.5	0.6	100.0(422)
3세	37.3	60.2	2.5	43.5	53.4	3.2	100.0(442)
4세	35.3	61.1	3.6	40.1	54.7	5.2	100.0(507)
5세	40.9	56.9	2.2	44.9	52.3	2.8	100.0(492)
6세	39.4	56.0	4.6	43.1	52.8	4.1	100.0(348)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서문희 외(2005).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III-1-2>는 2004년 조사 결과 영유아 전체 및 최연소 아동 연령별 모의 취업률인데, 이를 보면 최연소 아동 기준으로 0세의 모 20%, 만5세아의 모 44.9%이다. 전반적으로 영아에 비하여 유아 모의 취업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여성취업률이 2005년 50% 미만에서 2007년 50%를 약간 넘는다.

다음 <표 III-1-3>은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 조사 자료로 0~5세 아동의 보육·교육 및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모 취업여부별 서비스 이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 조사 결과는 보육통계에 비하여 보육 서비스 이용률이 매우 높게 조사되었는데²²⁾, 0~만5세 아동 전체적으로는 기관의 경우 미취업모 자녀의 이용률이 높고, 개인 양육지원서비스의 경우에는 혈연과 비혈연 서비스 모두 취업모 자녀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개인 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3> 아동 연령별, 모 취업여부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2007)

단위: %(명)

구분	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전체	
	취업	미취업	취업	미취업	취업	미취업	취업	미취업	취업	미취업	취업	미취업	취업	미취업
기관	24.5	23.9	45.9	51.9	60.3	77.1	68.9	87.6	75.1	92.9	75.9	95.6	64.9	84.2
보육시설	22.5	18.3	42.4	45.0	52.9	61.4	42.9	41.4	38.9	37.0	25.3	22.3	38.2	45.7
유치원	2.0	5.6	2.9	6.2	4.5	8.6	20.2	36.7	30.4	49.8	45.9	63.0	22.6	38.6
선교원	-	-	-	0.8	2.5	1.8	1.8	3.4	1.5	0.9	1.5	3.9	1.4	2.3
반일제이성학원	-	-	0.6	-	0.4	5.4	3.9	6.1	4.3	5.2	3.2	6.4	2.6	5.2
혈연	63.7	66.2	50.0	46.5	36.4	21.1	27.5	11.8	22.5	6.7	19.8	4.4	31.0	14.7
동거조부모	23.5	23.9	15.9	14.7	14.9	11.1	7.3	4.3	9.4	3.7	9.9	0.9	11.6	5.9
비동거조부모	32.4	25.4	30.0	21.7	16.1	6.4	17.2	5.4	8.8	1.3	8.7	2.8	15.7	5.8
동거친인척	2.9	4.2	0.6	4.7	2.9	2.9	0.6	1.4	1.2	1.7	0.3	-	1.2	1.7
비동거친인척	4.9	12.7	3.5	5.4	2.5	0.7	2.4	0.7	3.0	-	0.9	0.7	2.5	1.3
비혈연	11.8	9.9	4.1	1.6	3.3	1.8	3.6	0.7	2.4	0.4	4.4	0.0	4.1	1.0
계	100.0 (102)	100.0 (71)	100.0 (170)	100.0 (129)	100.0 (242)	100.0 (280)	100.0 (331)	100.0 (442)	100.0 (329)	100.0 (462)	100.0 (344)	100.0 (435)	100.0 (1,518)	100.0 (1,81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07).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대국민 만족도 조사」 원자료.

22) 조사 대상 표집이 전국을 대표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표 III-1-4〉 모 취업여부별 영유아 양육 지원서비스 이용률(2004)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취업	미취업	모부재	전체	취업	미취업	모부재	전체
기관	28.5	9.8	50.0	14.6	90.6	80.8	80.4	84.3
보육시설	25.8	6.0	50.0	11.2	50.4	31.6	37.3	38.9
유치원	0.3	0.1	-	0.2	23.2	29.6	29.4	27.2
선교원	0.7	0.2	-	0.3	3.2	2.8	2.0	2.9
반일제이상학원	0.3	0.3	-	0.3	12.2	14.4	11.8	13.4
혈연	61.9	8.6	-	21.8	36.8	5.3	82.6	19.9
동거조부모	22.8	3.7	-	8.9	17.0	3.2	66.7	10.6
비동거조부모	34.6	3.8	-	11.7	16.7	1.5	8.0	7.5
동거친인척	1.7	0.3	-	0.7	0.3	0.4	3.9	0.4
비동거친인척	5.3	1.3	-	2.2	3.5	0.3	7.8	1.7
비혈연	9.6	0.3	-	2.7	2.5	0.1	3.9	8.1
(수)	(302)	(864)	(2)	(1,171)	(682)	(1,053)	(51)	(1,792)

주: 1) 중복응답 결과임.

2)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서문희 외(2005).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러한 결과는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모의 취업상태별 이용률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2004년 조사에서는 보육시설은 취업모의 자녀와 미취업모 자녀의 이용률이 취업모의 이용 비율이 미취업모보다 높았고 비공식 부분에서도 혈연 이용이 취업모 44.5%, 미취업모 6.9%로 많은 차이가 있고, 비혈연 이용률도 4.7%, 0.2%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유치원과 반일제 이상 학원은 별 차이가 없으며, 개인교육은 모가 미취업인 아동의 이용률이 더 높다. 차이는 다변량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서문희·나정·최혜선, 2006).

이러한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보육시설, 특히 미취업모 영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 증가 변화는 보육서비스 이용의 보편적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정부 재정 지원의 효율적 사용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나. 보육·교육기관 이용 이유

보육·교육 기관을 이용하게 된 이유를 조사한 <표 III-1-5>의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사회성 발달 때문이라는 응답이 34.9%로 가장 높았고, 전인적 발달이 31.6%로 그 다음 순위를 나타내어, 보육·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아동발달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 부모 대신 보호, 초등학교 준비가 높은 응답

를 나타내어 전체적으로는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기관별로는 이용 이유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보육시설의 경우 부모 대신 보호라고 응답한 비율이 33.7%로 높은 데 비해, 유치원과 반일제 이상 학원의 경우에는 10%정도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초등학교 준비를 이유로 응답한 비율은 유치원과 반일제 이상 학원은 10% 정도인 반면, 보육시설은 1.8%로 다른 기관에 비해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보육시설이나 선교원에 비해 유치원과 반일제 이상 학원의 초등학교 준비 기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또한, 반일제이상 학원의 경우, 2004년 조사에 비해 2007년 조사에서는 아동발달을 이용 이유로 선택한 비율이 높아졌고, 예체능 특기교육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같은 결과는 반일제 이상 학원의 기능이 변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III-1-5〉 보육·교육 기관 이용 이유(2004¹⁾, 2007²⁾)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선교원		반일제이상학원		전체	
	2004	2007	2004	2007	2004	2007	2004	2007	2004	2007
전일적 발달	24.7	23.9	35.6	40.5	29.3	36.0	24.9	36.4	28.2	31.6
초등학교 준비	5.2	1.8	24.1	11.3	5.2	6.0	16.7	10.1	12.7	6.2
예체능 특기교육	0.4	0.2	1.4	1.7	-	2.0	14.7	4.0	2.9	1.1
부모대신보호	40.2	33.7	12.8	11.1	17.2	18.0	16.7	10.1	27.5	22.9
사회성발달	29.0	36.4	26.1	32.8	46.6	32.0	26.5	37.4	28.4	34.9
기타	0.5	4.1	-	2.5	1.7	6.0	0.4	2.0	0.4	3.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21)	(1,031)	(486)	(804)	(58)	(50)	(245)	(99)	(1,610)	(1,984)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1) 서문희 외(2005).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한국개발연구원(2007).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대국민 만족도 조사」 원자료.

다음 <표 III-1-6>은 모 취업여부에 따른 보육·교육기관 이용 이유를 살펴본 것이다. 취업모의 경우에는 부모 대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관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44.2%로 가장 높았으며, 미취업모의 경우에는 사회성 발달을 이유로 든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취업모와 미취업모 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에게서 부모 대신 보호라는 응답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왔다.

〈표 III-1-6〉 모 취업여부별 보육·교육 기관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선교원		반일제이상학원		전체	
	취업	미취업	취업	미취업	취업	미취업	취업	미취업	취업	미취업
전일적 발달	18.9	28.6	36.1	43.3	47.4	29.0	27.6	40.0	25.9	35.9
초등학교 준비	1.6	2.1	10.5	11.8	-	9.7	13.8	8.6	5.1	7.0
예체능 특기교육	0.2	0.2	2.3	1.4	-	3.2	6.9	2.9	1.2	1.0
부모대신보호	57.6	10.5	25.2	2.4	26.3	12.9	20.7	5.7	44.2	6.7
사회성발달	17.2	55.0	23.3	38.7	21.1	38.7	27.6	41.4	19.8	46.4
기타	4.5	3.6	2.6	2.4	5.3	6.5	3.4	1.4	3.8	3.0
계 (수)	100.0 (507)	100.0 (524)	100.0 (305)	100.0 (499)	100.0 (19)	100.0 (31)	100.0 (29)	100.0 (70)	100.0 (1,610)	100.0 (1,984)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07).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대국민 만족도 조사」 원자료.

아동 연령별로 보육·교육기관 이용 이유를 보면, 영아는 부모 대신 보호하기 위하여 기관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반면, 유아는 사회성 발달과 전인적 발달 등 아동발달과 관련된 응답이 많았다(표 III-1-7 참조).

〈표 III-1-7〉 아동 연령별 보육·교육 기관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보육 시설	유치원	선교원	반일제 학원	전체	보육 시설	유치원	선교원	반일제 학원	전체
전일적 발달	15.8	27.7	12.5	33.3	17.5	28.6	41.3	40.5	36.8	31.6
초등학교 준비	0.3	2.1	-	-	0.4	2.8	11.9	7.1	11.5	6.2
예체능 특기교육	-	-	-	8.3	0.2	0.3	1.8	2.4	3.4	1.1
부모대신보호	43.9	19.1	37.5	8.3	40.3	27.6	10.6	14.3	10.3	22.9
사회성발달	35.3	44.7	37.5	50.0	36.7	37.0	32.1	31.0	35.6	34.9
기타	4.7	6.4	12.5	-	4.9	3.7	2.2	4.8	2.3	3.4
계 (수)	100.0 (821)	100.0 (1,031)	100.0 (486)	100.0 (804)	100.0 (452)	100.0 (58)	100.0 (50)	100.0 (245)	100.0 (99)	100.0 (1,532)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07).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대국민 만족도 조사」 원자료.

2. 보육시설 운영 및 이용시간과 비용

제2절에서는 본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보육시설의 운영시간과 이용아동의 이용시간, 그리고 이에 따른 보육료의 수준과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였고, 기존의 이용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 보육시설 이용 아동모의 취업 특성

보육시설 이용시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의 취업상태이므로²³⁾ 아동특성은 모의 취업상태를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여성취업률은 영유아를 둔 20대 후반에서 30대 여성의 취업률이 그 전후 연령의 여성취업률에 비하여 낮은 M자 형태를 나타낸다. 그렇다면 실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모의 취업 상태는 어떠한가?

제시된 자료는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자료,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 조사 자료와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조사한 유아보육시설 이용 실태자료이다. 두 전국 단위의 조사와 한 일부 지역 조사 자료를 보면 보육시설 이용 아동 중 취업모의 비율은 대체로 50% 미만으로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²⁴⁾

자료별로 보면 먼저 2004년 가구조사에서 파악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 모가 취업모인 아동비율은 영아 59.5%, 유아 49.0%로 전체 50.6%로 조사되었다. 유치원 이용아동보다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취업모 비율이 더 높았다(표 III-2-1 참조).

〈표 III-2-1〉 기관 이용 영아와 유아 모의 취업여부

단위: %(명)

구분	영아 보육시설	유아 보육시설	보육시설 전체	유아 유치원
취업	59.5	49.0	50.6	32.4
미취업	39.7	48.3	47.0	64.5
모부재	0.8	2.8	2.4	3.1
계(수)	100.0(131)	100.0(688)	100.0(821)	100.0(482)

자료: 서문희 외(2005).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3) 어머니의 취업 이외 가족에 휴휴인력이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시간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모의 취업만을 살펴보고자 함.

24) 보육시설을 통한 조사에서는 보육시설의 취업모 자녀 비율은 가구조사에서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2008년 본 연구를 위한 조사의 경우 민간보육시설은 64.6%, 가정보육시설은 76.4%로 가구조사 결과와는 많은 차이를 보임.

<표 III-2-2>는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 가구조사에서 파악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 모가 취업한 아동의 비율인데, 이는 2004년도 조사 결과보다도 더 낮아서 연령별로 최대 0세아 63.9%, 최소 만2세아 42.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2-2>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취업모 자녀 비율

단위: %(명)

구분	전체	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영유아 ¹⁾							
취업	45.5	63.9	55.4	42.7	43.7	42.8	47.3
미취업	54.5	36.1	44.6	57.3	56.3	57.2	52.7
계(수)	100.0(1274)	100.0(36)	100.0(130)	100.0(300)	100.0(325)	100.0(299)	100.0(184)
유아 ²⁾							
취업	42.9				40.8	43.7	47.2
미취업	57.1				59.2	56.3	52.8
계(수)	100.0(638)				100.0(338)	100.0(158)	100.0(142)

자료: 1) 한국개발연구원(2007).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대국민 만족도 조사」 원자료.

2) 육아정책개발센터(2007). 「2007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 평가 조사」 원자료.

<표 III-2-3> 보육시설의 아동 중 취업모 자녀 비율

단위: %(개소)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전체	(수)
전체 평균	80.5	73.0	68.8	63.2	63.3	69.5	(713)
표준편차	29.6	29.4	28.6	28.3	27.5	24.3	
유형							
민간	82.6	70.2	62.4	60.3	60.6	62.6	(475)
가정	79.6	75.2	75.0	70.5	80.3	76.2	(237)
<i>t</i>	1.0	-2.0*	-5.7**	-3.5**	-4.6**	-7.8**	
지역별							
민간							
대도시	83.2	71.4	64.7	65.5	62.1	65.2	(148)
중소도시	82.4	66.9	57.2	52.1	56.1	57.3	(139)
읍면	81.7	74.9	69.4	67.7	67.4	69.5	(188)
<i>F</i>	0.1	2.0	6.8**	14.5**	59**	10.2**	
가정							
대도시	82.6	76.6	75.0	69.4	79.4	76.4	(73)
중소도시	75.9	73.4	73.8	71.6	84.8	75.6	(75)
읍면	87.1	78.6	80.7	72.1	72.0	79.0	(89)
<i>F</i>	2.3	0.6	1.4	0.6	0.7	0.5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는 $p < 0.05$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시설 운영실태 조사」 결과임.

2007년 민간시설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지역 평가를 위한 일부지역 유아 보호자 조사 자료에서는 유아 모의 취업비율은 42.9%로 조사되었다. 아동 연령별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취업도 비율도 증가하였다(표 III-2-3 참조).

한편 보육시설을 통한 조사에서는 보육시설 단위의 취업모 자녀 비율은 가구조사에서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2008년 본 연구를 위한 조사에서 보육아동 중 취업모 자녀는 민간보육시설 62.6%, 가정보육시설 76.2%로 가구조사 결과보다 훨씬 높았다. 시설유형과 연령별로 차이가 있어서 민간보육시설은 0세아와 만1세아 각각 82.6%, 70.2%이고 만2세 이상아는 62%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가정보육시설은 0세아의 경우 민간보육시설과 유사한 80% 수준이며 그 이상 연령도 취업모의 비율이 70% 이상을 유지하였다. 지역별 차이는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중소도시에서 취업모 자녀 비율이 다소 낮고 연령에 따라서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가정보육시설은 연령별로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표 III-2-3 참조).

2007년 영아를 보육하는 시설 조사에서 조사된 보육영아 모 중 취업모 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취업모 자녀 비율이 69.0%이었다(서문희·최혜선, 2007).

보육시설 조사와 가구조사가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응답자의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응답 경향 이외에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취업 기준의 차이로 추정된다. 보육시설에서는 아동의 모가 어디 다니거나 간헐적 부업을 하는 경우, 혼련 등 구직 및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 등이 모두 일하는 어머니로 광범위하게 정의한다면 가구조사에서는 직종까지 상세하게 조사하므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일하는 경우만이 취업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자료의 정확도이다. 조사 시점의 현황 파악이 용이한 가구조사와 달리 시설조사는 시설장의 인식에 의존하므로 실제 아동 모의 취업상태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데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 보육시설 운영 및 이용: 일수 및 시간 중심

보육사업안내에서는 보육시설은 주 6일, 평일 하루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요일 운영에 대해서는 토요 휴무제 확대에 따라 보육아동수가 감소할 경우에는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의 배치를 달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사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1일 8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출퇴근시간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보육교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규정과 관련하여 실제 보육시설의 운영시간과 실제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이용시간, 그리고 교사의 평일 8시간 근무 준수 등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였다.

1) 보육시설 운영

가) 운영 일수

일주일 당 보육시설 운영일수는 대부분이 보육사업안내로 정하고 있는 것처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이고 약 5% 정도의 보육시설만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의 유형별 차이는 거의 없다. 각 시설유형별로 지역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III-2-4 참조).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토요일에는 반 구성이나 프로그램 등 보육시설 운영이 평일과 같지 않고, 교사도 교대로 근무하는 추세이다. 일부 보육시설은 학교 등이 노는 토요일에만 교사가 격주로 교대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표 III-2-4〉 연령별 보육시설 운영 일수

단위: %(개소)

구분	월~금	월~토	월~일	계(수)	$\chi^2(df)$
전체	4.8	95.0	0.2	100.0(715)	
유형					
민간	5.3	94.7	-	100.0(478)	2.5(2)
가정	4.2	95.3	0.6	100.0(237)	
지역별					
민간					
대도시	3.4	96.6	-	100.0(148)	
중소도시	7.1	92.9	-	100.0(140)	2.6(2)
읍면	5.8	94.2	-	100.0(190)	
가정					
대도시	4.1	95.9	-	100.0(478)	
중소도시	4.0	94.7	1.3	100.0(237)	na
읍면	5.6	94.4	-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시설 운영실태 조사」 결과임.

나) 운영시간

평일 하루 중 보육시설의 개원, 폐원 시각과 운영시간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표 III-2-6>은 보육시설 개원시각과 폐원시각을 나타낸다. 먼저 보육시설 개원 시간을 보면, 보육사업안내에서 기준을 설정한 오전 7시 30분까지 개원하는 시설은 34.1%로 조사되었고, 과반수 정도가 7시 30분 이후 8시까지 개원을 하며, 16.2%의 시설이 8시 이후에 개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는 가정보육시설이 민간보육시설보다 다소 일찍 개원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보육시설의 폐원 시각은 <표 III-2-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오후 6시까지의 폐원하는 비율이 14.6%이고 오후 6시 이후 6시 30분까지 10.9%, 6시 30분 이후 7시까지 29.0%, 7시 이후 7시 30분까지가 24.2%로 나타났다. 폐원시각은 시설유형별로 차이가 있어서 가정보육시설이 민간보육시설에 비하여 늦었으며, 7시 30분 이후 폐원 비율은 각각 21.8%, 29.3%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표 III-2-5> 평일 개원 및 폐원 시각 분포

단위: %(개소)

개원시각	전체	민간	가정	폐원시각	전체	민간	가정
~7:00	6.2	4.8	7.5	~17:00	1.5	2.8	0.3
7:01~7:30	30.1	30.6	29.6	17:01~18:00	8.9	11.2	6.7
7:31~8:00	49.0	49.2	48.9	18:01~18:30	10.6	10.6	10.6
8:01~8:30	12.9	13.2	12.6	18:31~19:00	25.6	30.3	20.9
8:31~	1.8	2.2	1.4	19:01~19:30	27.5	26.1	29.0
계	100.0	100.0	100.0	19:31~20:00	9.8	5.0	14.5
(수)	(715)	(478)	(237)	20:01~21:00	7.8	4.8	10.9
				21:01~	8.2	9.2	7.2
				계	100.0	100.0	100.0
				(수)	(715)	(478)	(237)
$\chi^2(df)$	3.0(4)			$\chi^2(df)$	43.9(7)**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시설 운영실태 조사」 결과임.

이러한 개원시각과 폐원시각으로 산출한 보육시설 평일 하루 운영시간은 평균 11시간 41분으로 나타났다. 분포를 보면 9시간부터 13시간 이상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데, 민간보육시설보다는 가정보육시설 운영시간이 다소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II-2-6 참조).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소재 보육시설이 읍면 지역 보육시설에 비하여 운영 시간이 약간 길었다. F 검증에서는 시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차이 자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사후검증 결과 민간시설은 읍면과 대도시의 차이가 유의하고 읍면과 중소도시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가정시설에서는 읍면과 중소도시의 운영시간 차이는 유의하였으나 읍면과 대도시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표 III-2-7 참조).

〈표 III-2-6〉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평일 운영시간

단위: %(개소)

구분	전체	민간	가정	$\chi^2(d/f)$
~ 9:00	2.4	4.2	0.6	
9:01~10:00	9.4	11.2	7.5	
10:01~10:30	9.0	9.5	8.4	
10:31~11:00	17.8	17.4	18.2	40.6(7)**
11:01~11:30	16.2	19.6	12.8	
11:31~12:00	21.8	19.9	23.7	
12:01~13:00	12.2	6.2	18.2	
13:01~	11.3	12.0	10.6	
계(수)	100.0(715)	100.0(478)	100.0(237)	
평균	11시간 37분	11시간 27분	11시간 47분	-3.4**
표준편차	1시간 22분	1시간 24분	1시간 17분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시설 운영실태 조사」 결과임.

〈표 III-2-7〉 시설유형 및 지역별 평일 보육시설 운영시간 평균

단위: %(개소)

구분	민간				가정			
	평균	표준편차	(수)	F	평균	표준편차	(수)	F
대도시	11시간 41분 ^a	1시간 15분	(148)		11시간 44분	1시간 (73)		
중소도시	11시간 19분	1시간 34분	(140)	4.2 [*]	11시간 55분 ^a	1시간 25분 (75)		4.0 [*]
읍면	11시간 8분 ^b	1시간 18분	(190)		11시간 17분 ^b	1시간 29분 (8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5$ 을 의미함. 사후검증 결과 a와 b간의 차이가 유의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시설 운영실태 조사」 결과임.

다) 아동에 적용하는 이용시간 유형

보육시설은 하루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 시간이 곧 모든 아동

에게 적용되는 이용시간은 아니다. 보육시설에 따라서 모든 아동에게 종일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도 하지만 시설에 따라서는 유치원과 같이 오후 2~3시에 귀가하는 유형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본 조사에서는 하루 중 아동에게 적용하는 보육시간 유형을 6시 이후에 귀가하는 종일제 이외에 오후 2~3시 정도에 귀가하는 유형인 단축형 I 과 오후 4~5시 경에 귀가하는 단축형 II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사된 보육시설의 아동귀가 시간 유형을 보면 21.0%의 보육시설은 기본적인 종일제로만 통일하여 모든 아동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가장 많은 43.2%가 종일제와 오후 4~5시 경에 귀가하는 유형을, 그리고 13.9%는 종일제와 오후 2~3시에 귀가하는 유형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9.8%의 보육시설은 이 세 가지 유형을 모두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II-2-8 참조).

〈표 III-2-8〉 평일 아동에 적용하는 보육시간 유형

단위: %(개소)

구분	종일제	종일제 +단축형 II	종일제 +단축형 I	종일제 +단축형 I +단축형 II	계(수)	$\chi^2(df)$
전체	23.0	43.2	13.9	19.8	100.0(715)	
유형						
민간	14.8	41.5	14.0	29.7	100.0(478)	562(3)**
가정	31.1	45.0	13.9	10.0	100.0(237)	
지역별						
민간						
대도시	23.0	36.5	12.2	28.4	100.0(148)	
중소도시	5.7	45.7	15.7	32.9	100.0(140)	18.4(6)**
읍면	17.4	43.2	14.7	24.7	100.0(190)	
가정						
대도시	31.5	37.0	16.4	15.1	100.0(73)	
중소도시	32.0	50.7	12.0	5.3	100.0(75)	6.5(6)
읍면	25.8	47.2	13.5	13.5	100.0(8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시설 운영실태 조사」 결과임.

시설유형별로는 가정보육시설에서 기본적인 종일제만을 운영하는 비율이 민간보육시설보다 높다. 이는 가정보육시설에 영아가 많고 영아의 경우 모의 취업 비율이 유아보다 높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다시 나누어 보면 민간보육시설은 지역 차이가

유의한 수준으로, 중소도시에서 탄력적으로 귀가 시간을 적용하는 경향이 강하고 대도시가 종일제를 고수하는 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 보육시설의 경우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중소도시에서 종일제만을 적용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오후 2~3시에 귀가하는 단축형 I 유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로는 이러한 시간 이용을 희망하는 아동이 없다는 응답이 59.5%로 가장 많고, 24.1%가 보육료 지원이 종일제 기준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13.9%가 영유아보육법으로 보육시설 운영이 종일제로 명시되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2.4%는 프로그램 운영 등 시설 운영상의 애로 때문에 이러한 시간 적용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표 III-2-9 참조).

〈표 III-2-9〉 단축형 I 미적용 이유

단위: %(개소)

구분	법으로 종일제 명시	지원이 종일제 기준	희망아동 없음	시설 운영 애로	계(수)	$\chi^2(df)$
전체	13.9	24.1	59.5	2.5	100.0(453)	
유형						
민간	19.7	21.4	56.7	2.5	100.0(276)	9.0(3)*
가정	9.9	26.0	61.5	2.6	100.0(177)	
지역별						
민간						
대도시	20.5	22.7	54.5	2.3	100.0(88)	
중소도시	23.6	18.1	55.6	2.8	100.0(72)	9.3(6)
읍면	8.6	24.1	63.8	3.4	100.0(116)	
가정						
대도시	22.0	24.0	54.0	-	100.0(478)	
중소도시	3.2	29.0	62.9	4.8	100.0(237)	na
읍면	3.1	16.9	80.0	-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5$ 을 의미하고,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시설 운영실태 조사」 결과임.

시설유형별로 보아도 전반적인 이러한 경향은 유사한데 가정보육시설은 희망 아동이 없다는 응답이 많고, 민간보육시설은 보육시설 12시간 운영 원칙의 명시를 이유로 든 비율이 다소 높다. 지역별로는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 모두 도시보다 읍면에서 일찍 귀가하기를 희망하는 아동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고, 도시에서는 12시간 운영 법적 규정을 이유로 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본 보육시설 조사에서는 이러한 이용시간 적용과 더불어 이용시간 적용 아동 비율도 조사하였는데, 보육시설에서 보육하는 아동 중 종일제 적용 아동은 54.3%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민간보육시설이 39.3%, 가정보육시설이 69.3%로 가정보육시설이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영아와 유아가 차이를 보였다(표 III-2-10 참조).

〈표 III-2-10〉 종일제(6시 이후) 귀가 아동 비율

단위: %(개소)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전체	(수)
전체 평균	67.0	57.4	52.7	45.2	42.0	54.4	(715)
표준편차	40.2	39.6	39.1	40.1	38.2	35.8	
유형							
민간	48.9	43.7	39.1	37.7	38.0	39.3	(478)
가정	75.3	67.9	66.2	64.1	67.4	69.3	(237)
<i>t</i>	-6.6**	-7.6**	-9.4**	-6.6**	-5.6**	-12.3**	
지역별							
민간							
대도시	58.3	53.1	45.6	44.1	44.3	47.3	(148)
중소도시	33.6	32.0	30.8	29.1	29.2	29.3	(140)
읍면	66.9	48.1	42.6	42.8	43.0	44.3	(190)
<i>F</i>	9.9**	7.7**	5.4**	6.8**	6.1**	11.0**	
가정							
대도시	79.3	72.7	71.5	69.9	68.1	73.4	(73)
중소도시	73.0	65.7	63.4	58.8	72.7	67.9	(75)
읍면	70.0	59.6	59.3	54.0	54.4	60.7	(89)
<i>F</i>	1.1	2.5	2.3	1.2	0.9	3.7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는 $p < 0.05$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시설 운영실태 조사」 결과임.

이러한 비율은 2007년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에 비해 보육하는 영아 중 종일제 영아의 비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²⁵⁾

2007년 조사와 2008년 조사 모두 보육 아동의 취업모 비율이 비하여 종일제 보육 비율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취업이 상근 종일제보다는 비정규나 시간제 형태의 부정형적인 취업이 많고, 또한 집에 조부모 등 다른 가족이 있을 경우가 있

25) 2007년 조사에서는 종일제 아동 비율이 연령별로는 0세아는 48.0%, 만1세아 40.9%, 만2세아 33.7%로 집계되었음. 시설 운영주체별로 보면 가정보육시설이 46.9%로 다소 높고, 민간이 34.9%이고 법인과 국공립 시설은 각각 26.9%로 산출되었음

으므로 취업모라고 하여도 모두 자녀의 종일제를 희망하는 것은 아님을 나타낸다. 사실 아동 입장에서 종일 보육시설에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저소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유아의 부모들 경우도 경제적 문제만 없다면 오후 3시 정도까지의 시설을 이용하고 그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돌보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유형으로 선택하였다(서문희·홍승아 외, 2007).

라) 교사 근무시간

보육시설 운영시간과 관련하여 가장 밀접한 부분은 교사의 근무시간이다. 본 조사에서 평일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이 8시간 근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지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32.9%가 반드시 지킨다고 응답하였고 29.7%가 대체로 지키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7.5%는 잘 못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⁶⁾(표 II-2-11 참조).

그러나 최근에 노동부가 보육시설을 근로기준 감독 대상으로 인식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였다.²⁷⁾ 이러한 영향으로 보육시설에서도 시차 근무 등의 방법으로 8시간 근무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시설 유형별로는 가정보육시설보다는 민간보육시설에서 8시간 근로 기준을 잘 지키지 못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지역적으로는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읍면지역에서 지키지 못한다는 비율이 도시보다 낮고 반드시 지킨다는 비율이 높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이다. 한편 가정보육시설은 8시간 근무를 반드시 지킨다는 비율은 대도시가 가장 낮지만 지키는 편이라는 응답은 가장 많아서 의미 있는 차이로 보기는 어렵다(표 III-2-11 참조).

교사의 초과근무 실시 시에 수당을 지급하는 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3.1%만이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고 22.5%는 대체로 지급한다고 하였으며, 41.5%의 시설에서는 8시간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하면서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II-2-12 참조).

26) 보육교사의 다른 근로자와 달리 점심시간에 아이들 급식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타당성도 있는 주장이지만, 이 조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음.

27) 노동부가 보육시설 1,159개소를 점검한 결과, 대상 사업장의 80.7%인 935개소에서 1,98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함. 위반한 1,988건의 노동관계법 유형별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1,331건(67%)으로 가장 많았음.

〈표 III-2-11〉 보육교사 8시간 준수 여부

단위: %(개소)

구분	반드시 지킴	대체로 지킴	잘 못 지킴	계(수)	$\chi^2(df)$
전체	32.9	29.7	37.5	100.0(715)	
유형					
민간	30.3	28.4	41.3	100.0(478)	4.5(2)
가정	35.4	30.9	33.7	100.0(237)	
지역별					
민간					
대도시	25.0	34.5	40.5	100.0(148)	
중소도시	37.9	23.6	38.6	100.0(140)	12.3(4)*
읍면	25.3	24.7	50.0	100.0(190)	
가정					
대도시	30.1	37.0	32.9	100.0(73)	
중소도시	38.7	26.7	34.7	100.0(75)	2.4(4)
읍면	38.2	29.2	32.6	100.0(8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5$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시설 운영실태 조사」 결과임.

〈표 III-2-12〉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여부

단위: %(개소)

구분	반드시 지급	대체로 지급	지급 못함	초과근무 없음	계(수)	$\chi^2(df)$
전체	3.1	22.5	41.5	32.9	100.0(715)	
유형						
민간	5.3	19.9	44.4	30.3	100.0(478)	16.6(2)**
가정	0.8	25.1	38.7	35.4	100.0(237)	
지역별						
민간						
대도시	4.1	26.4	44.6	25.0	100.0(148)	
중소도시	7.1	15.7	39.3	37.9	100.0(140)	20.0(6)**
읍면	3.7	14.7	56.3	25.3	100.0(190)	
가정						
대도시	1.4	32.9	35.6	30.1	100.0(73)	
중소도시	-	20.0	41.3	38.7	100.0(75)	na
읍면	3.4	20.2	38.2	38.2	100.0(8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na는 빈도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부적절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시설 운영실태 조사」 결과임.

시설유형별로는 수당 지급을 못한다는 비율이 민간보육시설이 44.4%로 다소 높았

다. 지역별로는 시설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민간보육시설은 읍면에서 지급하지 못한다는 시설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가정보육시설은 중소도시에서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비율이 41.3%로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은 교사 처우 관련 조사 결과는 과거 연구와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

다음에서는 기존에 실시된 수요자 조사를 통하여 실제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주 당 평균 이용일수와 평일 이용시간은 어떠한가를 제시하였다.

가) 이용 일수

<표 III-2-13>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인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 일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용하는 경우가 86.9%로 거의 대부분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은 11.0%이었으며, 그 외 주당 3~4번 이용한다는 아동이 2.1%이었다.

〈표 III-2-13〉 보육시설 이용 일수

단위: %(명)

영아					유아				
구분	월~토 매일	월~금 매일	주당 3~4번	계(수)	구분	월~토 매일	월~금 매일	주당 3~4번	계(수)
전체	11.0	86.9	2.1	100.0(535)	전체	17.6	82.1	0.3	100.0(651)
연령					연령				
만 0세	7.5	90.0	2.5	100.0(40)	만 3세	15.0	84.7	0.3	100.0(339)
만 1세	12.2	86.2	1.7	100.0(181)	만 4세	19.0	81.0	-	100.0(158)
만 2세	10.8	86.9	2.3	100.0(314)	만 5세	22.2	77.1	0.7	100.0(144)
모취업					모취업				
취업	13.7	85.2	1.0	100.0(183)	취업	26.2	73.4	0.4	100.0(282)
미취업	10.7	87.4	2.0	100.0(253)	미취업	10.3	98.4	0.3	100.0(36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서문희·최혜선(2007). 영아 양육지원 종합 대책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육아정책개발센터(2007). 「2007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 평가 조사」 원자료.

이러한 차이는 모의 취업여부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연령별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은 0세아 7.5%, 1세아 12.2%, 2세아 10.8%로 0세아보다 만1, 2세아의 비율이 높다. 이외 24시간 이용비율은 0세아가 높다.

유아 조사 자료는 영아 조사 자료와 조사 지역과 문항의 보기 구성 방식은 다소 차이가 나지만 전체적 경향은 잘 나타난다. 유아의 보육시설 이용 일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용하는 경우가 82.1%로 다수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은 17.6%, 그 외의 이용시간은 1%미만이였다. 이러한 차이는 모의 취업여부별로도 다소 차이를 보여서 취업모 자녀가 주 6일 이용 비율이 높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아지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표 III-2-13 참조).

이러한 결과는 2004년 전국 조사와 비교하면 주 5일 이용이 크게 증가된 것이다. 2004년 조사에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34.3%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용하고, 65.0%는 주 5일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간 주 5일제 근무 확산에 따른 것으로 보육시설에서의 토요일 운영이 평일과는 다르고, 또 달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영아의 이용 양상이 변화하였음을 나타낸다. 과거 0세아는 거의 대부분이 취업모 자녀이었으나, 이제는 미취업모 자녀가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이용일수도 적은 영아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평일 이용시간

2007년도 영아와 유아 각기 다른 두 조사 결과 평일에 아동이 기관에 등원하는 시각과 귀가시각을 보면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가장 많은 40% 이상의 아동이 8시 30분 이후부터 9시까지 등원하고, 다음이 9시 이후부터 9시 30분까지로 약 20%이였다(표 III-2-14 참조).

귀가시각은 전체적으로는 가장 많은 17~18%의 아동이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에 집으로 가고 오후 3시까지 귀가하는 아동 비율은 영아 23.0%, 유아 22.93%이였다. 6시 이후에도 보육시설에 남는 비율은 영아 17.9%, 유아 22.7%이였다

이를 2004년도 전국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등원하는 시각은 8:31~9:00 비율이 높고, 귀가시각은 전체적으로는 다소 늦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유아를 기준으로 보면 3시 정도까지 귀가하는 아동은 2004년 조사에서 31.7%이였으나 2007년도 조사에서는 22.9%로 감소하였고, 6시 이후에 귀가하는 아동은 2004년 1.9%에서 2007년 22.7%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정부 지원이 종일제 기준이므로 시설장들이 이에 맞추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II-2-14〉 영아와 유아 등원, 귀가 시각(2007)

단위: %(명)

등원			귀가		
구분	영아	유아	구분	영아	유아
~ 7:30	2.5	1.1	~ 14:00	12.3	7.3
7:31 ~ 8:00	9.2	9.5	14:01 ~ 15:00	10.7	15.6
8:01 ~ 8:30	13.9	19.4	15:01 ~ 16:00	18.3	18.2
8:31 ~ 9:00	42.6	44.3	16:01 ~ 17:00	9.8	11.7
9:01 ~ 9:30	19.1	19.7	17:01 ~ 17:30	6.6	7.6
9:31 ~ 10:00	8.6	4.7	17:31 ~ 18:00	17.1	17.9
10:01 ~ 12:00	1.7	-	18:01 ~ 19:00	12.0	18.3
12:01 ~	0.2	0.2	19:01 ~	5.9	4.4
계(수)	100.0(439)	100.0(654)	계(수)	100.0(439)	100.0(654)

자료: 육아정책개발센터(2007). 「2007 영아가 있는 가구 조사」 원자료.

육아정책개발센터(2007). 「2007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 평가 조사」 원자료.

집을 출발하는 등원과 집에 도착하는 귀가시각으로 산출한 아동의 평일 보육시설 이용시간은 영아 7시간 38분, 유아 8시간으로 조사되었다.²⁸⁾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평일 이용시간 차이는 1시간 30분 정도로 추정되었다(표 III-2-15).

〈표 III-2-15〉 보육시설 유형별 영아 이용시간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기타법인	민간	가정	전체
영아						
~5시간	4.5	40.0	27.3	14.1	21.2	18.1
5~6시간	4.5	20.0	36.4	23.9	16.8	19.6
6~7시간	18.2	10.0	-	18.3	10.9	14.0
7~8시간	27.3	10.0	-	8.9	5.8	7.9
8~9시간	22.7	-	9.1	17.4	15.3	16.0
9~10시간	18.2	20.0	27.3	11.7	13.1	13.2
10~11시간	4.5	-	-	4.7	9.9	7.2
11시간~	-	-	-	0.9	6.9	4.0
계(수)	100.0(22)	100.0(10)	100.0(11)	100.0(213)	100.0(274)	100.0(530)
평균	7시간 56분	6시간 17분	7시간 14분	7시간 21분	7시간 52분	7시간 38분
표준편차	1시간 29분	2시간 6분	2시간 11분	1시간 53분	2시간 36분	2시간 18분

28) 아동이 집에서 출발하여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이므로 보육시설 이용시간은 이보다 평균 30분 이상 짧을 것으로 추정됨.

(표 계속)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기타법인	민간	가정	전체
유아						
~5시간	-	5.9	-	8.3	7.5	7.6
5~6시간	11.8	17.6	50.0	25.0	21.6	23.0
6~7시간	35.3	35.3	16.7	22.9	17.9	22.2
7~8시간	35.3	11.8	33.3	12.5	12.7	13.8
8~9시간	17.6	23.5	-	19.8	24.6	21.4
9~10시간	-	-	-	7.8	9.7	7.6
10~11시간	-	-	-	3.6	3.7	3.3
11시간~	-	5.9	-	-	2.2	1.1
계(수)	100.0(17)	100.0(17)	100.0(6)	100.0(192)	100.0(134)	100.0(369)
평균	7시간	7시간 19분	7시간 20분	7시간 23분	6시간 30분	7시간 35분
표준편차	2시간	1시간 39분	46분	1시간 54분	46분	1시간 45분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서문희·최혜선(2007). 영아 양육지원 종합 대책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육아정책개발센터(2007). 「2007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 평가 조사」 원자료.

영아의 경우 이용일수와 마찬가지로 5시간 이하가 18.1%, 6시간 이하는 37.7%로, 유아 각각 7.6%, 30.6%보다 높아서 영아 모의 상당수가 미취업 상태임을 짐작하게 한다.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평일 이용시간 차이는 2004년도 조사 결과와 유사하다.²⁹⁾

시설유형별로 차이를 보면 영아의 경우 국공립과 가정 시설이 가장 길어서 각각 평균 7시간 56분, 7시간 52분으로 나타났다.³⁰⁾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의 이용시간은 각 시간대에 매우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유아는 가정보육시설 이용 아동이 6시간 30분으로 가장 짧았다.

다음 <표 III-2-16>은 부모의 취업과 아동연령별로 나누어 영아와 유아의 평균 이용시간을 보다 상세히 조사한 결과이다. 그 결과를 보면, 영아의 경우 취업모 자녀의 이용시간은 평균 8시간 38분, 미취업모 자녀의 이용시간은 평균 6시간 44분으로 산출되었다. 이를 다시 아동의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취업모 자녀는 영아 연령이 어릴수록 이용하는 시간이 길었으며, 0세아가 9시간 28분, 만1세아 8시간 54분, 만2세아 8시간 18분이었었다. 그러나 미취업모 자녀는 0세아의 경우 5시간 54분으

29) 2004년도 조사에서는 영아 7시간 51분, 유아 7시간 14분으로 조사되었고,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평일 이용시간 차이는 1시간 30분 정도로 추정되었음.

30) 법인시설 이용시간이 가장 짧으나 사례수가 적어서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추후 자료 수집이 필요함.

로 만1세아와 만2세아 이용시간에 비하여 오히려 짧은 것으로 산출되었다. 유아도 이러한 경향은 마찬가지이다.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은 미취업모의 0세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시간이 6시간 미만으로 가장 짧다는 점이다. 영아 사례수가 적기는 하지만 비용과 이용시간이 적절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만1세와 만2세에 영아도 유아보다 이용시간이 짧다. 이는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보편적인 정부의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시설과 부모들의 반응 결과라 하겠다.

〈표 III-2-16〉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시간

단위: (명)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영아전체
취업				
평균	9시간 28분	8시간 54분	8시간 18분	8시간 38분
표준편차	2시간 11분	2시간 6분	2시간 15분	2시간 13분
(수)	(22)	(76)	(112)	(210)
미취업				
평균	5시간 54분	6시간 53분	6시간 23분	6시간 44분
표준편차	1시간 33분	1시간 51분	1시간 38분	1시간 43분
(수)	(17)	(103)	(199)	(319)
전체				
평균	8시간 19분	7시간 45분	7시간 17분	7시간 31분
표준편차	3시간 37분	2시간 11분	2시간 1분	2시간 15분
(수)	(40)	(181)	(311)	(532)
구분	만3세	만4세	만5세이상	유아전체
취업				
평균	9시간 1분	9시간 1분	8시간 29분	8시간 53분
표준편차	1시간 54분	1시간 44분	1시간 49분	1시간 51분
(수)	(138)	(69)	(67)	(274)
미취업				
평균	7시간 25분	7시간 16분	7시간 7분	7시간 19분
표준편차	1시간 38분	1시간 36분	1시간 43분	1시간 39분
(수)	(364)	(200)	(89)	(75)
전체				
평균	8시간 4분	8시간 2분	7시간 48분	8시간
표준편차	1시간 55분	1시간 52분	1시간 53분	1시간 54분
(수)	(641)	(339)	(158)	(144)

주: 모부재 아동 3명(1명은 24시간 보육)이 포함됨.

자료: 서문희·최혜선(2007). 영아 양육지원 종합 대책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육아정책개발센터(2007). 「2007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 평가 조사」 원자료.

다. 보육시설 이용 비용

1) 보육시설 보육료

가) 보육료 책정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 보육료를 종일 이용아동과 차별화하는가를 조사하였다. <표 III-2-17>은 오후 6시 이후에 귀가하는 아동과 2~3시에 귀가하는 아동의 보육료에 차등을 둔다는 비율을 나타낸다. 0, 1세 아동과 그 이상 연령 아동이 차이를 보여, 전체적으로 0세아와 만1세아는 차이를 둔다는 비율이 35.1%와 38.1%인데 비하여 그 이상은 41% 이상이다. 시설유형별로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거나 보육료에 차이를 둔다는 비율을 보면 0세아는 민간보육시설, 만4세아는 가정보육시설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III-2-17> 종일제와 2-3시 귀가 아동간 보육료에 차등을 두는 시설 비율
단위: %(개소)

구분	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전체	35.1	38.1	44.4	41.8	41.5
(수)	(88)	(175)	(230)	(207)	(189)
민간	37.2	40.0	44.7	43.8	41.3
(수)	(60)	(125)	(179)	(186)	(176)
가정	28.6	33.3	41.7	29.6	33.3
(수)	(28)	(50)	(51)	(21)	(13)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시설 운영실태 조사」 결과임.

<표 III-2-18> 종일제와 2-3시 귀가 아동간 보육료 차액
단위: 천원(개소)

구분	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전체					
평균	51.1	55.3	39.1	37.5	38.3
표준편차	32.2	36.5	18.9	20.3	20.4
최저	3.0	3.0	3.0	5.0	5.0
최고	122.0	177.0	130.0	130.0	130.0
(수)	(25)	(58)	(94)	(86)	(78)

(표 계속)

구분	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민간					
평균	34.8	43.1	40.5	38.6	39.4
표준편차	20.9	23.3	21.6	20.8	20.2
(수)	(18)	(42)	(72)	(77)	(72)
가정					
평균	76.9	73.2	36.2	29.7	22.5
표준편차	30.6	44.8	12.1	14.6	17.9
(수)	(7)	(16)	(22)	(9)	(6)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시설 운영실태 조사」 결과임.

다음은 차등을 두는 경우 금액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표 III-2-18>을 보면 최저 0세아 3,000원, 최고 만1세아 177,000원으로 시설별 편차가 매우 크다.

평균으로는 민간보육시설은 40,000원 내외이고 가정보육시설은 0세와 만1세는 70,000원 수준이며 2세는 1/2로 감소한다. 만3세는 30,000원 수준이며 만4세 이상은 22,000원 정도로, 연령이 높아지면서 차이는 급격하게 감소한다.

다음 <표 III-2-19>는 오후 6시 이후에 귀가 하는 아동과 4~5시에 귀가하는 아동의 보육료에 차등을 두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것인데 차이를 둔다는 비율은 연령 별로 0세아 9.3%, 4세 이상아 4.9%로 소수에 불과하다. 시설유형별로는 민간시설이 최대 만0세아로 5.9%, 최소 4세이상아로 3.4%이며, 가정시설은 최대 0세아 11.8%, 최소 만1세 이상아 7.1%로 민간시설에 비하여 다소 높다.

<표 III-2-19> 종일제와 4-5시 귀가 아동간 보육료에 차등을 두는 시설 비율
 단위: %(개소)

구분	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전체	9.3	6.1	6.1	5.3	4.9
(수)	(215)	(333)	(409)	(335)	(303)
민간	5.9	5.4	4.1	3.7	3.4
(수)	(342)	(229)	(297)	(292)	(282)
가정	11.8	7.1	7.4	9.3	-
(수)	(13)	(79)	(104)	(112)	(21)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시설 운영실태 조사」 결과임.

〈표 III-2-20〉 종일제와 4-5시 귀가 아동간 보육료 차액

단위: 천원(개소)

구분	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전체					
평균	39.9	35.8	26.9	27.2	24.4
표준편차	30.1	24.5	18.2	13.4	10.9
최저	10.0	10.0	8.0	10.0	10.0
최고	122.0	100.0	90.0	50.0	40.0
(수)	(15)	(19)	(24)	(15)	(13)
민간					
평균	29.5	34.9	32.7	27.7	24.2
표준편차	15.7	26.3	21.8	12.2	11.1
(수)	(7)	(12)	(14)	(11)	(12)
가정					
평균	43.9	36.5	22.6	26.7	30.0
표준편차	33.8	24.2	14.4	15.4	0.0
(수)	(8)	(7)	(10)	(4)	(1)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시설 운영실태 조사」 결과임.

〈표 III-2-20〉은 차등을 두는 경우 보육료 금액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전체적으로 평균은 만4세 이상아 24,400부터 0세아 39,900이며, 표준편차는 다소 높아서 0세아의 경우 최대 10,000원, 최대 122,000원이고 만4세아는 최대 40,000원으로 조사되었다. 시설유형별 차이는 아동연령에 따라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이 일관성 있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나) 보육료

보육시설의 보육료는 연령별로, 그리고 이용하는 시간유형별로 나누어서 알아보 고자 하였다(표 III-2-21 참조).

먼저 0세아 보육료이다. 종일제로 조사한 보육료는 전체적으로 평균은 369,300원 으로 조사되었고, 오후 2~3시경에 귀가하는 아동의 경우는 343,200원, 오후 4~5시 경에 귀가하는 아동은 366,200원으로 조사되어, 종일제와 4~5시에 귀가하는 아동간 의 차이는 거의 없고, 오후 2~3시에 귀가하는 아동만 종일제 보육료 대비 26,000원 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시설의 보육료 편차는 커서 표준 편차가 크다. 특히 종일제는 최소 150,000원부터 최대 558,000원으로 많은 차이를 보였고 오후 2~3시 귀가 아동의 보육료 표준편차는 378,00원에 이른다.

〈표 III-2-21〉 연령별 이용시간 유형별 보육료

단위: 천원(개소)

구분	종일제			단축형 I			단축형 II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보육료	표준 편차	(수)
0세아	369.3	228.4	(365)	343.2	483.3	(96)	366.2	190.3	(231)
최소	150.0			182.0			250.0		
최대	558.0			378.0			378.0		
1세아	320.7	22.8	(529)	302.2	42.6	(195)	320.6	22.0	(369)
최소	150.0			150.0			180.0		
최대	490.0			372.0			400.0		
2세아	269.8	20.5	(625)	254.5	28.9	(246)	269.4	19.7	(448)
최소	167.0			170.0			180.0		
최대	409.0			327.0			400.0		
3세아	224.4	28.9	(483)	211.4	28.9	(223)	222.7	30.2	373
최소	120.0			130.0			150.0		
최대	366.0			296.0			355.0		
4세아	211.6		(422)	196.5		(200)	209.1		(328)
최소	120.0	31.6		110.0	30.9		145.0	32.3	
최대	361.0			292.0			361.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시설 운영실태 조사」 결과임.

만1세아 보육료를 보면, 종일제 보육료 전체 평균은 320,700원으로 조사되었고, 오후 2~3시경에 귀가하는 아동의 경우는 302,200원, 오후 4~5시경에 귀가하는 아동의 경우는 320,600원으로 조사되어, 종일제와 비교할 때 2~3시경에 귀가하는 아동의 보육료는 18,500원이 저렴하다. 그러나 이 역시 개별 시설의 보육료 편차는 커서 표준편차가 228,000원에서 426,000원에 이른다.

만2세아 보육료를 보면, 종일제 보육료 전체 평균은 269,800원으로 조사되었고, 오후 2~3시경에 귀가하는 아동의 경우는 254,500원, 오후 4~5시경에 귀가하는 아동의 경우는 269,400원으로 조사되어, 종일제와 2~3시 귀가하는 아동의 보육료는 15,300원이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이 역시 개별 시설의 보육료 편차는 크다.

만3세아 보육료를 보면, 종일제 보육료 전체 평균은 224,400원으로 조사되었고, 오후 2~3시경에 귀가하는 아동의 경우는 211,400원, 오후 4~5시경에 귀가하는 아동의 경우는 227,700원으로 조사되어, 종일제와 2~3시 귀가하는 단축형 I의 보육료는 13,000원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 역시 개별 시설의 보육료 편차가 크다.

만4세 이상아 보육료를 보면, 종일제 보육료 전체 평균은 211,600원이고, 오후

2~3시경에 귀가하는 아동의 경우는 196,500원, 오후 4~5시경에 귀가하는 아동의 경우는 209,100원으로 조사되어, 종일제와 2~3시 귀가하는 아동의 보육료는 15,100원의 차이가 난다. 만4세아 보육료 역시 최소 12만원, 최대 361,000원으로 시설간 편차가 크다.

<표 III-2-22>부터 <표 III-2-26>은 각 연령별로 시설유형별, 지역별 보육료이다. 전반적으로 시설유형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지역별로는 시설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다. 시설유형별로는 보육료 평균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지역별로 나누어서 보면 6시 이후 귀가 아동의 보육료는 지역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일찍 귀가하는 아동의 보육료는 대도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낮다. 특히 오후 2~3시 귀가 아동 보육료는 지역별로 최대 2만원 가량의 차이를 나타냈다. 시설유형별로는 보육료 평균은 종일제는 거의 차이가 없으나 일찍 귀가하는 아동의 보육료는 민간보육시설이 약간 높다. 지역별로 나누어서 보면 민간시설은 대체로 도시에서 읍면보다 보육료가 높고, 가정보육시설은 6시 이후 귀가 아동의 보육료는 대도시가 높으나 2~3시 귀가하는 아동 보육료는 중소도시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I-2-22> 0세아 보육료

단위: 천원(개소)

구분	종일제			단축형 I			단축형 II		
	보육료	(수)	F/t	보육료	(수)	F/t	보육료	(수)	F/t
유형									
민간	366.8	(187)	-1.6	354.5	(65)	2.4	365.2	(147)	-0.7
가정	370.5	(178)		330.1	(31)		367.1	(84)	
지역별									
민간									
대도시	369.6	(48)		352.7	(19)		366.8	(42)	
중소도시	364.4	(46)	1.3	350.9	(19)	3.0	363.3	(48)	0.5
읍면	363.3	(73)		367.7	(27)		367.0	(57)	
가정									
대도시	369.2	(1)		307.3	(8)		361.0	(20)	
중소도시	372.4	(57)	1.2	336.8	(8)	0.9	369.8	(31)	1.5
읍면	365.9	(60)		364.8	(15)		368.8	(3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시설 운영실태 조사」 결과임.

〈표 III-2-23〉 만1세아 보육료

단위: 천원(개소)

구분	종일제			단축형 I			단축형 II		
	보육료	(수)	F/t	보육료	(수)	F/t	보육료	(수)	F/t
유형									
민간	326.1	(324)	-2.7**	295.9	(142)	1.0	322.3	(256)	-0.7
가정	323.8	(205)		299.5	(53)		321.4	(113)	
지역별									
민간									
대도시	321.1	(112)		293.4	(40)		319.9	(69)	
중소도시	322.2	(79)	1.8	306.0	(43)	3.2*	324.1	(80)	3.4*
읍면	315.5	(133)		312.3	(59)		313.1	(107)	
가정									
대도시	324.2	(66)		285.4	(16)		316.1	(27)	
중소도시	328.3	(66)	1.6	300.6	(15)	1.7	325.9	(39)	1.9
읍면	322.5	(73)		311.6	(22)		320.7	(47)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는 $p < 0.05$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시설 운영실태 조사」 결과임.

〈표 III-2-24〉 만2세아 보육료

단위: 천원(개소)

구분	종일제			단축형 I			단축형 II		
	보육료	(수)	F/t	보육료	(수)	F/t	보육료	(수)	F/t
유형									
민간	268.4	(415)	0.8	250.3	(194)	1.0	266.3	(329)	1.6
가정	269.0	(210)		253.1	(52)		268.1	(119)	
지역별									
민간									
대도시	269.6	(143)		253.1	(57)		269.2	(96)	
중소도시	272.7	(110)	7.3**	256.1	(62)	0.2	272.2	(101)	6.2**
읍면	263.4	(162)		253.3	(75)		262.3	(132)	
가정									
대도시	267.3	(69)		247.1	(15)		263.3	(29)	
중소도시	269.4	(66)	0.4	250.8	(15)	0.9	267.9	(40)	0.8
읍면	266.9	(75)		258.0	(22)		266.5	(50)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시설 운영실태 조사」 결과임.

〈표 III-2-25〉 만3세아 보육료

단위: 천원(개소)

구분	종일제			단축형 I			단축형 II		
	보육료	(수)	F/t	보육료	(수)	F/t	보육료	(수)	F/t
유형									
민간	221.8	(406)	0.8	205.0	(200)	1.1	208.9	(323)	3.5**
가정	223.7	(77)		210.3	(23)		219.4	(50)	
지역별									
민간									
대도시	225.6	(136)		211.1	(54)		223.8	(93)	
중소도시	230.8	(108)	29.7**	216.0	(66)	7.1**	227.8	(100)	17.9**
읍면	206.7	(162)		199.0	(80)		206.4	(130)	
가정									
대도시	231.6	(32)		197.4	(9)		217.0	(16)	
중소도시	210.8	(18)	4.8*	222.0	(4)	2.1	204.1	(15)	1.6
읍면	211.5	(27)		195.5	(10)		200.1	(1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는 $p < 0.05$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시설 운영실태 조사」 결과임.

〈표 III-2-26〉 만4세 이상아 보육료

단위: 천원(개소)

구분	종일제			단축형 I			단축형 II		
	보육료	(수)	F/t	보육료	(수)	F/t	보육료	(수)	F/t
유형									
민간	203.3	(384)	1.6	195.7	(187)	0.1	190.6	(305)	2.7**
가정	210.4	(38)		196.4	(13)		207.2	(23)	
지역별									
민간									
대도시	214.3	(125)		197.6	(49)		212.3	(88)	
중소도시	217.4	(102)	32.4**	200.4	(60)	6.5**	213.4	(91)	20.5**
읍면	191.7	(157)		183.5	(78)		190.6	(126)	
가정									
대도시	206.9	(9)		186.7	(3)		191.0	(5)	
중소도시	200.2	(9)	0.1	207.0	(1)	0.3	185.2	(4)	0.2
읍면	204.1	(20)		202.0	(9)		199.2	(14)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시설 운영실태 조사」 결과임.

다) 정부지원단가와 보육료 차액 보전여부

현재 영아보육료는 기본조보급의 지급으로 시설유형별 차이가 없어졌으나 유아보육료는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 보육료와 정부 지원단가가 차이가 난다. 따라서 무상보육지원 대상아동이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의 차액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시설 입장에서는 이를 부모로부터 받기도, 받지 않기도 마땅치 않다.

<표 III-2-27>은 이 경우에 그 차액을 어떻게 하는가를 질문한 결과이다. 20.4%는 정부 지원단가와 시설 보육료가 차이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15.0%는 받지 않는다는 반면에 64.4%의 시설은 부모로부터 수납한다고 하였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민간보육시설이 차액을 부모에게 수납한다는 비율이 다소 높았고, 가정보육시설이 보육료와 지원단가의 차이가 없다는 응답과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2-27> 보육료와 정부지원단가 차액 보전 여부

단위: %(개소)

구분	차이 없음 (낮음 포함)	안 받음	정부등이 보전	부모에게 수납	계(수)	$\chi^2(df)$
전체	20.4	15.0	0.2	64.4	100.0(527)	
유형						
민간	18.4	14.8	-	66.8	100.0(404)	na
가정	22.9	15.3	0.4	61.4	100.0(168)	
민간						
대도시	8.7	12.2	-	79.1	100.0(115)	
중소도시	24.2	16.7	-	59.1	100.0(132)	17.8(6)**
읍면	24.8	15.3	0.6	59.2	100.0(157)	
가정						
대도시	16.0	14.0	-	70.0	100.0(50)	
중소도시	26.9	15.4	-	57.7	100.0(52)	na
읍면	28.8	19.7	4.5	47.0	100.0(66)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na는 빈도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부적절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시설 운영실태 조사」 결과임.

라) 기타 비용

기타 비용으로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냉난방비, 차량운영비, 기타 등 다섯 가지 항목으로 비용을 추가로 받는지, 추가로 받는다면 만4세아 기준으로 최대 얼마

를 받는지를 조사하였다. <표 III-2-28>은 이들 5종의 추가 비용을 합산하여 어느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지 조사한 결과이다.

우선 만4세 이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중 추가 비용을 받는다는 보육시설은 민간시설 55.8%, 가정시설 32.6%로 조사되었다. 동일 시설 유형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나고, 특히 가정보육시설에서 지역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한편 추가 비용을 하나라도 수납한다는 시설의 평균 추가 수납 비용은 민간보육시설 43,400원, 가정보육시설 31,700원이었다. 표준편차가 각각 35,800원, 23,000원으로 시설별 차이가 크다.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최소 2,000원부터 최대 250,000원으로 조사되었고, 가정보육시설은 각각 3,000원, 110,000원이었다. 이러한 추가 비용 수납 여부와 규모는 지역별로는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차이가 비교적 크지만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지역 차이는 거의 없었다.

<표 III-2-28> 보육료 외 기타 비용

단위: %, 천원(개소)

구분	수납 응답 비율	수납비용					F/t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전체	44.1	39.1	32.1	2.0	250.0	(324)	
유형							
민간	55.8	43.4	35.8	2.0	250.0	(256)	3.1**
가정	32.6	31.7	23.0	3.0	110.0	(68)	
지역별							
민간							
대도시	67.6	51.1	33.6	3.0	165.0	(100)	
중소도시	49.3	37.2	39.1	2.0	250.0	(69)	5.0**
읍면	45.8	31.8	28.1	2.0	200.0	(87)	
가정							
대도시	41.1	26.2	22.9	3.0	100.0	(30)	
중소도시	29.3	27.8	22.6	3.0	70.0	(22)	2.2
읍면	18.0	24.3	25.5	3.0	110.0	(16)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시설 운영실태 조사」 결과임.

2) 부모부담 보육료

<표 III-2-29>은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 조사 결과로 나타난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고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를 제시한 것이다. 유아의 보육료가 3세 279,200원, 4세 257,000원, 5세 272,400원으로 비교

적 높게 산출되었고, 표준편차로 보아서 개별 시설간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2-29〉 민간 가정 보육시설 보육료 미지원 아동 보육료

단위: 천원(명)

구분	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평균	333.1	304.5	272.8	279.2	257.4	272.4
표준편차	62.4	53.5	62.1	99.5	78.2	82.9
최저	180.0	180.0	170.0	150.0	100.0	120.0
최고	400.0	400.0	420.0	800.0	475.0	590.0
(수)	(11)	(21)	(62)	(75)	(46)	(2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07).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대국민 만족도 조사」 원자료.

3. 유치원 운영 및 이용시간과 비용

제3절에서는 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유치원의 운영시간과 취원아의 이용시간, 그리고 이에 따른 수업료의 수준과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 유치원 이용 아동 모의 취업 특성

유치원 이용 아동 중 취업모의 자녀 비율보다는 미취업모 자녀 비율이 높다.

2007년에 KDI에서 조사한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대국민 만족도 조사 자료에서 유치원 이용 아동 중 취업모 자녀의 비율은 32.8%로 조사되었다(표 III-3-1 참조).

〈표 III-3-1〉 유치원 이용 취업모 자녀 비율

단위: %(명)

구분	전체	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취업	32.8	33.3	38.5	31.4	29.3	30.3	36.6
미취업	67.2	67.7	61.5	68.6	70.7	69.7	63.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045)	(6)	(13)	(35)	(229)	(330)	(432)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07).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대국민 만족도 조사」 원자료.

이는 앞에서 제시한 2004년도 조사에서 추정된 취업모 자녀 비율 32.4%(표 III-2-1 참조)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최근에 종일반을 운영하는 유치원이 증가하면서

유치원 운영시간과 아동의 이용시간이 과거에 비해 길어지고는 있으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중 취업모 자녀의 비율은 최근에 거의 달라진 것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한편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조사 결과, 유치원 단위에서 유치원 재원 아동 중 취업모 자녀 비율의 평균은 45.9%로 조사되었고,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취업모 자녀 비율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지역별로 보면, 읍면지역 유치원의 취업모 자녀 비율이 도시지역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읍면지역 사립유치원의 취업모 자녀 비율이 75.3%로 전체 평균에 비하여 매우 높았다(표 III-3-2 참조).

〈표 III-3-2〉 유치원 재원아의 취업모 자녀 비율

단위: %(개원)

구분	3세아			4세 이상아			전체		
	평균	(수)	F/t	평균	(수)	F/t	평균	(수)	F/t
전체	48.2	(569)		46.5	(703)		45.9	(704)	
표준편차	46.5			56.2			39.6		
유형별									
국공립	51.7	(143)	0.7	47.7	(235)	0.6	47.9	(235)	1.4
사립	45.3	(426)		45.0	(468)		43.7	(469)	
지역별									
국공립									
대도시	45.5	(26)		44.1	(71)		43.8	(71)	
중소도시	39.4	(17)	1.8	38.6	(42)	5.3**	38.8	(42)	6.2**
읍면	55.0	(100)		52.5	(122)		52.7	(122)	
사립									
대도시	37.5	(131)		40.7	(146)		39.9	(146)	
중소도시	44.0	(134)	1.2	44.0	(151)	1.5	43.8	(151)	2.0
읍면	75.3	(161)		63.1	(171)		56.9	(17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운영실태 조사」 결과임.

나. 유치원 운영 및 이용 일수와 시간

1) 유치원 운영

가) 운영일수

〈표 III-3-3〉에 제시된 유치원 운영 일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는 비율이 74.7%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는 비율인 25.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국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전체의 88.4%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여 사립유치원 58.8%에 비하여 토요일까지 운영하는 비율이 약 30% 포인트 높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또한 이 같은 경향은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지역별로 유사하였으나 사립유치원은 토요일 운영 비율이 대도시에서 63.7%로 나타나 중소도시나 읍면지역보다 높았다(표 III-3-3 참조).

〈표 III-3-3〉 주당 유치원 운영 일수

구분	월~금	월~토	계	단위: %(개원) $\chi^2(df)$
전체	25.3	74.7	100.0(704)	
유형별				
국공립	11.6	88.4	100.0(235)	81.3(1)***
사립	41.2	58.8	100.0(469)	
지역별				
국공립				
대도시	12.7	87.3	100.0(71)	0.3(2)
중소도시	9.5	90.5	100.0(42)	
읍면	12.3	87.7	100.0(122)	
사립				
대도시	36.3	63.7	100.0(146)	4.4(2)
중소도시	45.0	55.0	100.0(151)	
읍면	47.7	52.3	100.0(17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운영실태 조사」 결과임.

나) 운영시간

평일 하루 중 유치원 개·폐원 시각과 운영시간을 알아보았다. <표 III-3-4>를 보면, 조사대상 유치원 중 42.9% 정도가 8시까지 개원하며, 나머지 대부분의 유치원은 9시까지 개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에 따라서는 사립유치원이 조금 더 일찍 개원하는 경향을 보였다. 유치원의 폐원 시간을 보면, 과반수 이상의 유치원이 6시 이전에 폐원하고 있었다. 설립유형별로는 사립유치원의 폐원시각이 국공립유치원의 폐원시각보다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4〉 유치원 평일 개원 및 폐원시각

단위: %(개원)

개원				폐원			
구분	전체	국공립	사립	구분	전체	국공립	사립
~ 7:30	5.5	5.5	5.5	~ 15:00	6.8	7.6	5.8
7:31 ~ 8:00	37.4	28.0	48.3	15:01 ~ 16:00	4.8	31.9	0.6
8:01 ~ 8:30	31.2	42.9	17.5	16:01 ~ 17:00	30.0	49.8	7.1
8:31 ~ 9:00	22.9	23.5	22.2	17:01 ~ 18:00	25.2	22.6	28.3
9:01 ~	3.0	-	6.5	18:01 ~ 18:30	9.8	4.2	16.3
				18:31 ~ 19:00	15.0	3.2	28.9
				19:01 ~ 20:00	8.1	-	6.8
				20:01 ~	5.1	4.5	5.8
계(수)	100.0 (704)	100.0 (235)	100.0 (469)	계(수)	100.0 (704)	100.0 (235)	100.0 (46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운영실태 조사」 결과임.

〈표 III-3-5〉는 유치원 설립유형별 평일 운영시간을 보여준다. 유치원 운영시간의 전체 평균은 9시간 34분이었고, 최대 14시간, 최소 4시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는 사립유치원의 운영시간이 9시간 54분으로 국공립유치원의 운영시간보다 1시간 14분 더 길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에 있는 유치원의 운영시간이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모두 10시간 이상으로 가장 길었고, 특히 국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중소도시나 읍면지역과의 평균 운영시간 차이가 사립유치원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설립유형별, 지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표 III-3-5〉 유치원 평일 운영시간

단위: %(개원)

구분	국공립				사립			
	평균	표준편차	(수)	F	평균	표준편차	(수)	F
전체	8시간 40분	1시간 30분	(235)		9시간 54분	1시간 39분	(469)	
대도시	10시간 25분	2시간 13분	(71)		10시간 3분	1시간 56분	(146)	
중소도시	8시간 49분	1시간 23분	(42)	83.0***	9시간 47분	1시간 22분	(151)	20.9***
읍면	8시간 15분	1시간 4분	(122)		9시간 50분	1시간 20분	(122)	
t	-10.3***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운영실태 조사」 결과임.

다) 운영시간 형태

〈표 III-3-6〉은 유치원의 운영시간에 따른 기본 운영시간 유형을 나타낸다. 연장제를 기본으로 하는 유치원이 전체의 44.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반일제, 종일제 순이었다. 설립유형별 운영시간 유형은 전체적인 경향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반일제, 종일제, 연장제 순으로 많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에 비해, 사립유치원은 연장제, 반일제, 종일제 순으로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지역별로 보면, 읍면지역의 국공립유치원에서는 종일제를 기본 운영시간으로 하고 있는 비율이 54.9%로 대도시나 중소도시 유치원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III-3-6〉 유치원 기본 운영시간 유형

단위: %(개원)

구분	반일제	연장제	종일제	계	$\chi^2(df)$
전체	35.9	44.2	19.9	100.0(704)	
유형별					
국공립	35.6	29.6	34.8	100.0(235)	131.92)**
사립	36.3	61.2	2.5	100.0(469)	
지역별					
국공립					
대도시	70.4	22.5	7.0	100.0(71)	83.0(4)**
중소도시	59.5	38.1	2.4	100.0(42)	
읍면	18.0	27.0	54.9	100.0(122)	
사립					
대도시	45.9	53.4	0.7	100.0(146)	na
중소도시	27.8	68.2	4.0	100.0(151)	
읍면	25.0	69.8	5.2	100.0(12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부적절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운영실태 조사」 결과임.

라) 교사 근로시간

유치원 교사의 근로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8시간 근로 준수 여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58.0%의 국공립유치원과 20.6%의 사립유치원이 8시간 근로를 반드시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대체로 지키는 편이라고 응답한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국공립유치원의 80.2%, 사립유치원의

54.1% 정도가 8시간 근로기준을 대체로 지키고 있었으며, 나머지 19.8%의 국공립유치원과 45.9%의 사립유치원에서는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8시간 근로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은 대도시에서 높게 나타났고,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중소도시에서 높게 나타났다(표 III-3-7 참조).

8시간 근로기준 준수에 대한 보육시설의 응답과 비교해보면, 반드시 지킨다고 응답한 유치원 비율은 보육시설 비율 32.9%보다 약간 높았고, 잘못 지킨다고 응답한 유치원 비율은 보육시설 비율 37.5%보다 다소 낮았다(표 III-2-11 참조).

〈표 III-3-7〉 유치원교사 8시간 근무 준수 여부

단위: %(개원)

구분	반드시 지킴	대체로 지킴	잘 못 지킴	계	$\chi^2(df)$
전체	40.8	27.4	31.8	100.0(704)	
유형별					
국공립	58.0	22.2	19.8	100.0(235)	105.7(2)**
사립	20.6	33.5	45.8	100.0(469)	
지역별					
국공립					
대도시	36.6	39.4	23.9	100.0(71)	13.7(4)**
중소도시	61.9	16.7	21.4	100.0(42)	
읍면	60.7	21.3	18.0	100.0(122)	
사립					
대도시	20.5	38.4	41.1	100.0(146)	8.5(4)
중소도시	18.5	30.5	51.0	100.0(151)	
읍면	26.7	25.6	47.7	100.0(12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운영실태 조사」 결과임.

8시간 근로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유치원에서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21.1%의 국공립유치원과 67.8%의 사립유치원에서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8시간 근로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유치원만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면, 약 50%의 국공립유치원과 약 85%의 사립유치원에서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III-3-8 참조).

이처럼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유치원의 비율은 앞에 제시된 보육시설의 응답 비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표 III-2-12 참조).

〈표 III-3-8〉 유치원교사 초과근무 수당 지급 여부

단위: %(개원)

구분	반드시 지급	대체로 지급	지급 못함	무응답	비해당	계	$\chi^2(df)$
전체	5.7	10.4	42.7	0.6	40.7	100.0(704)	
유형별							
국공립	8.4	11.9	21.1	0.5	58.0	100.0(235)	na
사립	2.5	8.6	67.8	0.6	20.6	100.0(469)	
지역별							
국공립							
대도시	12.7	32.4	18.3	-	36.6	100.0(71)	24.7(8)**
중소도시	7.1	7.1	23.9	-	61.9	100.0(42)	
읍면	8.2	9.8	20.5	0.8	60.7	100.0(122)	
사립							
대도시	3.4	6.2	69.9	-	20.5	100.0(146)	11.9(8)
중소도시	2.0	11.9	66.9	0.7	18.5	100.0(151)	
읍면	1.2	6.4	64.0	1.7	26.7	100.0(122)	

주: **는 $p < 0.01$ 을,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부적절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운영실태 조사」 결과임.

〈표 III-3-9〉는 종일반 담당교사 별도 채용 비율을 보여준다. 국공립유치원의 66.2%와 사립유치원의 62.6%에서 별도의 종일반을 담당하는 별도의 교사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지역별 차이 또한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대도시 유치원의 종일반 담당교사 별도 채용 비율이 높았고, 특히 대도시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그 비율은 91.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종일반 담당교사를 별도 채용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종일반 담당 교사의 신분을 파악해 보았다. 그 결과, 전체의 64.5% 유치원에서 종일반을 담당하는 별도의 교사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청에 임용 보고된 정규교사³¹⁾ 비율이 55.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유치원교사 자격증 보유 강사 33.9%, 기타 자격증 보유 강사 14.7%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에 임용 보고된 정규교사 비율은 대도시 사립유치원에서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표 III-3-9 참조).

31) 유치원은 학급대비 1.5배의 교사를 종일제 교사로 임용 보고할 수 있음.

〈표 III-3-9〉 유치원 종일반 담당교사 채용 여부 및 신분

단위: %(개원)

구분	채용비율			있는 경우 교사의 신분(중복응답)				
	비율	(수)	$\chi^2(df)$	교육청에 임용 보고된 정규교사	유치원교사 자격증 보유	기타 자격증 보유	기타	(수)
전체	64.5	(704)		55.2	33.9	14.7	1.7	(433)
유형별								
국공립	66.2	(235)	1.0(1)	48.7	43.2	12.7	1.7	(168)
사립	62.6	(469)		63.2	22.5	17.2	1.6	(265)
지역별								
국공립								
대도시	91.5	(71)	20.1(2)***	43.1	69.2	4.6	-	(65)
중소도시	61.9	(42)		53.8	38.5	11.5	3.8	(26)
읍면	63.1	(122)		48.1	37.7	15.6	1.3	(77)
사립								
대도시	73.3	(146)	31.8(2)***	73.8	15.9	14.0	0.9	(107)
중소도시	57.0	(151)		52.3	30.2	19.8	2.3	(86)
읍면	41.9	(122)		41.7	31.9	26.4	2.8	(7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운영실태 조사」 결과임.

2) 이용시간 유형별 이용 아동 비율

유치원 이용 아동의 이용시간은 2004년 조사에서는 평균 5시간 50분으로 조사되었다. 취업모 자녀와 미취업모의 자녀가 평균 37분 정도의 차이만을 보였다(표 III-3-10 참조). 최근 종일제 운영이 증가하면서 유치원 이용시간은 다소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III-3-10〉 모 취업여부별 유치원 취원 아동 이용시간(2004)

단위: %(명)

이용시간	취업모	미취업	전체
~5시간 이하	26.6	30.9	28.7
5~6시간 이하	31.0	39.9	37.6
6~7시간 이하	17.1	22.5	20.7
7~8시간 이하	8.2	4.8	6.4
8~9시간 이하	11.4	1.9	4.8
9시간 이상	5.7	-	1.9
계(수)	100.0(158)	100.0(311)	100.0(484)
평균	6시간 15분	5시간 38분	5시간 50분
표준편차	1시간 36분	59분	1시간 15분

자료: 서문희 외(2005),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III-3-11>은 유치원 단위로 아동의 이용시간을 반일제, 연장제, 종일제로 나누어 재원 아동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는 연장제를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이 40.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종일제, 반일제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설립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종일제 이용 아동이 58.0%로 반일제나 연장제 이용 아동 비율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았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공립유치원과는 달리 연장제를 이용 아동 비율이 50.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종일제 26.1%, 반일제 23.4% 순이었다.

<표 III-3-11> 유치원 이용시간 유형별 재원 아동 비율

단위: %(개원)

구분	반일제		연장제		종일제		(수)
	비율	F/t	비율	F/t	비율	F/t	
전체							
평균	21.0		35.8		43.2		(704)
표준편차	31.6		38.6		34.8		
유형별							
국공립	19.0	-1.8	23.1	-10.1***	58.0	14.2***	(235)
사립	23.4		50.6		26.1		(469)
지역별							
국공립							
대도시	40.1		12.5		47.5		(71)
중소도시	31.5	33.2***	30.2	3.8	38.3	16.7***	(42)
읍면	9.1		22.1		68.8		(122)
사립							
대도시	30.4		47.2		22.4		(146)
중소도시	18.0	10.5***	54.9	1.9	27.1	16.8***	(151)
읍면	14.3		49.5		36.2		(17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01$ 을, *는 $p < 0.05$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운영실태 조사」 결과임.

다. 유치원 비용

1) 유치원 교육비

가) 교육비 책정

유치원에서 책정한 교육비를 알아보기 위하여 만 4세아를 기준으로 기본수업료와

기타 비용을 파악하였다.

기본수업료를 책정하는 방식은 반일제, 연장제, 종일제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조사 대상 유치원의 적용하는 방식별 비율은 <표 III-3-1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연장제를 기준으로 기본수업료를 책정하는 비율이 44.3%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설립유형별, 지역별로 편차가 매우 크다.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 유치원은 반일제가 35.8%로 가장 높기는 하나 연장제와 종일제를 기준으로 한다는 비율과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연장제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비율이 61.2%로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설립유형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또한 종일제의 경우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이 34.5%로 사립유치원 2.5%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반일제를 기준으로 하는 비율이 대도시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고,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종일제를 기준으로 하는 유치원 비율이 높았다.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반일제 기준 비율이 대도시 지역에서 45.9%로 중소도시나 농촌보다 높았다. 지역별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III-3-12> 유치원 기본수업료 책정방식(만4세아 기준)

단위: %(개원)

구분	반일제 기준	연장제기준	종일제 기준	계(수)	$\chi^2(df)$
전체	36.0	44.3	19.7	100.0(703)	
유형별					
국공립	35.8	29.7	34.5	100.0(234)	130.2(2)***
사립	36.3	61.2	2.5	100.0(469)	
지역별					
국공립					
대도시	70.4	22.5	7.0	100.0(71)	82.0(4)***
중소도시	59.5	38.1	2.4	100.0(42)	
읍면	18.2	27.3	54.5	100.0(121)	
사립					
대도시	45.9	53.4	.7	100.0(146)	20.9(4)***
중소도시	27.8	68.2	4.0	100.0(151)	
읍면	25.0	69.8	5.2	100.0(12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운영실태 조사」 결과임.

나) 교육비

다음의 <표 III-3-13>은 위의 수업료 책정 방식에 따른 기본수업료 수납액을 제시한 것이다. 반일제 기본수업료는 국공립유치원 31,000원, 사립유치원 209,100원이고, 연장제 기본수업료는 국공립유치원 19,600원, 사립유치원 196,200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일제 기본수업료는 국공립유치원 14,600원, 사립유치원 183,900원으로 세 가지 방식 모두 설립유형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으며, 또한 동일 설립유형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컸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기본수업료에서 특이한 점은 기본수업료가 이용시간 유형별로 일관성 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일제 기준 수업료가 오히려 종일제나 연장제 기본수업료보다도 가장 비싸고, 종일제 기본수업료를 적용한다는 경우에도 연장제 기본수업료보다도 싼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유치원 수업료 적용방식은 물론 가격간에도 개별 유치원간의 편차가 큼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III-3-13> 유치원 기본수업료(만4세아 기준)

단위: 천원(개원)

구분	반일제			연장제			종일제		
	수업료	(수)	F/t	수업료	(수)	F/t	수업료	(수)	F/t
전체									
평균	114.0	(250)		132.7	(365)		24.9	(88)	
표준편차	93.4			89.8			41.7		
최소	6.3			6.3			6.3		
최대	343.0			450.0			230.0		
유형									
국공립	31.0	(97)	-47.3***	19.6	(65)	-66.4***	14.6	(72)	-16.5***
사립	209.1	(153)		196.2	(300)		183.9	(16)	
지역별									
국공립									
대도시	31.8	(50)		31.6	(16)		31.2	(5)	
중소도시	37.1	(25)	19.7***	24.5	(16)	75.4***	30.0	(1)	22.3***
읍면	21.2	(22)		14.4	(33)		13.9	(66)	
사립									
대도시	221.4	(67)		204.6	(78)		215.0	(1)	
중소도시	197.1	(43)	29.2***	195.9	(103)	23.3***	188.5	(6)	3.5
읍면	170.1	(43)		174.2	(120)		159.4	(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운영실태 조사」 결과임.

다음으로는 반일제, 연장제 및 종일제 기준으로 수업료를 받는 경우, 각각 이용 시간 연장에 따른 추가 수업료와 급식비 수납액을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표 III-3-14>는 반일제가 기본 수업제인 유치원의 연장제와 종일제 추가 수업료 및 급식비 추가 수납액을 보여준다. 반일제를 기본으로 하는 유치원 중 연장제 수업료를 추가로 수납하는 비율은 17.4%, 종일제 수업료 수납 비율은 77.2%, 급식비 수납 비율은 100%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비용을 수납하는 유치원을 기준으로 각 비용의 평균 금액을 산출하였다. 연장제 추가 수업료의 경우 국공립유치원은 19,500원, 사립유치원은 50,500원을 수납하고 있으며 종일제 추가 수업료의 경우 국공립유치원은 29,900원, 사립유치원은 70,600원을 수납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사립 간의 금액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급식비 추가 수납액은 국공립유치원 35,400원, 사립유치원 35,800원으로 다른 비용에 비해 그 차이가 비교적 작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유치원 수업료는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반일제를 기준으로 보면 반일제는 209,100원, 연장제는 87,900원이 추가되어 297,000원, 종일제는 108,000원이 추가되어 317,100원이 된다.

<표 III-3-14> 반일제 기준 유치원의 수업료 및 급식비 추가 수납액

단위: 천원(개원)

구분	연장제수업료			종일제수업료			급식비		
	평균	(수)	t/F	평균	(수)	t/F	평균	(수)	t/F
전체									
평균	42.6	(46)		51.8	(203)		35.7	(221)	
표준편차	25.0			32.1			10.2		
최소	10.0			5.0			5.4		
최대	100.0			160.0			65.0		
유형별									
국공립	19.5	(7)	-5.7***	29.9	(65)	12.0***	34.2	(91)	-2.4*
사립	50.5	(39)		70.6	(138)		37.4	(130)	
지역별									
국공립									
대도시	41.7	(3)	30.1**	48.1	(35)	65.7***	35.4	(49)	3.3*
중소도시	13.3	(3)		20.9	(19)		35.8	(23)	
읍면	20.0	(1)		29.9	(11)		30.4	(19)	
사립									
대도시	53.2	(22)	0.9	78.6	(59)	12.4***	40.4	(61)	11.5***
중소도시	44.4	(9)		61.7	(39)		32.3	(39)	
읍면	41.9	(8)		50.2	(40)		30.2	(30)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01$ 을, **는 $p < 0.01$ 을, *는 $p < 0.05$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운영실태 조사」 결과임.

다음으로 연장제를 기본수업료로 책정한 유치원을 보면, 66.4%가 종일제 수업료를 추가로 수납하였고, 급식비를 추가로 수납하는 비율은 87.4%로 나타났다. 추가비용을 수납하는 유치원을 기준으로 각 추가비용을 산출한 결과, 종일제 수업료의 경우 국공립유치원은 23,900원, 사립유치원은 55,700원이었고, 급식비는 국공립유치원 30,500원, 사립유치원 33,900원으로 나타났다. 종일제 추가 수업료 수납액의 설립유형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하였다.

종일제를 기본수업료 책정 기준으로 정한 유치원의 경우를 보면, 전체의 82.3%가 급식비를 추가로 수납하고 있었으며, 수납하고 있는 경우의 평균 금액은 국공립유치원 24,500원, 사립유치원 21,200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표 III-3-15〉 연장제 및 종일제 기준 유치원의 수업료 및 급식비 추가 수납액
단위: 천원(개원)

구분	연장제 기준						종일제 기준		
	종일제 추가	(수)	t/F	급식비	(수)	t/F	급식비	(수)	t/F
전체									
평균	51.3	(291)		32.7	(314)		29.5	(71)	
표준편차	24.0			10.5			13.7		
최소	4.0			5.0			3.3		
최대	130.0			60.0			60.0		
유형별									
국공립	23.9	(22)	-12.4***	30.5	(58)	-2.6*	24.5	(60)	0.4
사립	55.7	(269)		33.9	(256)		31.2	(11)	
지역별									
국공립									
대도시	31.9	(13)		33.1	(16)		34.6	(5)	
중소도시	19.4	(5)	3.8*	35.3	(15)	4.7*	60.0	(1)	3.0
읍면	22.0	(4)		26.4	(27)		29.1	(54)	
사립									
대도시	54.9	(69)		33.8	(67)		30.3	(1)	
중소도시	60.3	(92)	14.2***	34.9	(93)	4.6*	31.2	(5)	2.9
읍면	44.6	(108)		30.8	(96)		33.8	(5)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01$ 을, *는 $p < 0.05$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운영실태 조사」 결과임.

앞에서도 간단하게 언급한 바와 같이 이상과 같은 교육비 체계를 요약하면 모순을 발견하게 된다. 사립유치원은 4세아를 기준으로 반일제 기준시 연장제 수업을 받으려면 총 87,900원을 더 수납하여 총 297,000원이고, 연장제를 기준으로 수업료

를 받을 경우 총 비용은 251,900원이다. 종일제도 종일제를 기준으로 수업료를 받는다는 경우는 급식비를 포함하여 225,100원이지만, 반일반 기준의 유치원은 317,000원, 연장제 기준 유치원의 종일반 수업료는 285,800원이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서도 기술하였듯이 유치원간의 개별 격차가 큰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전통적인 유치원이 반일제로 출발하였음을 감안한다면 이 비용을 기준으로 추가 비용을 받는 시설과 주변 보육시설 등 타 시설과의 환경에 의하여 연장제, 종일제 비용을 기준으로 수용한 시설들과의 격차가 벌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민간어린이집 만4세아 종일제 보육시설 평균 비용이 211,600원으로 종일제 유치원 비용과 유사한 수준임이 이를 반증한다고 하겠다.

다) 기타 비용

다음으로 <표 III-3-16>은 유치원 기본수업료 외 월 평균 기타비용 수납액을 조사한 것이다.

<표 III-3-16> 유치원 기본수업료 외 기타비용 수납액(만4세아 기준)

단위: 천원(개원)

구분	현장체험학습비			차량비			특별활동비		
	평균	(수)	t/F	평균	(수)	t/F	평균	(수)	t/F
전체									
평균	13.9	(224)		14.9	(102)		32.0	(78)	
표준편차	10.9			10.2			32.7		
최소	0.5			0.6			20.0		
최대	55.0			70.0			240.0		
유형별									
국공립	10.0	(96)	-6.3**	8.0	(28)	-8.1***	9.5	(4)	-1.8**
사립	19.7	(128)		19.8	(74)		35.0	(74)	
지역별									
국공립									
대도시	8.7	(48)	6.3**	6.4	(11)	1.3	8.0	(2)	0.03
중소도시	12.5	(24)		7.8	(9)		10.0	(1)	
읍면	77.6	(24)		9.2	(8)		10.0	(1)	
사립									
대도시	18.7	(44)	3.3*	21.5	(42)	2.0	35.7	(10)	0.9
중소도시	22.6	(40)		15.3	(16)		38.0	(24)	
읍면	15.1	(44)		17.3	(16)		28.3	(40)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01$ 을, **는 $p < 0.01$ 을, *는 $p < 0.05$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운영실태 조사」 결과임.

먼저 현장체험학습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중 32.2% 유치원에서 현장체험학습비 조사에 응답하였는데, 월 평균 수납 금액은 13,900원이었다. 국공립유치원이 10,000원, 사립유치원 19,700원으로 사립유치원이 더 많은 금액을 수납하고 있었고,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대도시, 읍면지역 순으로 많은 금액을 수납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차량비 수납액을 보면, 전체 조사 대상 유치원의 15.1% 유치원에서 응답하였는데, 차량비를 별도 수납액은 사립유치원의 수납액이 19,800원으로 국공립유치원 수납액 8,000원에 비하여 더 많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설립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국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읍면지역 유치원의 수납액이 가장 컸고,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대도시 유치원의 수납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별활동비는 국공립유치원의 1.5%, 사립유치원의 12.6%가 특별활동비 수납액 조사에 응하여서 전체적으로는 6.6%정도만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비용은 국공립유치원에서는 평균 9,500원, 사립유치원에서는 평균 35,000원을 수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에서 이러한 추가 비용을 모두 추가로 받을 경우에 부모는 74,500원의 비용을 또 부담하여야 한다.

라) 정부지원단가와 교육비 차액여부 및 처리

다음으로, <표 III-3-17>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저소득층 무상교육비 금액과 유치원교육비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국공립유치원의 79.9%가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19.1%만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80.1%는 차액이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유치원이 19.1%라는 것은 이들 시설의 부모부담 기준 비용이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료와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하여, 유치원간에 편차가 큼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 부모로부터 수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14.2%인 것에 비해, 사립유치원은 76.9%로 나타나 설립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의 유치원에서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차액 수납 비율은 차액이 발생한 유치원만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국공립유치원의 약 74%, 사립유치원의 96%가 그 차액을 부모로부터 수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3-17〉 저소득층 무상교육비 지원금과 유치원교육비의 차액 처리 방법

단위: %(개원)

구분	차이 없음	안 받음	정부 등이 보전	부모로부터 수납	대상자 없음 등 기타	계	$\chi^2(df)$
전체	51.8	3.4	0.7	43.2	0.9	100.0(704)	
유형별							
국공립	79.9	4.7	0.3	14.2	0.8	100.0(235)	290.9(4)***
사립	19.1	1.8	1.2	76.9	0.9	100.0(469)	
지역별							
국공립							
대도시	74.6	-	1.4	22.5	1.4	100.0(71)	28.1(8)***
중소도시	61.9	11.9	-	23.8	2.4	100.0(42)	
읍면	89.3	2.5	-	8.2	-	100.0(122)	
사립							
대도시	13.7	0.7	2.1	81.5	2.1	100.0(146)	45.7(8)***
중소도시	18.5	2.6	-	78.8	-	100.0(151)	
읍면	39.5	4.1	1.7	54.1	0.6	100.0(12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운영실태 조사」 결과임.

2) 부모부담 교육비

〈표 III-3-18〉은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 조사 결과로, 유아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고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가 부담하는 수업료와 유아교육비 미지원 아동이 월 납부하는 수업료와 추가비용을 합산한 총 유아교육비를 제시한 것이다. 이용시간을 함께 조사하지 않았으나, 사립유치원은 총 비용이 평균 324,000원이었다.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표 III-3-18〉 유아교육비 미지원 아동의 유치원 설립유형별 월 수업료

단위: 천원(명)

구분	월 수업료			월 수업료 + 추가비용				
	국공립		t	국공립		사립		t
	교육비 (수)	교육비 (수)		총 교육비 (수)	총 교육비 (수)			
전체	126.0 (57)	224.4 (393)		263.2 (56)	324.0 (328)			
만3세	169.2 (6)	207.4 (80)	-1.0	263.2 (5)	343.1 (64)	-1.2		
만4세	120.7 (15)	239.4 (151)	-3.2**	264.0 (15)	348.5 (127)	-1.7		
만5세	121.0 (36)	218.8 (162)	-3.8***	189.1 (36)	335.6 (137)	-4.1***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01$ 을, **는 $p<0.01$ 을 의미함.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07).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대국민 만족도 조사」 원자료.

4. 논의 및 정책시사점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시간과 비용에 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가 되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들의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시간이 다양하므로 비용 역시 이러한 다양한 현실은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시간은 3시간부터 12시간 이상까지 넓게 분포한다. 이는 그 만큼 부모들의 요구가 다양함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반일제에 뿌리는 둔 유치원은 오늘날 기본 운영 유형이 연장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사립 유치원의 64.2%를 차지하고 국공립유치원은 반일제가 기준인 비율이 41.3%로 다수이다. 보육시설의 경우 운영 유형을 보면 12시간 종일제로만 운영하는 시설은 23.0%이고 그 이외 77%의 시설들이 단축형 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의 유형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오후 2~3시경에 귀가하는 아동과 12시간 종일제의 병행 운영으로, 조사된 시설의 43.2%가 이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의 경우 단가가 종일제로 획일화되어 있다. 오후 2~3시에 귀가하는 단축형 I 유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로는 24.1%가 보육료 지원이 종일제 기준이기 때문으로 응답하였고, 13.9%가 영유아보육법으로 보육시설 운영이 종일제로 명시되었기 때문으로 응답하여 경직된 제도가 주요 이유임을 나타냈다. 단지 2.4%는 프로그램 운영 등 시설 운영상의 애로 때문에 이러한 시간 적용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보육정책이 그 동안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표방하였으나 아직도 공급자 위주로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둘째, 보육료와 교육비 표준 비용을 다양성과 현실에 맞게 재산정하여야 한다. 이용시간에 따라 비용이 차등 산정되어야 한다. 3~4시간, 5~6시간 연장제, 8시간, 12시간 등 이용에 관계없이 모두 보육시설 종일제 단가를 단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지원 단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 특히 표준비용 산정시, 교사의 근로기준법 준수 등 근무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보육교사의 근무 실태를 보면 31.9%가 평일 보육교사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고 응답하였고, 교사의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3.1%만이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고 22.5%는 대체로 지급한다고 하였다. 즉, 41.5%의 시설에서는 8시간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 하면서도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치원교사의 경우도 8시간 근로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국공립유치원의 19.8%와 사립유치원의 45.8%가 8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제 운영시간은 사립유치원이 9시간 54분으로 8시간을 훨씬 넘어선다. 그러나 초과근로가 발생할 경우 약 50%의 국공립유치원과 약 85%의 사립유치원은 교사의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지원단가 산정시 교사의 실제 근무여건이나 처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결과이므로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종일제를 실시할 경우 담당교사 별도 채용을 위한 비용도 지원단가 산정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원단가도 현실을 반영하여야 한다. 유치원의 경우 현재 4세 이상아의 기준 유아교육비 지원 금액은 167,000원이다. 이에 비해 본 연구를 위한 조사 결과 4세아 기준 반일제 기본수업료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209,130원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급식비도 포함할 경우 총 금액은 246,573원이었다. 이와 같이 지원단가가 총 교육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종일제 기준 보육료 지원단가를 유치원 지원단가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며, 이로 인해 정부의 지원단가와 실제 수업료의 차액은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욱이 연장제나 종일제 이용 시에는 그 이상의 비용을 추가로 부모가 지불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일제 기준시 연장제 수업을 받으려면 사립유치원은 수업료 48,900원과 급식비 35,900원의 총 84,400원을 더 지불하여야 하며 종일제는 115,000원이 추가되어야 한다. 보육의 경우도 영아는 기보보조금으로 지원 단가와 보육료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으나 유아는 실제 민간어린이집 보육료와 정부 지원단가의 괴리가 매우 크다.

넷째,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소재지역의 규모에 따른 보육료, 교육비 차등 지원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본 보육시설과 유치원 운영실태 조사 결과에서 유치원 운영시간, 종일반 담당교사 별도 채용 여부, 이용시간 유형별 재원 아동 비율, 수업료 책정 방식 및 수업료 등은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물가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이는 모두 지원단가 산정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인들이므로 지역규모를 기준으로 한 교육비 차등 적용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IV. 이용시간 유형과 유형별 적정 비용

제4장에서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기관 이용시간과 비용을 차등화하는 정책대안을 검토하였다. 먼저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고, 이어서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이용시간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각 유형별 아동 1인당 비용을 추정하고, 교사 추가 배치 시 소요되어야 하는 비용은 추정하였다.

1. 기본 고려사항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기관 이용시간과 이용시간 유형별로 보육료와 교육비를 차등화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검토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부모의 다양한 이용시간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부모들의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시간은 다양하다. 우선, 다수의 취업모들은 정규 운영시간 이외에도 그 전후로 추가 시간 이용을 희망하며, 이들의 근로형태의 다양화와 더불어 이용시간 또한 다양한 형태를 나타낸다. 만3세 이상의 유아는 물론 영아 자녀가 있는 미취업모의 기관 이용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 영아의 경우 이용시간³²⁾이 5시간 미만인 아동 비율이 1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육비용 적용 시간유형은 한 가지로 획일화되어 있다. 따라서 기관 이용시간 유형을 다양화하여 부모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이에 부합하는 비용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의 근무환경이 반영되어야 한다.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사 근무환경 개선의 우선순위는 낮았다. 하루 10시간 이상 보육시설에 머물고 점심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은 30분에 불과하다. 특히 민간시설 교사는 호봉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월 급여는 평균 100만원 수준에 머문다. 보육사업안내로 8시간 근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아침 또는 저녁 당번제도를 두지 않으면 기관을 운영하기 어렵다. 교사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그

32) 여기서 이용시간은 등원과 귀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실제 기관 이용시간은 이보다 훨씬 짧은 것으로 추정됨.

이외의 근로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

셋째,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운영의 재정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근로의 특성은 종일제 근로가 근간을 이루고 단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매우 낮다. 보육시설의 경우 일부 보육시설에서 단시간제 교사를 채용하기도 하지만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유치원은 보육시설과는 달리, 전통적으로 반일제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일제를 운영할 경우 교사의 추가 배치가 당연시되고 있다. 정부는 종일제 국공립유치원에 대해서 종일제 교사를 정규교사로 배치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사립유치원은 종일제 운영시 반일제 교사를 채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용시간 유형별로 비용을 차등화 할 경우에 시간제 교사 채용은 교사 처우나 위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넷째, 정부 재정 소요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특히 비용에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 요인을 반영할 경우 부모와 국가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모와 국가의 부담 능력을 고려한 정책적 선택을 필요로 한다.

2. 보육시설 이용시간 유형과 유형별 적정 비용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앞에서 제시한 네 가지 기본원칙 중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요인은 이용시간 유형과 교사에 대한 처우 방법이다. 이 두 가지 요인은 보육비용을 산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이 두 가지 요인을 먼저 고려한다.

먼저 이용시간 유형은, 정책적으로 부모들의 다양한 이용시간 요구를 제도로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보육시설과 유치원 운영 및 이용 현황을 반영하여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가. 이용시간 유형 검토

1) 이용시간

먼저 보육시설 이용시간은 기존의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감안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오전 3시간의 보육·교육 활동, 점심식사, 점심식사 이후 1시간 정도의 놀

이 활동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오후 2시 30분 전후에 귀가하는 유형이다.

두 번째는 8시간 종일제로 오후 5시 전후에 귀가하는 유형이다.

세 번째는 오후 7시 30분 정도까지 이용하는 유형이다.

이 세 가지 유형을 각각 시간단축형, 8시간 종일제, 12시간 종일제로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보육시설의 운영과는 별개로 영아에 한하여 오전 12시경에 귀가하는 3시간 단시간형 보육을 고려하였다.

2) 교사의 근무

교사의 근무는 평일 8시간 근무 원칙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기본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규정하고, 이후 최대 8시까지를 기본 유형의 12시간형 보육을 위한 근무시간으로 설정하였다. 8시간 이후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교사의 연장 근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거나, 추가로 교사를 배치하는 방법을 고려하였다. 현재 보육시설에서는 8시간 초과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보육 현실을 반영하여 보육시설에서 최소한 교사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단시간제 정규 교사로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 종일제 정규 교사로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 등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한편 영아 3시간 보육은 종일제 교사와 단시간제 교사의 두 가지 형태를 검토하였다.

3) 교사대 아동 비율

다음으로 교사대 아동 비율은 보육시설의 경우 오후 2시 30분 전후에 귀가하는 보육유형과 기본적인 8시간형 종일제 유형의 교사대 아동 비율은 현재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는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할 위하여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또한 실제로 시간단축형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반을 오전부터 별도로 구성하기도 어렵다. 8시간 이후 12시간 종일제 보육 시에는 반의 구성이나 교사대 아동비율에서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영아와 만4, 5세 유아는 오전의 교사대 아동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만3세 유아가 만4, 5세 유아와의 혼합반 가능성이 높음은 감안하여 1:20으로 조정하였다.

〈표 IV-2-1〉 비용 산출에 적용한 보육시설 이용시간 유형별 교사배치와
교사 1인당 아동수

이용시간	교사근무유형	교사대 아동비율
시간단축형	- 종일제	영유아보육법 적용
8시간 종일제	- 종일제	영유아보육법 적용
12시간 종일제	- 종일제 교사+연장근무 - 종일제 교사+단시간제 교사 - 종일제 교사+종일제 교사	8시간: 영유아보육법 적용 8시간 이후: 3세아만 1:20
0세아 반일제	- 종일제 교사 - 단시간제 교사	영유아보육법 적용

나. 아동 1인당 보육 비용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정에 따라 기준이 되는 연령별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을 산출하고자 하였다. 인건비는 2008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새로 산출하였고, 이외 교재 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는 가장 최근에 산출된 조세연구원 연구 등 기존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2차 작업으로 산출하였다.

시설 규모는 20인 미만 시설, 50인 시설, 97인 시설로 구분하여 보육단가를 산출하였다.

1) 8시간 종일제 보육비용

가) 추정 방법

먼저 8시간 종일제 보육단가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1) 인건비

첫째, 인건비 산출은 시설 규모에 따라 다른 인력 배치기준을 적용하였다. 20인 시설에는 영유아보육법으로는 시설장이 교사를 겸임할 수 있고 취사부를 배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취사부는 두지 않고 교사 1인과 시설장 1인을 두는 것으로 단가에 반영하였다.³³⁾ 50인 시설과 97인시설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설장과

33) 가정보육시설에도 취사부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2007년 말 보육통계에 따르면 가정보육시설은 44,167개소인데, 취사부 수는 총 538명으로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정보육시설이 취사부를 두지 않고 있어서 이를 반영하였음.

교사 이외에 취사부를 두는 것으로 하였다.

인건비의 경우, 교사와 시설장의 기준 호봉은 2004년 보육시설 실태조사 결과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설정하였다. 동 조사에서 교사의 평균 총 근무연수가 국공립시설 8년 6개월, 민간시설 5년 2개월, 가정시설 4년임을 고려하여 보육교사 6호봉으로 설정하고 보육사업안내에 제시된 급여표를 적용하였다. 동 조사에서 시설장 경력은 민간시설의 경우 평균 7년 8개월, 가정보육시설은 원장은 6년으로 조사되었다. 교사가 시설장이 되기까지 민간보육시설 시설장은 2급 자격취득 후 최소한 5년이 소요되고, 가정보육시설 시설장은 2급 교사 이후 최소한 2년이 소요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호봉 산정시 경력이 인정되므로 조사 자료를 적용하여 민간보육시설의 시설장 급여는 13호봉으로 설정하였다. 가정보육시설은 시설장이 교사를 겸직하므로 교사 1인에게 시설장 9호봉 급여를 기준으로 하고 교사와 시설장 급여 차액을 보육 아동 전체에 분산하였다. 취사부에게는 3호봉을 적용하였다.

교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하였다. 제1안은 점심식사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제2안은 점심시간에 교사의 아동 급식 지원을 근무의 연장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보육교사의 점심시간에 해당되는 시간을 시간외 수당으로 환산하여 인건비의 9.58%를 추가하였다. 52주 동안 주당 5시간을 포함하면 월 평균 21.7시간이 추가되어야 하고, 이는 월 평균 근로시간인 226시간의 9.58%가 된다.

다음으로 4대보험료와 퇴직적립금의 사용자 부담금을 고려하였다. 4대보험료는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공동으로 1/2씩 부담하여야 하고 퇴직적립금은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4대보험료의 사용자 부담금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2.54%,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각각 0.7%로 모두 8.44%이다. 여기에 퇴직금 부담금은 월 급여의 8.33%이다. 즉, 월급여 기준으로 16.77%가 추가된다.

(2) 인건비 이외

인건비 이외,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는 조세연구원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수정·보완하고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먼저, 급간식비는 조세연구원이 산출한 단가를 기준으로 조정하였다. 0세아의 경우 산출 단가의 1/2로 조정하였다.³⁴⁾ 0세아는 대부분이 분유나 이유식을 집에서 가지고 등원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였다. 한편 만2세 이상아의 급간식비는 규모의

34) 이는 2005년 여성가족부가 삭감한 바와 동일함.

경제를 고려하여 15%를 하향 조정하였다.

둘째, 교재교구비 역시 조세연구원이 산출한 단가에서 유아는 현장학습비와 실험실습비를 제외하였다. 보육시설은 현장학습비를 별도로 받고 있다. 시·도와 시·군·구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하여 현장학습비 수납 지침을 제시하는데, 대체로 월 1회, 10,000원을 책정한다. 또한 실험실습비는 보육시설에서는 적용하고 있지 않은 비목이므로 삭제하였다.

셋째, 관리운영비의 경우, 조세연구원에서는 교사대 아동 비율을 적용하여 가중치를 주는 방법으로 연령별 관리운영비를 차등 책정하였다. 그 결과 97인 시설의 0세아는 9만원으로 유아에 비하여 교사대 아동 비율 차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교사대 아동 비율에 따른 관리운영비 가중치 부여의 합리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조정하고자 하였다. 정부의 보육단가 산정이나 기존의 연구(변용찬 외, 2002; 삼성복지재단, 2000)들은 모두 보육시설 이용 아동 전원에게 균등 분할하여 책정하였고, 일본의 보육단가도 균등 분할 방식을 사용하였으므로(全國保育團體連絡會·保育研究所, 2008a),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였다.

넷째, 시설설치비는 조세연구원의 산출한 결과를 수용하였다. 현재 보육시설 설치자의 토지와 건축비 투자 환수는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 그러나 민간, 가정 보육시설의 경우 재무회계규칙에서 기타 운영비를 10%까지 인정³⁵⁾하고 있어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였다.

다섯째, 차량운행비는 현재 실제로 차량은 운행하지 않는 보육시설은 민간보육시설 7.3%, 가정보육시설 41.4%이다. 농어촌에는 차량운행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비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나) 아동 1인당 보육비용

위와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산출한 방안의 연령별 시설규모별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은 <표 IV-2-2>와 같다.

제1안은 현재 정부가 채택한 단가 산정 방식에 반영된 항목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는 50인 시설은 0세아 734,500원, 만1세아 528,300원, 만2세아 427,400원, 만3세아 297,000원, 만4세 이상아 282,500원이고, 97인 시설의 보육비용은 50인 시설 비용보다 다소 낮다. 0세아 695,400원, 만1세아 489,200원, 만2세아 388,200원, 만3세아 258,900원, 만4세 이상아 243,400원이다. 한편 20인 미만 시설 영아 보육비용은 내역은 다르

35) 2008년부터 재무회계규칙에서 기타 운영비를 10%까지 인정함. 그 전에는 4%를 적용하였음.

지만 총액은 97인 시설에 근접한다.

제2안은 휴게시간 하루 1시간을 시간외 근로로 인정한 것인데,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한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을 보면 50인 보육시설은 0세아 777,900원, 만1세아 552,800원, 만2세아 443,800원, 만3세아 302,600원, 만4세 이상아 285,700원이고, 97인 시설은 0세아 740,600원, 만1세아 515,500원, 만2세아 406,500원, 만3세아 265,300원, 만4세 이상아 248,400원이다. 20인 미만 소규모 보육시설은 97인 보육시설보다 약간 높게 산출되었다(표 IV-2-2 참조).

〈표 IV-2-2〉 종일제 보육비용(2008)

단위: 천원

구분	50인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이상아
50인 민간개인					
인건비(1안)	656.8	426.4	327.7	196.0	167.2
인건비(2안)	700.2	450.9	344.1	201.6	170.4
급식비	16.8	41.0	41.0	40.1	53.3
교재교구비	16.8	16.8	14.6	16.8	17.9
관리운영비	31.9	31.9	31.9	31.9	31.9
시설설치비	12.2	12.2	12.2	12.2	12.2
계(1안)	734.5	528.3	427.4	297.0	282.5
계(2안)	777.9	552.8	443.8	302.6	285.7
97인 민간개인					
인건비(1안)	617.7	387.3	288.5	156.9	128.1
인건비(2안)	662.9	413.6	306.8	164.3	133.1
급식비	16.8	41.0	41.0	40.1	53.3
교재교구비	16.8	16.8	14.6	16.8	17.9
관리운영비	31.4	31.4	31.4	31.4	31.4
시설설치비	12.7	12.7	12.7	12.7	12.7
계(1안)	695.4	489.2	388.2	257.9	243.4
계(2안)	740.6	515.5	406.5	265.3	248.4
가정					
인건비(1안)	610.0	379.6	280.8		
인건비(2안)	657.2	407.9	301.1		
급식비	16.8	41.0	41.0		
교재교구비	16.7	16.7	16.7		
관리운영비	43.5	43.5	43.5		
시설설치비	12.8	12.8	12.8		
계(1안)	699.8	493.6	394.8		
계(2안)	747.0	521.9	415.1		

2) 시간단축형 보육비용

가) 추정 방법

시간단축형 보육비용은 앞에서 산출한 8시간 종일제 보육단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첫째, 인건비, 시설설치비는 8시간 종일제 비용의 100%를 모두 인정하였다. 보육아동이 아침 9시부터 보육 받고 오후 2시 30분경에 귀가한다고 하여도 종일제 교사, 시설장, 취사부 등이 있어야 하므로 인건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시설설치비도 마찬가지이다.

<표 IV-2-3> 급식단가 산출 예(100인 기준)

단위: 원, g

요일	음식명	재료명	중량	중품		상품	
				비용	비율	비용	비율
오전간식	오렌지잼쿠키	쿠키(ea)	200	11,667	8.6	11,667	7.7
	우유	우유	10,000	15,000	11.1	15,000	9.9
점심	해시라이스	보리	500	590	0.4	590	0.4
		쌀	6,000	12,503	9.2	12,930	8.5
		감자	3,000	4,463	3.3	5,289	3.5
		당근	1,000	730	0.5	924	0.6
		양배추	1,000	494	0.4	659	0.4
		양파	1,000	473	0.3	552	0.4
		쇠고기	2,000	60,280	44.5	72,844	48.1
		해시가루	2,000	8,000	5.9	8,000	5.3
		마늘	100	230	0.2	251	0.2
		식용유	300	500	0.4	675	0.4
	배추김치	배추김치	3,000	1,101	0.8	1,371	0.9
오후간식	딸기	딸기(ea)	1,000	4,316	3.2	5,687	3.8
	우유	우유	10,000	15,000	11.1	15,000	9.9
계				135,347	100.0	151,439	100.0

자료: 박기백 외(2005).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여성부·조세연구원.

둘째, 급간식비는 8시간 종일제 급간식비에서 두 가지 요인을 적용하여 하향 조정하였다. 시간단축형 보육의 경우 오후 간식이 제외되는데, 전체 급간식비에서 오후 간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표 IV-2-3> 등 급간식비의 사례에 근거하여 약 15%로 추정하여 제외하였고, 토요일에는 등원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14%를 삭감하였다.

셋째, 시간단축형의 경우 8시간 종일제에 비하여 2시간 30분 먼저 귀가하므로,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의 보육활동을 고려하여 소요되는 교재교구비의 차이를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은 <표 IV-2-4>의 보육프로그램 일과운영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실내 자유선택활동, 정리정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는 않는다. 추가되는 실내 자유 선택활동에 소요되는 교재교구비는 오전활동에 필요한 교재교구이지 이 시간을 위하여 별도로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시간단축형 보육의 교재교구비는 8시간 종일제 비용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표 IV-2-4> 5세 보육프로그램 일과운영의 예

시간	주요 일과	주요 활동 내용	
~09:00	등원 및 맞이하기	· 유아 맞이하기, 부모와 간단한 대화 나누기 ·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 노래 듣기	
09:00~10:30	실내 자유선택활동	· 쌀기	· 거북선과 학익진 구성하기
		· 역할	· 우리나라를 빛낸 사람들 옷 발표회
		· 미술	· 금속활자 만들기
		· 언어	· 우리나라를 빛낸 사람 사진 만들기
		· 수·조작	· 우리나라를 빛낸 사람 짝 맞추기
		· 과학	· 지폐속의 우리나라를 빛낸 사람들 찾기
	· 음률	· 세계무대에 선 우리나라의 음악가: 조수미가 들려주는 우리 가곡	
10:30~10:45	정리정돈 및 전이활동	· 내가 닦고 싶은 우리나라를 빛낸 사람 소개하기	
10:45~11:10	이야기 나누기	<우리나라를 빛낸 사람들> · 내가 좋아하는 우리나라를 빛낸 사람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11:10~11:30	간식 및 휴식	간식 및 휴식	
11:30~12:00	신체 표현	<몸으로 만든 한글> · 한글 자음, 모음, 단어 등을 몸으로 만들어 보기	
12:00~13:30	점심 및 이 닦기	· 손 씻기 · 점심 먹기 · 이 닦기	
13:30~14:30	휴식 및 낮잠	· 날씨, 계절, 어린이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휴식 또는 낮잠 자기	
14:30~16:30	실내 자유선택활동 및 오후 간식	· 오전 활동을 연계하거나 확장하는 놀이하기 · 간식 먹기	
16:30~16:50	정리정돈 및 화장실 가기	· 정리 정돈하고 화장실 다녀오기	
16:50~18:00	실내외 자유선택활동	· 오전 활동의 심화 활동, 특별히 계획된 프로젝트 하기 · 하루 일과 평가하기	
18:00~	통합 보육 및 귀가	· 통합 보육 공간에서 조용한 놀이를 하면서 부모님이 오시는 대로 귀가하기	

자료: 문미옥 외(2007). 보육프로그램 개발 제7권 「5세 보육프로그램」. 여성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넷째, 관리운영비 또한 종일제 비용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시간단축형 적용시 종일제에 비하여 아동이 2시간 30분 먼저 귀가하므로,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의 보육활동을 감안하면 난방비나 전기세 등에 다소의 감소요인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종일제 비용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나) 아동 1인당 보육비용

위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추정된 보육비용을 <표 IV-2-5>에 제시하였다.

<표 IV-2-5> 시간단축형 보육비용(2008)

단위: 천원

구분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이상아
50인 어린이집					
인건비(1안)	656.8	426.4	327.7	196.0	167.2
인건비(2안)	700.2	450.9	344.1	201.6	170.4
급식비	16.8	30.0	30.0	30.0	39.0
교재 교구비	16.8	16.8	14.6	16.8	17.9
관리운영비	31.9	31.9	31.9	31.9	31.9
시설설치비	12.2	12.2	12.2	12.2	12.2
계(1안)	734.5	517.3	416.4	286.9	268.2
계(2안)	777.9	541.8	432.8	292.5	271.4
97인 어린이집					
인건비(1안)	617.7	387.3	288.5	156.9	128.1
인건비(2안)	662.9	413.6	306.8	164.3	133.1
급식비	16.8	31.0	31.0	30.1	39.0
교재 교구비	16.8	16.8	14.6	16.8	17.9
관리운영비	31.4	31.4	31.4	31.4	31.4
시설설치비	12.7	12.7	12.7	12.7	12.7
계(1안)	695.4	479.2	378.2	247.9	229.1
계(2안)	740.6	505.5	396.5	255.3	234.1
가정어린이집					
인건비(1안)	610.0	379.6	280.8		
인건비(2안)	657.2	407.9	301.1		
급식비	16.8	30.0	30.0		
교재 교구비	16.7	16.7	16.7		
관리운영비	43.5	43.5	43.5		
시설설치비	12.8	12.8	12.8		
계(1안)	699.8	482.6	383.8		
계(2안)	747.0	510.9	404.1		

제1안은 50인 시설의 경우 0세아 734,500원, 만1세아 517,300원, 만2세아 416,400원, 만3세아 286,900원, 만4세 이상아 268,200원이고, 97인 시설은 50인 시설보다 0세아는 약 50,000원, 만4세 이상아는 27,000원 정도가 낮다. 가정보육시설 이용 아동 1인당 비용은 97인 시설 비용에 근접하여 0세아 699,800원, 만1세아 482,600원, 만2세아 383,800원이다.

교사의 점심시간을 시간외 근무로 인정한 제2안의 아동 1인당 비용은 제1안에 비하여 최고 0세아 43,000원, 최소 만4세 이상아 3,000원의 차이가 있다.

한편 시간단축형 보육비용은 8시간 종일제 보육비용과 비교하여 단지 급식비에서 만 차이가 나므로 사실상 차이는 최대가 만4세 이상아의 경우로 금액은 14,000원 정도이다.

3) 12시간 종일제 보육비용

가) 추정 방법

12시간 종일제 보육비용을 앞에서 산출한 8시간 종일제 보육단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1) 인건비

첫째, 인건비 산출에서 추가 교사 인건비는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인건비 적용 대상은 보육교사 인건비만을 반영하였고, 시설장 인건비³⁶⁾는 제외하였다.

교사 인건비 산출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방안을 적용하였다. 첫째는 오전에 근무한 교사의 시간 연장근무의 형태로 인건비를 산출하는 방안, 둘째는 시간제 정규 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 세 번째는 종일제 정규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이다.

다음으로는 교사대 아동 비율의 조정 가능성이다. 실제로 많은 보육시설에서 아동이 비교적 늦게까지 남아 있는 경우에 연령별 반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연령통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이때 교사 대비 아동수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이를 반드시 교사대 아동 비율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수의 아동 때문에 교사를 배치하여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따라서 교사대 아동비율은 3세에 한하여 4~5세와 같이 1:20으로 조정하였다.

36) 보육시설이 운영되는 동안 시설장은 근무하여야 함.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장이 대표자로 운영자이고 피고용인이 아니므로 제외하였음.

(2) 인건비 이외

첫째, 급간식비는 8시간 종일제 비용과 동일하게 하였다. 일부 보육시설에서는 저녁식사를 제공하기도 하나, 이는 별도로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둘째, 교재교구비는 5% 정도 추가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앞의 일과운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실내외 자유선택활동으로 오전 활동의 심화 활동, 특별히 계획된 프로젝트 하기, 일과 평가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교재교구비의 추가 요인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셋째, 관리운영비는 저녁식사 준비 등을 감안하여 가스비나 전기료, 난방비에서 추가 요인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비용이 관리운영비에 차지하는 비율은 삼성복지재단에서 추정한 관리운영비 구성항목별 비용 자료를 보면 33.6%로 추정된다.³⁷⁾ 따라서 8시간 대비 평균 2시간 30분을 더 보육한다고 했을 때 5/16이 추가 소요된다. 그러므로 전체 관리운영비 증가요인은 33.6%의 5/16인 약 10%이다.

넷째, 시설설치비는 8시간 종일제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표 IV-2-6〉 관리운영비 산출 예: 3세 이상아 최저 보육비(100인)

단위: 원, %

요일	항목	금액	비율
난방연료비		920,168	14.0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우편료	25,920	0.4
	전화료	341,283	5.2
	전기료	950,408	14.4
	수도료	224,642	3.4
	쓰레기봉투	73,411	1.1
	유아종합보험료	174,961	2.7
	기타	90,721	1.4
수용경비	사무용품비, 인쇄비, 도서구입비, 수수료, 수선비, 소모품비, 의료비, 회의비, 행사비, 연수비, 여비	2,574,741	39.1
건물유지비		1,209,911	18.4
계		6,586,166	

자료: 삼성복지재단(2000). 서울특별시 보육시설의 표준보육단가 산출 및 재정지원 제도에 관한 제언.

37) 이 연구는 2000년도 연구이고, 삼성복지재단 어린이집 운영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관리운영비 중 건물관리비 비중이 다소 크기는 하지만 기초 자료로 유용함.

나) 아동 1인당 보육비용

먼저 보육교사는 세 가지 방식으로 추정하였다. 보육교사 근무형태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안은 보육교사의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 형태로 인건비를 산출한 안이다. 교사 호봉은 종일제 근무 교사호봉 보육교사 6호봉을 적용하였다. 2008년 보육교사 6호봉의 시간당 인건비 단가는 6,580원이므로 이에 교사대 아동 비율을 적용하면 아동 1인당 시간당 비용은 0세아 2,183원, 만1세아 1,310원, 만2세아 936원, 만3세 이상아 327원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오전 8시부터 5시까지 종일제로 근무한 보육교사가 8시까지 3시간을 더 근무할 경우에 낮 근무 4.5시간에 해당되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연장근무의 경우에는 4대 보험료나 퇴직적립금이 추가로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추가 부담은 없다. 이는 보육사업 안내가 정하는 바에 따른 것이다.

제2안은 시간제 보육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보육교사의 급여가 단시간제 보육교사 급여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4시간 근로의 시간제 교사를 고용할 경우 보육교사 임금은 일반 교사의 1/2에 해당된다. 추가 배치 보육교사 호봉은 1호봉을 적용하였다.

제3안은 종일제 보육교사를 정규 교사로 추가 배치하는 방안이다. 교사 호봉은 1호봉을 적용하였다.

<표 IV-2-7>은 이러한 세 가지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육료에 추가되어야 하는 인건비 소요액이다.

<표 IV-2-7> 12시간 보육 시 인건비 추가 비용(2008)

단위: 천원

구분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이상아
연장근무수당(시간당)	2.183	1.310	0.936	0.327	0.327
연장근무수당(하루 3시간 월)	213.1	127.9	91.3	32.0	32.0
시간제교사	255.4	153.3	109.5	38.3	38.3
종일제교사	510.8	306.5	218.9	76.6	76.6

비용은 교사 적용 방식별로 차이가 난다. 인건비는 교사 인건비이므로 시설규모 별 차이는 없다. 일반 보육시설은 하루 3시간 8시간의 초과 연장근무를 적용하면 아동 1인당 추가 보육비용은 0세아 213,100원, 만1세아 127,900원, 만2세아 91,300원, 만3세 이상아 32,000원이다. 교사가 돌아가면서 근무할 경우에도 초과수당을 제대로 지급할 경우에 추가비용이다. 하루 종일 근무한 교사가 연장근무 형태로의 근무하는 것은 간헐적 보육시설에는 적절하지만 보육아동이 많고 상시적일 경우에는 교사에게나 시설 운영상 모두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4시간 단시간제 교사를 채용할 경우에는 아동 1인당 추가 보육비용은 0세아 255,400원, 만1세아 153,300원, 만2세아 109,500원, 만3세 이상아 38,300원이다. 이는 낮 시간 근무자 시간외근로 수당을 꾸준히 하루 3시간씩 지급할 때보다 다소 증가된 비용이다. 그러나 그 차이는 크지 않다.

한편 종일제 정규교사 채용시에는 시간제 정규 교사 채용시보다 비용은 두 배로 늘어난다. 0세아는 510,000원 수준이고, 만1세아 300,000원 수준이며, 만2세아 약 219,000원, 만3세 이상아 76,600원이다.

〈표 IV-2-8〉 12시간 종일제 보육비용(2008)

단위: 천원

구분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이상아
50인 어린이집					
인건비(1안 단시간제)	912.2	579.7	437.2	234.3	205.5
인건비(2안 종일제)	1167.6	732.9	546.6	272.6	243.8
급식비	16.8	41.0	41.0	40.1	53.3
교재 교구비	17.6	17.6	15.3	17.6	18.8
관리운영비	35.1	35.1	35.1	35.1	35.1
시설설치비	12.2	12.2	12.2	12.2	12.2
계(1안)	993.9	685.6	540.8	339.3	325.9
계(2안)	1249.3	838.8	650.2	377.6	363.2
97인 어린이집					
인건비(1안 단시간제)	873.1	540.6	398.0	195.2	166.4
인건비(2안 종일제)	1128.5	693.8	507.4	233.5	204.7
급식비	16.8	41.0	41.0	40.1	53.3
교재 교구비	17.6	17.6	15.3	17.6	18.8
관리운영비	34.5	34.5	34.5	34.5	34.5
시설설치비	12.7	12.7	12.7	12.7	12.7
계(1안)	954.8	646.5	501.6	300.2	285.7
계(2안)	1210.2	799.7	611.0	338.5	324.0

(표 계속)

구분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이상아
가정어린이집					
인건비(1안 단시간제)	865.4	532.9	390.3		
인건비(2안 종일제)	1120.8	686.1	499.7		
급식비	16.8	41.0	41.0		
교재교구비	17.5	17.5	17.5		
관리운영비	47.9	47.9	47.9		
시설설치비	12.8	12.8	12.8		
계(1안)	960.4	652.1	509.5		
계(2안)	1215.8	805.3	618.9		

인건비 이외의 교재교구비와 관리운영비는 앞에서 설명한 방식에 근거하여 추정하였다. 금액은 연령별로 4~5천원 수준으로, 인건비에 비하여 실로 미미한 수준이다.

다) 추가 소요비용

12시간 종일제 보육을 할 경우 종일제 교사를 정규교사로 채용하고 보육교사 1호봉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하였다. 인건비 이외의 비용은 미미하므로 여기에서는 인건비 소요비용만을 추정한다.

인건비를 산출하기 위해 먼저 20인 이하 시설과 일반시설을 이용하는 연령별 아동수를 파악하였다. 20인 이하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수는 보육통계에 제시된 가정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를 적용하였다. 21인 이상 일반시설 이용 0~만2세 아동수는 가정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 이외의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수를 적용하였고, 만3~5세 아동수는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를 적용하였다. 여기에 적용한 종일제 이용 아동 규모는 이용 현황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영아 18.0%, 유아 23.0%이었다. 산출한 각각의 아동수에 12시간 종일제 이용비율을 반영하여 12시간 종일제를 이용하는 아동수를 시설규모별, 연령별로 산출하였다. 여기에는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고려된 것은 아니다. 여성의 취업은 앞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정된 이용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산출된 12시간 종일제 이용 아동수는 <표 IV-2-9>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V-2-9〉 12시간 종일제 이용 아동수 추정

단위: 명, %

구분	20인 이하 시설			일반 시설				
	0세아	1세아	2세아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이상아
보육시설 이용아동수 ¹⁾	47,374	53,476	50,455	21,534	69,187	171,803	223,044	381,715
12시간종일제 이용비율	18.0 ²⁾					23.0 ³⁾		
12시간종일제 이용아동수	8,527	9,626	9,082	3,876	12,454	30,925	54,721	88,979

자료: 1) 보건복지가족부(2008). 보육통계.

2) 서문희 외(2007).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조사」 원자료.

3) 육아정책개발센터(2007). 「2007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 평가 조사」 원자료.

위에서 추정한 12시간 종일제 이용 아동수와 앞에서 산출한 <표 IV-2-7>의 종일제 정규교사 인건비 추가비용을 사용하여 12시간 보육시 인건비 총 추가 소요비용을 추정하였다. 단시간 교사를 채용할 경우 연간 약 1953억원, 종일제 교사를 채용할 경우에는 연간 약 3905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표 IV-2-10 참조).

〈표 IV-2-10〉 12시간 보육 시 정규교사 채용 총 추가 소요비용

단위: 억원

구분	전체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이상아
가정어린이집						
단시간 교사	557.8	261.3	177.1	119.3	247.4	408.9
종일제 교사	1115.3	522.7	354.0	238.6	494.7	817.9
민간어린이집						
단시간 교사	1395.3	117.0	223.5	398.5	247.4	408.9
종일제 교사	2790.1	234.0	446.8	796.7	494.7	817.9
전체						
단시간 교사	1953.1	378.3	400.5	517.9	247.4	408.9
종일제 교사	3905.4	756.7	800.8	1035.3	494.7	817.9

주: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보육시설 유형 전체의 연간 교사 인건비를 추계함.

4) 0세아 반일제

가) 추정방법

마지막으로 0, 1세아 반일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0, 1세아 보육을 종일제 이용 취업모에게만 지원하고 미취업모의 0, 1세 아동에게는 하루 3시간의 보육만 지원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보육시설에서

미취업모의 0, 1세아로 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 경우에 보육교사를 4시간 정도의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이러한 가정에서 0, 1세아 보육비용은 앞에서 산출한 8시간 종일제 보육단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첫째, 보육교사 인건비는 4시간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8시간 근로자 인건비의 1/2을 적용한다. 시설장 인건비는 정원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고 취사부도 마찬가지로 아동 규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였다.

둘째, 급간식비는 간식 1회만 제공하고 또한 토요일에는 거의 등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8시간 종일제 급간식비의 약 20% 정도를 적용하였다.

셋째, 반일반 이용 아동은 앞의 <표 IV-2-4> 보육프로그램 일과운영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오전에 대부분의 집단 보육교육활동이 실시되므로 다양하고 충분한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하기는 마찬가지이므로 종일제 아동에 비하여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시간단축형 보육의 교재교구비는 8시간 종일제 비용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넷째, 관리운영비는 난방비나 전기세 등에 감소요인이 발생하므로 종일제 비용의 1/2을 적용하였다.

다섯째, 시설설치비는 아동이 이용시간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종일제와 차별을 두지 않았다.

나) 아동 1인당 보육비용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반일제 0, 1세아의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은 50인 시설을 기준으로 0세아 417,200원, 만1세아 306,800원이다. 20인 시설은 이보다 50,000원 내외 높으며, 97인 규모 보육시설은 50인 보육시설보다 약 40,000원 정도 낮다.

<표 IV-2-11> 0, 1세아 3시간제 보육비용

단위: 천원

구분	20인		50인		97인	
	0세아	1세아	0세아	1세아	0세아	1세아
인건비	408.4	293.2	368.8	253.6	327.7	212.5
급식비	3.4	8.2	3.4	8.2	3.4	8.2
교재교구비	16.7	16.7	16.8	16.8	16.8	16.8
관리운영비	21.8	21.8	16.0	16.0	15.7	15.7
시설설치비	12.8	12.8	12.2	12.2	12.7	12.7
계	463.1	352.7	417.2	306.8	376.3	265.9

3. 유치원 이용시간 유형과 유형별 적정 비용

가. 유치원 이용시간 유형

1) 이용시간

유아교육법 제2를 보면 유치원 운영에서 ‘반일제’는 1일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의 교육과정, ‘시간연장제’는 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교육과정, ‘종일제’는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본 조사에 의하면 유치원의 36% 정도가 반일제를 기준으로 운영하며, 이러한 기준으로 수업료 등 교육비를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아동도 약 23.4%정도가 반일제 이용 아동이고 26.1%가 종일제 이용 아동이다. 유치원의 90%가 종일제로 운영하는 추세라는 현실과 유아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유치원 이용시간 유형을 연장제와 종일제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2) 교사의 근무

교사의 근무는 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평일 8시간 근로 원칙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종일제의 경우 교사를 고용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본 고에서는 유치원 현실을 반영하여 유치원은 종일제 정규교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유아교육법 23조에 의하여 유치원에는 교원 이외에 강사를 둘 수 있다. 강사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유아교육과 관련되는 분야를 전공한 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유아교육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3) 교사대 아동 비율

유치원의 교사대 아동 비율은 일정하지 않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16조에 의하여 유치원의 학급수 및 학급당 원아수는 관할 교육청이 정하므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본 고에서는 연장제의 경우는 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만3세아는 1:15, 만4, 5세아는 1:20으로 하였고, 연장제 이후 시간의 교사대 아동 비율은 만3~5세 모두 1:20으로 조정하였다.

나. 아동 1인당 유아교육 비용

유아교육비용 역시 보육비용과 마찬가지로 인건비는 새로 산출하고 그 이외 비용은 기존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2차 작업으로 추정하였다. 기준단가는 연장제와 종일제 두 가지로 산출하였다. 본 조사결과를 보면 지역별 차이가 있기는 하나, 평균적으로 사립유치원 이용 아동의 59.0%가 연장제 유형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고, 23.4% 정도가 반일제를, 약 26.1%가 종일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규모는 유치원의 학급수 분포를 고려하여 40인 2학급 유치원, 55인 3학급 유치원, 95인 5학급 유치원으로 구분하여 교육비용을 산출하였다.

〈표 IV-3-1〉 사립유치원 학급수 분포

단위: 학급, %

구분	계	1	2	3	4	5	6	7	8	9	10	11이상	휴원
수	3,846	133	435	855	723	537	497	218	163	80	70	66	69
비율	100.0	3.5	11.3	22.2	18.8	14.0	12.9	5.7	4.2	2.1	1.8	1.7	1.8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7년 유치원현황.

1) 연장제 유아교육

가) 추정 방법

유치원 연장제 교육비 추정을 위한 인건비 등 항목별 비용 추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인건비

유치원의 인건비 수준은 보육시설에 적용한 금액과 동일하게 유지하고자 하였다.

인력의 배치는 2학급인 40인 유치원에는 교사 1인을 별도로 두지 않고 원장이 교사를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를 적용하였고, 취사원을 두는 것으로 하였다. 55인 유치원은 원장, 교사, 취사원을 두고 관리원을 두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2007년 유치원 통계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원장은 3,392명으로 3학급 이상 유치원수 3,209개소보다 많아서 3학급 이상 유치원은 원장을 두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반영하였다. 95인 유치원에는 원장, 교사, 취사원, 관리원을 두는 것으로 하였다. 전체

적으로 원감은 사립유치원 3,846개 중 668명으로 약 10%의 유치원에만 배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비용 산출에서는 고려하지 않았고 주임교사도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배치된 인력의 인건비는 유치원교사는 2004년 실태조사 당시 사립유치원 평균 경력이 6.1년, 연봉 1,387만원으로 조사되었음을 감안하여³⁸⁾³⁹⁾ 2년제 대학 졸업 후 6호봉부터 출발하였다고 가정하여 유치원교사 12호봉⁴⁰⁾을 기준으로 하고 특수업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로 산정하였다. 원장은 2004년 사립유치원 원장의 평균 경력이 16.4년이고 대부분이 4년제 대학 졸업자임을 반영하여 유치원교사 26호봉에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원장 수당을 포함하였다. 취사원은 보육시설 취사부 봉급표 3호봉을 적용하였고, 관리원은 월 급여 150만원을 기준으로 책정하였다.

학급당 아동수는 보육시설과 같이 만3세아는 1:15, 만4, 5세아는 1:20을 적용하였다. 사실 유치원 통계를 보면 유치원은 보육시설에 비하여 학급당 아동수가 많다. 2007년 사립유치원 학급규모별 반 통계에 의하면 만3세아는 16~20명이 37.5%로 최빈도이고, 4세는 21~25명과 26~30명이 각각 32.2%, 33.4%로 유사하게 빈도수가 많고, 만5세는 26~30명이 34.1%로 가장 많고 26~30명이 24.3%로 그 다음이다(표 IV-3-2 참조). 그러나 바람직한 유아교육 환경 수준을 지향한다는 관점에서 보육시설과 동일한 아동수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표 IV-3-2〉 사립유치원 원아수별 학급 현황

단위: 학급, %

구분	학급수					비율				
	전체	3세아	4세아	5세아	혼합	전체	3세아	4세아	5세아	혼합
전체	17,214	3,662	5,071	6,668	1,813	100.0	100.0	100.0	100.0	100.0
10명이하	382	206	72		46	2.2	5.6	1.4	-	2.5
11~15명	1,272	667	293	201	111	7.4	18.2	5.8	3.0	6.1
16~20명	3,254	1,372	861	775	246	18.9	37.5	17.0	11.6	13.6
21~25명	4,468	857	1,633	1,538	440	26.0	23.4	32.2	23.1	24.3
26~30명	5,218	431	1,692	2,476	619	30.3	11.8	33.4	37.1	34.1
31~35명	1,950	83	387	1,300	180	11.3	2.3	7.6	19.5	9.9
36~40명	670	46	133	320	171	3.9	1.3	2.6	4.8	9.4

38) 연봉 1387만원으로 조사되었음.

39) 26호봉 봉급표에 의한 봉급은 월 2,221,800원임. 여기에 기본 수당과 사회보장 분담금을 포함하면 3,293,829원임.

40) 12호봉 봉급표에 의한 봉급은 월 1,279,400원임. 여기에 기본 수당과 사회보장 분담금을 포함하면 1,913,989원임.

(2) 인건비 이외 비용

인건비 이외 비용은 기존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먼저, 급간식비는 시간단축형 보육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요인으로 조세연구원 연구결과를 조정하여 추정하였다. 우선 8시간 종일제 기준 비용에 점심식사와 간식 2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오후 간식인 간식비 1회분을 삭감하였다. 간식비 1회분은 보육시설에서와 마찬가지로 급간식비의 15%로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연장제의 경우 토요일에 등원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토요일 급간식비인 총 급간식비의 14%를 삭감하였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유치원은 재료 구입 시 규모의 경제가 있음을 감안하여 15% 하향 조정하였다.

둘째, 교재교구비 중에서 현장학습비와 실험실습비를 제외하고는 종일제 비용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본 조사결과를 보면 유치원 중 32.2%가 현장체험학습비 비용을 수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사립유치원의 수납액은 월 평균 19,700원이었다.

셋째, 관리운영비는 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연령별로 균등하게 조정하고, 종일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대로 모두 적용하였다. 2004년 조세연구원 연구는 55인 유치원을 연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시설의 규모가 비용에 반영되는 시설설치비는 40인과 95인 비용에 기초하여 중간값으로 추정하였다.

끝으로 시설설치비는 기존 유아교육비 산출 선행연구에 비추어 건축비를 포함하여 교육비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나) 아동 1인당 유아교육비용

<표 IV-3-3>은 위와 같이 방법으로 추정한 아동 1인당 유아교육 비용이다. 40인 규모의 소규모 유치원은 만4, 5세 비용이 각각 261,000원, 267,000원 수준이다. 55인 유치원의 경우 만3세와 만4, 5세가 연령별로 각각 299,400원, 280,500원이고, 95인 유치원은 만3세와 만4, 5세가 각각 280,000원, 261,000원이다.

이러한 금액은 본 조사에서 4세아를 기준으로 수업료를 반일제를 기준으로 하고 연장제 수업을 받기 위해서 추가 수업료와 급식비를 총 84,400원을 더 수납하여 총 284,600원을 수납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하면, 55인 유치원의 비용에 가장 근접한다. 그러나 기본수업료 평균 196,200원에 급식비 33,900원을 추가로 받을 시 총액 230,100원을 받는다는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약간 높다.

〈표 IV-3-3〉 연장제 유아교육 비용

단위: 천원

구분	40인		55인			95인		
	4세아	5세이상아	3세아	4세아	5세이상아	3세아	4세아	5세이상아
인건비	162.0	162.0	210.6	178.7	178.7	193.0	161.1	161.1
급식비	39.5	37.5	28.6	38.2	38.2	28.6	38.2	38.2
교재교구비	17.1	20.2	14.6	18.0	18.0	14.6	18.0	18.0
관리운영비	27.1	31.9	31.9	31.9	31.9	31.9	31.9	31.9
시설설치비	15.5	15.5	13.7	13.7	13.7	11.9	11.9	11.9
계	261.2	267.1	299.4	280.5	280.5	280.0	261.1	261.1

2) 종일제 유아교육

가) 추정 방법

유치원 종일제 유아교육비용을 연장제 비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첫째, 교사의 인건비를 종일제 교사를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적용하였다. 보육 시설은 12시간 종일제를 원칙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탄력근무, 당번제라는 방법으로 추가교사 배치 없이 운영되고 있으나, 유치원의 경우는 추가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다. 본 연구에서도 조사 대상 유치원 중 사립유치원의 56.5%가 종일반 교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대도시에서 그 비율이 높다. 종일제 교사 인건비는 사립유치원의 현실을 감안하여 유치원교사 6봉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였다. 앞서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추가 배치 교사의 교사대 아동 비율은 3~5세 동일하게 1:20으로 하였다. 종일제 교사와 마찬가지로 기본수당과 사회보장 분담금을 포함하고 교사대 아동 비율을 반영할 경우 아동 1인당 교사 인건비는 84,770원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외에 인건비 수준을 보육시설에 적용한 금액과 동일하게 유지하고자 하였다. 급간식비는 점심식사와 간식비 2회분으로 하고, 토요일에 등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교재교구비는 앞의 연장제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재교구비 중에서 현장학습비와 실험실습비를 제외하였으며, 관리운영비와 시설설치비는 연장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세연구원 산출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나) 아동 1인당 유아교육비용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추정한 비용은 다음과 같다. 시설 규모에 따라 40인, 55인, 95인 유치원의 경우 만3, 4, 5세의 비용은 각각 379,900원, 364,400원, 361,200원이고,

55인 유치원은 만3, 4, 5세가 각각 397,500원, 382,000원, 379,900원이다. 40인 유치원은 만4와 만5세가 각각 359,600원, 367,500원이다(표 IV-3-4 참조).

이러한 금액은 본 조사에서 만4세아를 기준으로 반일제 기준시 종일제 수업을 받으려면 수업료와 급식비를 합하여 101,500원을 더 수납하여 총 301,700원을 수납한다는 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본 교육비용 추정시 유치원에서 종일제 교사를 추가로 배치함을 전제로 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유치원도 상당수이고, 또한 교사 1인당 아동수도 본 연구에서는 현황보다 낮추어서 적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표 IV-3-4〉 종일제 유아교육 비용

단위: 천원

구분	40인		50인			95인		
	4세아	5세이상아	3세아	4세아	5세이상아	3세아	4세아	5세이상아
인건비	246.8	246.8	295.4	263.5	263.5	277.8	245.9	245.9
급식비	53.1	53.1	40.6	53.1	54.1	40.6	53.1	54.1
교재교구비	17.1	20.2	14.6	18.0	18.0	14.6	18.0	18.0
관리운영비	27.1	31.9	31.9	31.9	31.9	31.9	31.9	31.9
시설설치비	15.5	15.5	15.0	15.5	11.3	15.0	15.5	11.3
계	359.6	367.5	397.5	382	378.8	379.9	364.4	361.2

다) 추가 소요비용

종일제 교사를 추가로 배치하고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6호봉 봉급에 기본수당을 지급하면 총 어느 정도의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되는지 추정하였다. 여기서는 사립 유치원 교사 인건비만을 추정하였다.

2007년도 12월 말 기준 사립유치원 종일제 이용 아동수는 총 191,790명이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수에 연령별 종일제 취원아 비율을 반영하여 연령별 종일제 이용 아동수를 추정하였다. 연령별 취원아 비율은 26.1%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이렇게 추정한 추가 비용 규모는 연간 1951억원이 된다(표 IV-3-5 참조).

〈표 IV-3-5〉 유치원 종일제 교사 채용 총 소요비용

단위: 명(%), 억원

구분	전체	3세아	4세아	5세이상아
취원아 비율	(100.0)	(19.6)	(34.2)	(46.2)
종일제 이용 아동수	191,790	37,550	65,666	88,574
인건비 추가 소요 비용	1951.0	382.0	668.0	901.0

주: 종일제 이용 아동수와 취원아 비율은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7 유치원 현황」의 종일제 운영 통계와 설립별 취원현황 통계의 사립유치원 자료로 각각 추정함.

V. 이용시간 차등 적용을 위한 정책제언

제5장에서는 앞의 제3장과 제4장에서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시간 및 비용 현황과 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유형으로 검토한 몇 가지 대안에 근거하여 보육시설과 유치원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용시간 차등 적용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시간 유형 다양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적용 가능한 유형을 중심으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이용시간 유형 다양화 정책 필요 배경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이용시간 유형을 다양화하여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측면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유치원의 이용시간 다양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아동의 어머니가 취업 중이 아니거나 또는 취업 중이어도 가정에 아이를 돌보아 줄 유휴 인력이 있는 경우에 아동을 보육시설에서 오후 5시까지 보육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률은 5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고 영유아를 둔 여성의 취업률은 이보다 훨씬 낮다. 특히 영아를 둔 어머니의 취업률은 30%대 초반에 머문다. 따라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 미취업모 자녀는 상당수를 차지한다. 물론 어머니가 미취업 상태라고 보육시설 이용을 금할 수는 없다. 핵가족이 보편적 가족형태가 되면서 부모 이외에 가정에서 자녀 양육을 지원할 인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양육부담을 완화시켜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미취업모 또는 취업모이나 가정에 아이를 돌보아 줄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장시간의 보육보다는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비교적 단시간의 보육을 필요로 한다. 특히 출산 수준이 낮아지면서 한 자녀 등 소가족인 경우에 영유아 프로그램의 이용은 자녀의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종일제 중심의 보육제도에는 이러한 미취업모나 가정에 유휴인력이 있는 가정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둘째, 아동 입장에서 종일제 중심의 프로그램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영아기는 부모와의 애착이 형성되어야 하는 주요한 시기이다. 여러 선진 국가에서

는 여성의 노동권과 더불어 부모권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자녀 출산 후 일정 기간은 육아 휴직을 보장하고 있다. 하물며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일 보육시설에 아동을 맡기는 일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시설은 아무리 가정과 같은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여도 가정과는 구별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아동에게 신체적, 심리적 부담을 준다. 영아는 물론 유아도 종일제가 필요한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을 구분하여 선택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제도적으로 단지 책정된 비용이 종일제 기준이므로 종일제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정부 지침 때문에 보육이 필요하지도 않은 시간까지 아동을 보육시설에서 보육하여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정부도 단지 교사의 근로시간을 8시간 반영하였다고 하여 이용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경직된 사고이다. 아동 1인당 소요되는 보육비용은 오후 2~3시 정도에 귀가하는 시간단축형이나 8시간 종일제가 모두 종일제 정규교사를 채용하게 되므로 오후 간식비 이외에는 사실상 비용에는 별 차이가 없다. 조사와 본 연구 모두 만4세아 기준으로 두 유형의 보육료는 15,000원 정도의 차이만을 보였다.

넷째, 교사의 경우도 교사가 근무하는 8시간 내내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려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다. 사실상 법으로 정한 휴게시간도 보장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보육현실이다. 보육교사가 괜찮은 여성의 일자리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급여 수준뿐만 아니라 이러한 근로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근무하는 시간 내내 보육하여야 하는 아동과 함께 있다면 교사는 사실상 휴게시간은 물론이고 내일의 활동을 위하여 준비하며 보육계획안을 작성하고 연구할 시간이 전혀 없게 된다.⁴¹⁾ 뿐만 아니라 돌보는 아동 하나하나의 발달을 고려하여 개개인에게 눈높이에서 적절한 관심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게 되고, 이는 곧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로 이어진다. 따라서 보육시설이 급여 수준과 무관하게 질 좋은 보육교사가 장기간 근속하기 어려운 열악한 조건을 갖게 되는 것이다. 유치원의 경우는 제도적으로는 종일제 교사를 별도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의 지원도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국공립유치원 종일제 정규교사의 규모는 790명 수준에 머물고, 사립 유치원은 약 63% 정도가 종일제 교사를 채용하고 있다.

다섯째, 국가 재정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도 이용시간 유형 다양화가 필요하다. 이는 유아 보육이나 교육보다는 영아 보육에 적용된다. 영아보육은 교사 1인당 아동수가 소수이므로 보육비용은 매우 비싸고, 현재는 영아 1인당 무조건적으로 일정

41) 일반적으로 수업과 수업준비시간 비율은 6:4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음.

한 금액이 지원된다. 즉,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하지 않은 영아 보육에 국가가 국고를 무조건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정부 지원 확대의 여파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여 보육시설을 3, 4시간을 이용하는 영아가 늘고 있고 유아보다 영아의 이용시간이 짧아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은 정부 지원제도의 설계가 세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단시간 이용을 희망하는 영아를 위하여 단시간 유형의 프로그램 마련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2. 이용시간 유형 구분 및 이유

앞의 제4장 이용시간 유형과 유형별 적정 비용에서는 이용시간 유형을 보육시설은 오후 2~3시에 귀가하는 단축형, 8시간 종일제, 12시간 종일제, 그리고 0, 1세아 반일제의 네 가지 유형을 살펴보고, 유치원은 오후 2~3시에 귀가하는 연장제와 종일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그러면 이들 유형을 모두 정책으로 적용할 것인가, 또는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가. 적용 이용시간 유형

결론부터 요약하자면 보육시설과 유치원 모두 만2세 이상 아동은 오후 2~3시에 귀가하는 이용시간 유형과 7시 전후에 귀가하는 유형으로 이원화하고, 보육시설은 0, 1세에 한하여 하루 3시간 정도의 반일반 운영 구성 방안을 제안하자고 한다.⁴²⁾ 따라서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시간유형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보육시설의 경우 종일제만 운영할 수도 있고, 종일제와 유아 단축형 또는 유아단축형과 영아 반일제 등의 다양한 유형의 조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용시간을 두 가지 유형으로만 구분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유아 부모들은 대체로 오후 2~3시에 귀가하고 그 이후는 가정에서 보호자가 집어서 보육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2007년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44.5%의 부모가 경제적 부담이 없다면 이러한 보육 유형을 가장 바람

42)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하기가 어려움. 보육시설은 종일제가 기준이므로 유치원은 연장제가 기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시간단축형과 유치원 연장제가 동일한 시간유형을 나타냄.

직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통적으로 반일제로부터 출발한 유치원의 경우에도 반일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23.4% 수준이다. 영아는 최근에 3~4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단시간 이용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영아보육이 취업모의 전용이었으나, 오늘날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 어려워져 미취업모의 영아보육 요구도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보육시설 이용이 보편화되고, 또한 가정에서 부모 이외에 자녀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프로그램이나 시설 운영상의 효율성과 편의성이다. 본 조사 결과 보육시설 운영 유형을 보면 보육시설은 2~3시 정도에 귀가하는 아동 보육 시간 유형을 수용하는 보육시설이 33.7%이다. 가장 많은 유형이 오후 5시 경에 귀가하는 유형과 7시 정도에 귀가하는 유형의 두 가지 유형을 적용한다는 비율이 43.2%인데, 2~3시 정도에 귀가하는 유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40%의 시설이 영유아보육법이나 보육료 지원 방식에서 시간단축형 이용이나 운영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즉, 부모나 아동들의 요구보다는 운영 중심의 제도의 적용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61.2%가 연장제를 기본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반일제가 퇴조하고 연장제가 주된 시간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나타냈다.

나. 교사의 배치

교사 배치는 8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7시 전후에 귀가하는 아동 보육을 위해서는 인력의 추가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현재 정부는 보육시설에서 야간보육으로 저녁 9시 30분까지 보육하는 아동이 매일 1명 이상일 경우에 야간보육교사를 1인 배치를 지원하고, 그 이외에는 보육교사의 근로시간 탄력 적용과 초과근로 수당을 적용할 뿐, 일반적 교사의 추가 배치는 없다. 즉, 9시 30분 이전까지는 실제로 아동 보육인력이 필요하여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실제로 7시 30분 이후 야간보육을 하면서도 정부의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⁴³⁾ 한편, 유치원은 종일제 운영 시 종일제 교사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⁴⁴⁾

43) 야간보육을 매일 이용하는 아동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야간보육 수요는 일정하지 않고 간헐적이므로 소규모 시설에서는 정부의 지원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44) 유아교육법 시행령 23조에서 종일제 운영 유치원에는 종일제 교육을 담당할 교사 1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배치 기준은 교육청에서 정하도록 하였음.

이러한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교사 배치 기준의 차이는 보육료와 교육비 차이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나아가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근로시간, 급여는 물론 두 직종에 대한 사회적 위상으로까지 제반 근로여건의 차이를 가져온다. 이러한 차이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보육시설에도 보다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유치원과 같은 교사 배치기 기본이 되어야 한다. 대부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하는 국공립보육시설부터 교사를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간제 교사보다는 종일제 정규 교사가 바람직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하겠으나, 제도 진입 단계에서는 제도 도입을 위한 방편으로 단기적으로는 단시간제교사의 배치도 고려할 수 있다. 시간제 교사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후생복지를 보장하고, 경력 산정을 종일제 교사의 대비 일정 비율로 적용하는 등 적절한 근로조건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한편, 0, 1세아 반일반 보육은 시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에도 교사를 위한 근로자로서의 보호 조치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다. 교사대 아동 비율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은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오후 2~3시 이용까지는 보육시설과 유치원 모두 영유아보육법의 교사대 아동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만3세아에 한하여 만4, 5세와 같이 교사 1인당 20명을 적용한다. 보육시설에서 영아 혼합반을 구성할 경우 나이가 어린 아동 연령 기준을 따르되 다소 여유를 주어야 한다.

또한 교사 1인당 아동수는 일반적인 전체 등록아동 현원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매 시각 실제로 보육하는 아동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일과 운영

이러한 이용시간 유형의 보육시설 일과 운영 사례를 보면 <표 V-2-1>과 같다. 이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시간단축형 보육이나 반일제 보육은 보육 프로그램을 종일제 보육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귀가 시간만 앞당겨진다고 하겠다.

〈표 V-2-1〉 이용시간 유형별 보육 일과 운영 사례

시간	종일제 (예: 만5세아)	시간단축형 (예: 만5세아)	반일제 (예: 0, 1세아)
~09:00	등원 및 맞이하기	등원 및 맞이하기	등원 및 맞이하기
09:00~10:30	실내자유선택활동 (쌓기, 역할, 미술, 언어, 수·조작, 과학, 음률)	실내자유선택활동 (쌓기, 역할, 미술, 언어, 수·조작, 과학, 음률)	이유식 기저귀 갈기/씻기 실내 자유놀이
10:30~10:45	정리정돈 및 전이활동	정리정돈 및 전이활동	오전 수유 및 낮잠
10:45~11:10	이야기 나누기	이야기 나누기	
11:10~11:30	간식 및 휴식	간식 및 휴식	
11:30~12:00	신체표현	신체표현	귀가 준비 및 귀가
12:00~13:00	점심 및 이 닦기	점심 및 이 닦기	
13:00~14:30	휴식 및 낮잠	휴식, 낮잠 및 귀가	
14:30~16:30	실내 자유선택활동 및 오후 간식		
16:30~16:50	정리정돈 및 화장실 가기		
16:50~18:30	실내외 자유선택활동		
18:30~	통합 보육 및 귀가		

주: 여성가족부 보육프로그램을 참조하여 재구성.

3. 비용 지원

가. 비용 지원 조건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시간 적용을 보육시설 시간단축형, 유치원 연장제와 각각의 종일제형으로 이원화하여 적용하고 이용가능 대상도 조건을 두어 이용시간 자격을 제한할 것을 제안한다.

보육시설 시간단축형, 유치원 연장제 이용시간은 2세이상 아동은 오후 2~3시에 귀가하는 시간 유형이고 0, 1세 영아에 한하여 평일 하루 3시간 보육을 기본으로 한다. 시간 단축형 보육과 유치원 연장제, 그리고 0, 1세아의 평일 3시간 보육은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아동 등으로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가 가능한 아동에게는 보

육시설 이용시간에 대한 국가의 비용 지원을 제한한다는 전제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다음은 종일제는 모의 취업 중이거나 직업훈련, 구직 중, 또는 가족 구성원 중에 장애인 노인 등 가정에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구성원이 있어서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조건을 두어 제한한다.

취업모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은 우선 경기도에서 취업모 자녀 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조건을 적용하고, 기타 조건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증명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 하에서는 보육시설들이 선택적으로 미취업모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0, 1세아 3시간 보육반을 구성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에 교사도 단시간 교사의 채용이 가능해 진다.

〈표 V-3-1〉 이용시간 유형별 성격

이용시간	시간	교사 인건비 기준	교사대 아동비율	지원대상	지원정도
기본형 (유아)	5~6시간	정규교사	만3세아 1:15 만4, 5세아 1:20	전체	일반
기본형 (영아)	3시간	단시간제 교사	0세아 1:3 만1세아 1:5 만2세아 1:7	전체	일반
종일제 (영유아)	8~12시간	정규교사+종일제 교사 (단시간제 교사 검토)	기본형 시간 이후 3세아만 1:20으로 조정	취업모 등	기본형 이외 지원 비율 추가

〈표 V-3-2〉 경기도 취업여성 보육지원 시 취업 증명

구분	증명서류
상근근로자	재직증명서, 고용확인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내역서(고용보험센터), 직장의료보험 지경취득상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지사)
자영업자 (명의대여자 제외)	사업자 등록증에 소득납부증명서 첨부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고용·임금확인서 - 기간제근로자 3개월 마다 제출 - 시간제근로자 매월 제출
가타 인정서류	취업여성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서류

자료: 의정부보육정보센터(2008), 내부자료.

나. 비용 분담 및 지원방법

2008년 12월에 발표한 보건복지가족부 아이사랑플랜(2008)에 의하면 2009년 하반기부터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50%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단가를 전액 지원하고 70%까지는 부분 지원하며, 점차 전액지원 대상 아동의 늘려서 2012년 이후에는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80%까지 전액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즉, 전반적으로 보육, 유아교육 비용 전액지원이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추세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시간단축형 보육 및 연장제 교육: 유아 기본형

현재 정부의 보육비용 지원 기준은 시간단축형 보육과 연장제 유아교육에 적용한다. 사실 유치원에는 이러한 기준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보육시설의 경우에만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겠다.

이 경우 현재와 같은 보육비용 지원체계를 일부 보완하여 적용한다. 보완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우선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중장기적으로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만2세 영아에게는 현재의 기본보조금을 지원하므로 민간보육시설과 국공립보육시설의 부모부담 차이가 없다. 민간시설의 경우 기본보조금과 부모 부담 보육료를 합하면 본 연구에서 추정된 보육비용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체 보육비용 대비 차이 나는 금액의 비율은 높지 않다. 그러나 유아의 경우 산출한 보육비용이나 실제 보육료가 정부 지원단가와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유아는 민간시설 지원단가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 보육비용을 반영하여 차등보육료의 형태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의 비용과 지원단가의 차이가 매우 크므로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여 차등체계를 새로이 구축할 필요성이 높은 것이다. 이 경우, 전체 지원 예산의 수준을 높이지 않은 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여 차등체계를 새로이 만들 경우,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산층 이상은 부모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보편적 지원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 지원단가가 민간보육시설 보육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모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므로,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계층 아동의 추가 부담을 보전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전체 아동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 계획으로는 2012년에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80%까지 전액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인데, 이 경우에 80%를 기준으로 그 경계에 있는 아동들의 부모 부담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얼마 안 되는 소득 차이로 보육료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들의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소득이 높은 계층 아동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비용 지원은 필요하다.

한편 교육비 지원도 보육료 지원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왔는데, 교육비가 자율화되어 있고 실제로 보육료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아의 민간보육시설 비용 지원체계가 별도로 마련되어 적용될 경우 상당 부분 문제가 완화될 것이다.

2) 0, 1세아 3시간 보육: 0, 1세아 기본형

0, 1세아 반일반 보육의 경우 이용은 모의 취업 등 가정 내 사정을 반영하여 적용한 점은 앞에서 제시한 시간단축형 등 만2세 이상 기본형과 같다.

그러므로 비용 지원도 만2세 이상 기본형 비용 지원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동일한 비율로 지원한다.

3) 종일제

종일제 보육 및 유아교육은 모의 취업, 직업훈련 등으로 가정에서 보호자가 아동을 적절하게 돌보아 어려운 경우에 한하므로 그 비용을 부모에게 부담시키기 어렵다. 모의 취업여부 등 조건 없는 아동의 보육과 교육 서비스 이용 비용의 전액 지원을 확대하면서 취업 등으로 종일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부모를 지원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만2세 이상 시간단축형 보육, 0, 1세아 반일제 보육, 유아의 연장제 교육 비용은 앞에서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그 이외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건비 지원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4. 맺는 말

본 연구는 보육 및 교육 서비스의 시간유형을 다양화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이용하는 서비스 시간에 부합되도록 수납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우리나라 보육과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 현황을 조사해 보면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크다. 보육은 시설 운영시간과 아동의 이용시간 개념이 분리되지 않은 채 제도가 12시간 종일제로 획일화되어 있고 재정 지원 역시 이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수요자들의 요구보다는 운영자의 편의상 획일화된 제도에 맞추어 시설을 운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연장제 시간 정도만을 보육하고 오후 2~3시경에 귀가하는 아동 비율이 30%를 넘고 있고, 최근에 영아의 단시간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육교사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상 8시간 근로를 준수하여야 한다. 교대 탄력근무제로 8시간 근로를 준수하라고 하지만 여유 인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초과근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8시간 근무하는 내내 아동을 돌보아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이러한 근로조건은 곧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로 연결된다. 유치원은 반일제, 연장제, 종일제로 이용시간이 다양화되어 있고 종일제 교사를 따로 둬서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정부의 비용 지원은 보육료 지원기준과 동일한데, 이는 반일제 수업료 수준에 지나지 않으므로 급식비, 연장제 수업료, 종일제 수업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부모의 부담이 크다.

사실 오후 2~3시에 귀가하거나 5시경에 귀가하나 교사의 추가 배치가 없으면 소요 비용은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2~3시에 귀가한다고 보육료가 크게 낮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12시간 종일제를 이용하여야 하는 아동은 교사 추가 배치에 따라 추가 비용부담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이 취업모이므로 국가가 상당부분을 부담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이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일하는 여성에 한하여 종일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특히 영아의 경우 미취업모의 자녀는 3~4시간 정도의 시설 이용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용시간 관련 제도적 변화는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 후에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취업여부나 종일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방안도 단기적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어렵지만 시행될 경우 이용시간 유형을 다양하게 설정하고 정부 지원 비용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취업모와 미취업모 등 가정 형편과 필요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이용하게 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하고, 또한 합리적 기준 제공으로 재정적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표준비용 적용 방식이 다른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통일된 기준 적용 방안의 기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경석(2001). 유치원 교육재정 분석 및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19(2).
- _____ (2001). 유치원 교육재정분석 및 표준교육비 산출연구. 교육행정학연구, 19(2), 1-43.
- _____ (2005a). 사립유치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3(4), 175-198.
- _____ (2005b). 유치원 수업과정(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에 따른 표준교육활동 경비 산출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14(2), 1-24.
- 강경석·장영숙(2001). 유치원 표준교육활동경비 산출 연구. 유아교육연구, 21(3), 167-189.
- 공은배·서혜애·김규태·권재현(2005). 유·초·중·고등학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권은주·황갑성(1997). 표준교육비 산출에 의한 사립유치원 교육재정 분석. 유아교육 연구, 17(1), 45-65.
- 김연명(1994). 보육비용 관리체계의 합리화 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김재규·이원영·공은배·백성준(1994). 유치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서울: 중앙교육 심의회.
- 김형준·원종학(2007). 가격규제 예외시설 허용범위 및 관리방안. 여성가족부·조세연구원.
- 문선화(1995). 영유아보육에서 표준보육단가 산출방식의 재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 영유아보육학, 2.
- 박기백·김현숙·김우철·김형준(2005).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여성부·조세연구원.
- 박영박(1988). 유치원 교육비 측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변용찬·서문희·이상현·임유경(1998). 보육시설확충 3개년계획에 따른 영유아보육법·제도 평가, 보육시설확충 3개년계획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임유경(2002). 표준보육단가 평가와 단가산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임유경·박애리(2002). 2002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고.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삼성복지재단(2000). 서울특별시 보육시설의 표준보육단가 산출 및 재정지원제도에 관한 제언.
- 서문희·나정·최혜선(2006).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육아비용 걱정 분담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이연희·임유경(2003). 보육료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조애저·김유경·최은영·박지혜·최진원(2005).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최혜선(2007). 영아 양육지원 종합 대책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 엄문영(2006). 유치원 표준교육비 산출 모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 논문.
- 이성진·김지영·황영자·전숙희·이기우(1990). 한국의 탁아사업시행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행동과학연구소.
- 이연섭(1984). 사립유치원 표준교육비 연구.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 정영숙(1996). 보육료 책정의 문제 및 합리적 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 7.
- 일본 全國保育團體連絡會·保育研究所(2008a), 保育白書.
- 일본 全國保育團體連絡會·保育研究所(2008b), 保育情報, No. 383. 2008. 10.
- 일본 全國保育團體連絡會·保育研究所(2008c), 保育情報, No. 384. 2008. 11.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05). Child Care.
<http://www.abs.gov.au/internet>
- Australian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 Department of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2002). OECD Review of Family Friendly Policies: The Reconciliation of Work and Family Life.

Department of Families,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Census of child care services.

<http://www.facs.gov.au/internet/facsinternet/childcare>

Korpi, Babara Martin(2007). Politics of Preschoo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Sweden.

OECD(2006). Starting Strong II: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The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Sweden(2006a). Children, pupil, and staff National Level. Report 277.

The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Sweden(2006b). Cost-National Level. Report 280.

The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Sweden(2007). Five Years with the Maxim Fee. English summary of Report 294.

부 록



<부록 1> 조사 대상 보육시설, 유치원 일반 특성

1. 보육시설 일반특성

□ <부표 1-1-1>은 조사된 보육시설의 소재지임. 민간보육시설은 과반수가 단독건물이고 19.2%가 상가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가정보육시설은 67.5%가 아파트에 위치하고 있음. 지역별로 민간보육시설은 읍면에서 단독건물 비율이 도시보다 높으며 상가에 위치한 비율은 도시보다 낮음. 가정보육시설 역시 읍면에서 단독건물 비율이 높음.

<부표 1-1-1> 유형별 보육시설 소재지

단위: %(명)

구분	단독 건물	상가 건물	일반 주택	아파트	공공 건물내	종교건 물 등 기타	계(수)	$\chi^2(df)$
전체	41.0	14.3	9.7	27.4	4.3	3.4	100.0(715)	
유형별								
민간	56.9	19.2	6.3	7.5	5.4	4.6	100.0(478)	349.9(5)**
가정	8.9	4.2	16.5	67.5	2.1	0.8	100.0(237)	
지역별								
민간								
대도시	40.5	28.4	10.1	4.1	10.1	6.8	100.0(148)	
중소도시	50.7	20.7	5.0	16.4	3.6	3.6	100.0(140)	67.9(10)**
읍면	74.2	11.1	4.2	3.7	3.2	3.7	100.0(190)	
가정								
대도시	4.1	8.2	16.4	69.9	1.4	-	100.0(73)	
중소도시	4.0	-	14.7	78.7	1.3	1.3	100.0(75)	na
읍면	16.9	4.5	18.0	56.2	3.4	1.1	100.0(8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na는 빈도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부적절함을 의미함.

□ 실외놀이터는 41.3%의 시설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51.9%는 인근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으며 6.9%가 없다고 응답하였음. 놀이터가 없다는 비율은 민간보육시설이 다소 높고, 읍면보다는 중소도시, 대도시에서 없다는 비율이 비교적 높음. 가정 보육시설은 읍면에서 없다는 비율이 도시보다 높음.

〈부표 1-1-2〉 보육시설의 실외놀이터 보유 상태

단위: %(명)

구분	있음	인근 어린이놀이터	없음	계(수)	$\chi^2(df)$
전체	41.3	51.9	6.9	100.0(715)	
유형					
민간	56.9	34.9	8.2	100.0(478)	169.0(2)**
가정	9.7	86.1	4.2	100.0(237)	
지역별					
민간					
대도시	39.9	51.4	8.8	100.0(148)	
중소도시	50.0	37.1	12.9	100.0(140)	50.39(4)**
읍면	75.3	20.5	4.2	100.0(190)	
가정					
대도시	8.2	87.7	4.1	100.0(73)	
중소도시	6.7	93.3	-	100.0(75)	9.2(4)
읍면	13.5	78.7	7.9	100.0(8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부표 1-1-3〉 보육시설 평가인증 상태

단위: %(명)

구분	받음	진행중	2008년	2009년 이후	계획 없음	잘 모름	계(수)	$\chi^2(df)$
전체	21.3	22.7	10.5	21.7	17.9	6.0	100.0(715)	
유형								
민간	23.8	18.2	13.0	21.5	16.3	7.1	100.0(478)	30.5(5)**
가정	16.0	31.6	5.5	21.9	21.1	3.8	100.0(237)	
지역별								
민간								
대도시	16.9	20.9	16.9	22.3	14.9	8.1	100.0(148)	
중소도시	31.4	14.3	12.1	19.3	18.6	4.3	100.0(140)	14.3(19)
읍면	23.7	18.9	10.5	22.6	15.8	8.4	100.0(190)	
가정								
대도시	26.0	35.6	4.1	20.5	11.0	2.7	100.0(73)	
중소도시	12.0	29.3	6.7	22.7	21.3	8.0	100.0(75)	na
읍면	11.2	30.3	5.6	22.5	29.2	1.1	100.0(8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na는 빈도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부적절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시설 운영실태 조사」 결과임.

- 조사 대상 보육시설 중 21.3%의 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았다고 응답하였고 22.7%는 6월 현재 평가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2. 유치원 일반특성

- 유치원의 건물 형태를 살펴보면,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97.9%가 공공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고,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83.8%가 일반 단독건물, 7.9%가 종교건물, 4.5%가 상가건물, 3.6%가 공공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지역별로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냄(부표 I-2-1 참조).

〈부표 I-2-1〉 유치원 건물 형태

단위: %(개원)

구분	일반 단독건물	상가 건물	공공 건물내	종교 건물	기타	계
전체	57.4	3.1	34.1	5.3	0.1	100.0(704)
유형별						
국공립	4.7	0.4	97.9	-	-	100.0(235)
사립	83.8	4.5	3.6	7.9	0.2	100.0(469)
지역별						
국공립						
대도시	7.0	-	93.0	-	-	100.0(71)
중소도시	4.8	2.4	92.9	-	-	100.0(42)
읍면	3.3	-	96.7	-	-	100.0(122)
사립						
대도시	76.0	8.9	4.1	11.0	-	100.0(146)
중소도시	84.8	4.6	2.6	7.9	-	100.0(151)
읍면	89.5	0.6	4.1	5.2	0.6	100.0(172)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운영실태 조사」 결과임.

- 유치원의 실외놀이터 보유 비율을 살펴보면, 국공립유치원의 99.1%, 사립유치원의 92.1%가 실외놀이터를 보유하고 있음. 대부분의 유치원에 실외놀이터가 있으며, 실외놀이터가 없는 유치원 중 대다수는 인근의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고 있었음. 사립유치원의 1.5%만이 이용할 놀이터가 없었고, 지역별로는 읍면지역 사립유치원의 실외놀이터 보유 비율이 대도시나 중소도시 사립유치원의 보유 비율보다 높았음(부표 I-2-2 참조).

〈부표 1-2-2〉 유치원의 실외놀이터 보유 상태

단위: %(개원)

구분	있음	인근 어린이 놀이터 이용	없음	계
전체	94.5	4.5	1.0	100.0(704)
유형별				
국공립	99.1	0.9	-	100.0(235)
사립	92.1	6.4	1.5	100.0(469)
지역별				
국공립				
대도시	97.2	2.8	-	100.0(71)
중소도시	100.0	-	-	100.0(42)
읍면	100.0	-	-	100.0(122)
사립				
대도시	89.7	8.2	2.1	100.0(146)
중소도시	89.4	9.9	0.7	100.0(151)
읍면	96.5	1.7	1.7	100.0(172)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운영실태 조사」 결과임.

<부록 II> 조사표 2종

지역번호		시설번호	

보육시설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는 보육비용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보다 나은 보육 여건을 위하여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조사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6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보육시설명		연 락 처	() -
주 소		조 사 자	
지 역 특 성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 귀 보육시설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1) 민간개인 2) 가정
- 귀 보육시설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1) 단독건물 2) 상가건물 3) 일반주택 4) 아파트
 5) 복지관 등 공공건물 내 6) 기타()
- 귀 보육시설에는 실외놀이터가 있습니까?
 1) 있음 2) 인근에 어린이놀이터 있음 3) 없음
- 귀 보육시설은 일주일에 며칠 운영합니까?
 1) 월요일부터 금요일 2) 월요일부터 토요일 3) 월요일부터 일요일
- 평일 운영시간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시 ()분 ~ ()시 ()분
- 2008년 6월 현재 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현원과 취업모 자녀수를 각 연령별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아동이 없으면 반드시 '0'이라고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분	0세아	만 1세아	만2세아	만3세아	만4세이상아	총계
6-2. 현원	명	명	명	명	명	명
6-2. 취업모 자녀	명	명	명	명	명	명

7. 귀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귀가시간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아동이 없으면 반드시 '0'이라고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0세아	만1세아	만2세아	만3세아	만4세 이상아	총계
7-1. 저녁 6시 이후 귀가	명	명	명	명	명	명
7-2. 오후 2-3시 정도에 귀가	명	명	명	명	명	명
7-3. 오후 4-5시 정도에 귀가	명	명	명	명	명	명

8. 귀 시설에서 수납하고 있는 2008년 6월의 종일제 아동 1인당 보육료는 얼마입니까? 또한 반일제 비용은 얼마입니까? 연령별로 기입해 주십시오. 정부의 지원을 안 받는 아동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분	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종일제 월 보육료 수납액	원	원	원	원	원
반일제 월 보육료 수납액 (오후 2-3시 하원)	원	원	원	원	원

9. 귀 시설에서는 2008년 6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활동비나 기타 비용으로 최고 얼마를 수납하고 계십니까? 만 4세아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냉난방비	차량비	기타
금액	원	원	원	원	원

10. 저소득층 무상보육 대상 아동의 정부지원단가와 실제 보육료의 차액을 어떻게 하십니까?

- 1) 차이가 나지 않음
- 2) 받지 않음
- 3) 지방정부(시도 나 시군구)가 보전해 줌
- 4) 부모로부터 받음
- 5) 기타()

11. 귀 보육시설은 교사의 8시간 근무를 준수합니까?

- 1) 반드시 지킴
- 2) 대체로 지키는 편임
- 3) 잘 못 지킴

11-1 교사 8시간 근무를 잘 못 지키는 경우 교사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합니까?

- 1) 반드시 지급
- 2) 대체로 지급
- 3) 지급 못 함

12. 종일제로만 운영하는 경우 일찍 귀가를 희망하는 아동도 있을텐데, 반일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법으로 종일제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 2) 정부의 지원이 종일제 기준이므로
- 3) 반일제를 희망하는 아동이 없어서
- 4) 기타()

13. 귀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상태는 어떠합니까?

- 1) 이미 받았음
- 2) 기 신청하여 현재 평가가 진행중임
- 3) 2008년에 신청할 예정임
- 4) 2009년 이후에 신청할 예정임
- 5) 신청 계획 없음
- 6) 잘 모르겠음

❖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역번호		기관번호	

유치원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는 유아교육비용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보다 나은 유아교육 여건을 위하여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조사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6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유치원명		연락처	() -
주소		조사자	
지역특성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1. 귀 유치원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1) 국공립 2) 사립

2. 다음 중 귀 유치원 건물은 어디에 속합니까?

- 1) 일반 단독건물 2) 상가건물 내 3) 공공건물 내 4) 기타()

3. 귀 유치원에는 실외놀이터가 있습니까?

- 1) 있음 2) 인근에 어린이놀이터 있음 3) 없음

4. 귀 유치원은 일주일에 며칠 운영합니까?

- 1) 월요일부터 금요일 2) 월요일부터 토요일 3) 월요일부터 일요일

5. 평일 운영시간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시 ()분 ~ ()시 ()분

6. 2008년 6월 현재 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현원과 취업모 자녀수를 각 연령별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아동이 없으면 반드시 '0'이라고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분	만3세아	만4세 이상아	총계
6-1. 현원	명	명	명
6-2. 취업모 자녀	명	명	명

7. 2008년 6월 현재 귀 유치원 이용 아동의 이용시간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아동이 없으면 반드시 '0'이라고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종일제	연장제	반일제	총계
아동수	명	명	명	명

연구보고 2008-01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시간 유형별 비용 차등 적용 방안

발행일 2008년 12월
발행인 조복희
발행처 육아정책개발센터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10층, 11층
전화: 02) 730-707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대명기획 02) 2273-129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2396-28-8 93330